#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II) 

이세 정

#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교 방안 연구(I) 

이 세 정

#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지성 <br> 제고 방안 연구(ㅍ)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s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 II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br>Yi, Se-Jeong

2016. 10. 31. 



## I . 배경 및 목적

$\square$ 지난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각 지 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의 변화 내지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 른 행정의 처리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성을 지닌 자 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도 지역의 창의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음
$\square$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자치적 결정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 권을 행사하여 지방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을 높일 수 있음
$\square$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1) 상위 법령과 불일 치 소지가 있는 경우, (2)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 없는 경우, (3) 헌법상 명확 성 -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용어 사용, 법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square$ 이상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square$ 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조례의 법렁 •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의 방법과 마찬 가지로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1) 상위법령에 반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3)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4)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등을 발굴 - 정비하고, 자치 입 법 관리 실태에 대한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 구현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 내용

$\square$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서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 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square$ 제 5 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 여 자치입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황,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square$ 제6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자치입법 전문 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III. 기대효과

$\square$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법적 안정성 • 예측 가능성을 확 보할 것으로 기대됨
$\square$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자치행 정의 투명성 • 공정성 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square$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및 형식적 완 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제어 :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입법, 지방규제, 지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 전문가 초점집단 인터뷰


## I . Background and Purpose

$\square$ Since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launched in 1991, each local government has created and enforced a diverse array of their own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administrative processing systems and promotion of local development as well as changes in the society and economy. The local laws and regulations are fixed as a means for establishing the creativity of each region by corresponding to new administrative demands connected to the lives of local residents.
$\square$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s is the most basic legal assurance for giving local residents decision-making power in the implementation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of the region. Each local government is able to exercise enactment power over ordinances and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planning of local administration.
$\square$ However, there are a lot of primary ordinances which 1) provide matters contrary to higher-level laws, 2) provide for,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by acts, matters concerning rights or
obligations of residents or punishments against them, 3)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and equity, or, 5) do not conform with the Easy-to-understand Guideline for Improvement of Laws or the Manual for Drafting Self-governing Legislation published by the Office of Legislation.
$\square$ The ordinances, including the issues outlined above, cause unnecessary legal disputes to hinder the smooth execu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to incur excessive legal action costs that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budgets of local governments.
$\square$ This study aims to seek and improve those current primary ordinances which 1) provide matters contrary to higher-level laws, 2) provide for,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by acts, matters concerning rights or obligations of residents or punishments against them, 3)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and equity, or, 5) do not conform with the Easy-to-understand Guideline for Improvement of Laws or the Manual for Drafting Self-governing Legislation published by the Office of Legislation.
$\square$ And this study aims to collect the opinions of experts on local legislation regarding the status of local legislation controls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to promot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residents, to improve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on governed by law
in local administration, and to create a proposal to enhance the alignment of local ordinances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 П. Main Content

In Chapter 2 through Chapter 4, as with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s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2015)", cases of subjec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found by research area, and their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have been suggested.In Chapter 5, collect the opinions of experts on local legislation, such as public servants in charge of affairs related to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of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regarding issues and the operational status of local legislation and plans to improve local legislation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square$ In Chapter 6, summarize the status of discovered cases and to suggest plans to improve the alignment of the primary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onstitution by considering the responses gathered from th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xperts on local legislation.

## III. Expectations

$\square$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residents will be ensured and compliance with laws will be enhanced.It is expected that arbitrary implementation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will be prevented and clarit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square$ It is expected that unnecessary friction, discord and legal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prevented.
$\square$ It is expected that conformity of ordinances with laws and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ir formal completeness will be enhanced.

2 Key Words : The Primary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Legislation, Local Governments Regulation, The Provisory Clause of Article 22 of the Local Autonomy Act, FGI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7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0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0
2. 연구의 구성 ..... 28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31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분야 ..... 31
3.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31
4.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74
5.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93
6. 기 타 ..... 113
제2 절 산업•자원 관련 분야 ..... 141
7.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41
8. 기 타 ..... 148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157
제 1 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 157
9.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157
10.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162
11.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168
12. 기 타 ..... 180
제 2 절 농수축산 관련 분야 ..... 195
13.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195
14.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224
15.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242
16. 기 타 ..... 256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271
제 1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271
17.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271
18.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279
19.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283
20.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293
21. 기 타 ..... 295
제2절 환경 관련 분야 ..... 306
22.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306
23.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329
24.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350
25. 기 타 ..... 352
제 5 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 361
제 1 절 조사 개요 ..... 361
26. 조사 목적 ..... 361
27. 조사 설계 ..... 361
제2절 연구 방법 ..... 363
28.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의미 ..... 363
29. 초점집단인터뷰의 실시 ..... 364
제 3 절 조사 결과 ..... 369
30.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 369
31.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의견 ..... 385
제 6 장 결 론 ..... 391
참 고 문 헌 ..... 403

## 《부 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409
2. 경기도 평택시 ..... 417
3. 강원도 강릉시 ..... 429
4. 강원도 원주시 ..... 439
5. 경상북도 포항시 ..... 451
6. 경상남도 창원시 ..... 461
7. 충청북도 청주시 ..... 475
8. 충청남도 아산시 ..... 487
9. 전라북도 정읍시 ..... 499
10. 전라남도 여수시 ..... 51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 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또는 자치입법이란 국가 에 의해 설립된 공법상 법인이 법률상 부여된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 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무의 규율을 위하여 발하는 법규로서,2)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능을 가진 통치단체로서 당연히 자치권의 한 내용으로서 지역사무에 관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치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3}$

지난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에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하여 1995년 광역단체장과 기 초단체장을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4)된 이래 여러 제약 과 한계 속에서도 자치법규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5) 각 지방자 치단체는 사회경제의 변화 내지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른 행정의 처리 체제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성을 지닌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운용하 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자치법 규도 지역의 창의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6)

1) 김동희, 행정법 $\Pi$, 박영사, 2015, 49쪽.
2) Gern, Alfons, Kommunalrecht, Baden-Württemberg, 9. Aufl., 2005, Rn. 111; Waibel, Gerhard, Gemeindeverfassungsrecht, Baden-Württemberg, 5. Aufl, 2007, Rn. 7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32쪽 재인용.
3) 김춘환, 법률과 조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제 24 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255쪽.
4)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지방선거",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vote.do?page=2](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vote.do?page=2) (최종접속: 2016. 10. 10)
5)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지방자치법연구 제 12 권 제 4 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2. 12, 50-51쪽.
6)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 31,

좋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려면 좋은 입법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조 례는 풀뿌리 입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7) 이 점에 비 추어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조례는 다른 제도에 비하여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분야라고 할 수 있다.8)
지난 2014년도부터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지방규제의 개 선 없이 국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체감하기 곤란하고, 전 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입법 관리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는 것 은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의 불균형 뿐 아니라 국가행정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4개년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자치 입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9)
이와 같은 자치입법의 개선 노력은 그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으 나, ${ }^{10)}$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단기간에 총 243 개 (광역지방자치 단체 17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 개) ${ }^{11}$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조례를 모두 조사하여 개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

7) 최승원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1, 571쪽.
8)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5쪽.
9) 법제처, 보도자료(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2016. 4. 27.
<http://www.moleg.go.kr/news/mglNews?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 EA\%B0\%9C\%EC\%A0\%95+\%EC\% $\% 5 \% 8 \mathrm{C} \% \mathrm{~EB} \% \mathrm{~A} 6 \% \mathrm{BC} \& \mathrm{x}=0 \& \mathrm{y}=0>$
(최종접속 : 2016. 10.1)
10) 행정자치부 • 법제처, 보도자료(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13,946 건 정비 완료- 2015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력관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5.
12. 24.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71226\&pageIndex=20](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71226%5C&pageIndex=20)
(최종접속: 2016. 10. 25)
11)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5년 1월 1 일 현재), 2015, 4쪽.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 0000000055\&nttId=46105> (최종접속 : 2016. 9. 5)

의 시각에서 자치입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한 측면도 있어 지방자 치단체의 개선 공감을 얻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7 조 제 1 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 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 }^{12)}$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은 국가의 행정이 전국적인 수준 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주 민의 자치적 결정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 적 보장으로서13) 헌법이 지방적 의미를 갖는 법규범의 정립권한을 지 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것은 지방문제는 해당 지방만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지방문제를 해당 지방민이 자기책임으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규범정립자와 규범수범자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자 함에 있 다.14) 이와 동시에 국가의 입법자는 그 인식이 용인하지 않은, 지역과 사항에 있어서의 상이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장점도 갖는다.1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행사하여 지방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을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예 측가능성과 계획성을 높일 수 있다.16)
12)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5 ~16쪽.
13)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16 쪽.
14) BVerfGE 33, 125, 157f.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99쪽 재인용.
15)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 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 33 집 제 3 호, 한국공법학회, 2005. 5, 372쪽.
16) 이기우,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 13 권 제 3 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353쪽.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상위 법령과 불일치 소지가 있 는 경우，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17）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위임 없는 경우，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한 용어 • 문구 등을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그 밖에 용어 사용，법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18）

자치법규는（1）해당 지역의 정책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정책의 계속성과 체계성을 부여하고，（2）해당 지역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정치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3）입법권의 분권화를 통한 위험의 분산과 지역 간 정책경쟁을 촉진시키고，（4）국 회 또는 중앙정부의 입법능력의 한계로 인한 입법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례는 그 공백을 보완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19）이 상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조례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20）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7）1994년 3월 개정 전 구 「지방자치법」 제 20 조는＂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 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이 규정은 조례에 형사벌 칙 규정권을 위임함으로써 형사벌칙 형량의 최고한도는 정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 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에 백지위임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홍정선，신지방자치법，317쪽；김동희，앞의 책，87쪽；이세정，조 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40쪽），＂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 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정비되었다．홍 정선，행정법원론（하），159－160쪽．
18）이세정，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16～17쪽．
19）이기우，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향상방안－자치입법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회，2009，3－5쪽．박순종，자치입법 처리 소요기간의 영향요인 분석－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안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2016．2，14－15쪽 재인용．
20）이세정，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6 쪽．

또한 자치입법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전체법질서의 한 부 분을 구성한다21）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과 같은 조례는 궁극적으로 국법 질서의 통일성•조화성을 저해할 수 있다．${ }^{22)}$

자치법규의 개선은 지방자치 그 자체에 대한 변혁이기도 하며，또한 이를 통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행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예산 및 전문 인력의 확보의 측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보다 더 큰 어려움 을 격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는 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상으로 한 2015년도＂조례의 법령 •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초지 방자치단체 조례 중（1）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3）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 헌법상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등에 반하는 경우， （4）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 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등을 발굴•정비하고， 자치 입법 관리 실태에 대한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FGI）를 통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주민의 법적 안정 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의 원칙 구현을 제 고하며，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21）김동희，앞의 책， 82 쪽；문상덕，조례와 법률유보 재론，행정법연구 제 19 호，행정 법이론실무학회，2007．12，3쪽．
22）이세정 외，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법제처，2013，개조식 요약서，i～ii； 이세정，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16 쪽．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226 개의 기초지방자치단 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다음의 표와 같이 기초지방자치 단체 중 원칙적으로 시（市）를 조사 대상으로 하되，서울특별시 자치구 （自治區） 1 개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조사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을 위해서 전국을 5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각 권역 당 2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총 10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조 사 대상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주요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다．23）

| 연 번 | 권 역 | 기초지방자치단체명 | 특 성 |
| :---: | :---: | :---: | :---: |
| 1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정치－금융 |
| 2 |  | 평 택 | 항만물류（도농복합도시） |
| 3 | 강원권 | 원 주 | 군사 |
| 4 |  | 강 릉 | 관광（도농복합도시） |
| 5 | 영남권 | 포 항 | 공업（특정시）（도농복합도시） |
| 6 |  | 창 원 | 공업 |
| 7 | 충청권 | 청 주 | 교육（특정시） |
| 8 |  | 아 산 | 온천도시（도농복합도시） |
| 9 | 호남권 | 정 읍 | 농업（도농복합도시） |
| 10 |  | 여 수 | 해양（도농복합도시） |

23）조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2015， 2016 법제처＂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 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 도록 고려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연구는 2015년도＂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1）국토•교통 관련 분야，（2）산업•자원 관련 분야，（3）보건•복지 관련 분야，（4）농수축산 관련 분야，（5）문 화•체육•관광 관련 분야，（6）환경 관련 분야로 나누어 해당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 조례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 분 야 | 연구대상 조례 |
| :---: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토－교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 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등 17 건 |
|  | 산업－자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 가기준에 관한 조례」 등 6건 |
|  | 보건－복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등 43건 |
|  | 농수축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 등 2건 |
|  | 문화－체육－관광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 금징수조례」 등 11 건 |
|  | 환 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 상금 지급 조례」 등 10 건 |
| 소계 89건 |  |  |
| 경기도 평택시 | 국토•교통 |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등 45 건 |
|  | 산업•자원 |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등 14건 |


| 기초지방자치단체 | 분 야 | 연구대상 조례 |
| :---: | :---: | :---: |
|  | 보건－복지 |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등 46건 |
|  | 농수축산 |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10건 |
|  | 문화－체육－관광 |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등 18건 |
|  | 환 경 |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 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등 22건 |
| 소계 155건 |  |  |
| 강원도 강릉시 | 국토－교통 | 「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 등 26건 |
|  | 산업－자원 |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등 10 건 |
|  | 보건－복지 |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1건 |
|  | 농수축산 |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등 24건 |
|  | 문화－체육－관광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 례，등 25 건 |
|  | 환 경 |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 영 조례」등 22 건 |
| 소계 148건 |  |  |
| 강원도 원주시 | 국토－교통 |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등 30건 |
|  | 산업－자원 | 「원주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5건 |
|  | 보건－복지 |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등 38건 |
|  | 농수축산 |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8건 |
|  | 문화－체육－관광 |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30건 |
|  | 환 경 |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26 건 |
| 소계 167건 |  |  |


| 기초지방자치단체 | 분 야 | 연구대상 조례 |
| :---: | :---: | :---: |
| 경상북도 포항시 | 국토－교통 |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 에 관한 조례」 등 34건 |
|  | 산업－자원 |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6건 |
|  | 보건 • 복지 | 「포항시 건강도시 조성 조례」 등 39건 |
|  | 농수축산 |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23건 |
|  | 문화－체육－관광 | 「포항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22 건 |
|  | 환 경 | 「포항시 1 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 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28 건 |
| 소계 162건 |  |  |
| 경상남도 창원시 | 국토－교통 |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등 55건 |
|  | 산업－자원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 례」등 14건 |
|  | 보건－복지 |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58건 |
|  | 농수축산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 례」 등 20 건 |
|  | 문화－체육－관광 |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례」 등 41건 |
|  | 환 경 |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등 18건 |
| 소계 206건 |  |  |
| 충청북도 청주시 | 국토－교통 | 「청원군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3건 |
|  | 산업－자원 |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 건 |
|  | 보건－복지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56건 |


| 기초지방자치단체 | 분 야 | 연구대상 조례 |
| :---: | :---: | :---: |
|  | 농수축산 |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등 15건 |
|  | 문화－체육－관광 | 「청주시 1 인 1 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 등 38 건 |
|  | 환 경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25 건 |
| 소계 192건 |  |  |
| 충청남도 아산시 | 국토－교통 |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등 38건 |
|  | 산업－자원 | 「아산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 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 건 |
|  | 보건－복지 |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 례」 등 52 건 |
|  | 농수축산 |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등 9건 |
|  | 문화－체육－관광 |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등 23건 |
|  | 환 경 |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등 24 건 |
| 소계 161건 |  |  |
| 전라북도 정읍시 | 국토－교통 | 「정읍시 건축 조례」 등 29건 |
|  | 산업－자원 |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등 9건 |
|  | 보건－복지 |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 례」 등 39 건 |
|  | 농수축산 |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0건 |
|  | 문화－체육－관광 |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 설 관리•운영 조례」 등 37건 |
|  | 환 경 |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등 20건 |


| 기초지방자치단체 | 분 야 | 연구대상 조례 |
| :---: | :---: | :---: |
| 소계 174건 |  |  |
| 전라남도 여수시 | 국토－교통 |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text { 등 } 36 \text { 건 }$ |
|  | 산업－자원 |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등 16 건 |
|  | 보건－복지 |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45 건 |
|  | 농수축산 |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17건 |
|  | 문화－체육－관광 |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등 27건 |
|  | 환 경 | 「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등 17건 |
| 소계 158건 |  |  |
| 총계 10 개 기초자치단체 조례 1，612건 |  |  |

※ 조사 대상 조례는 2016．1．15．자를 기준으로 함
※ 2015년도＂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관 • 산하기관 등 조직 설치 및 운영，지방의회 설치 및 운영，공 무원제도，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4월 14일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앙부처 소관을 기준으로 분류하 고，같거나 유사한 조례를 보유한 기초지방자치단체，해당 기초지방자 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를 표를 이용하여 정리했고，이를 부록으로 제시했다．
조사 분석 대상 조례의 선정기준일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시행 일을 그 기준으로 했으며，연구의 시작단계인 2016년 1월 15 일을 기준

으로 하였지만，추후 해당 조문이 개정된 조례의 경우에는 개정 조례를 고려하여 분석했다．

이후 정비의 필요가 있는 사례를 2015년도＂조례의 법령•헌법 합 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크게（1）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 을 규정하는 경우，（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3）헌법상 명확성의 원 칙－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4）기타（용어 사용이나 문 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 령 정비 기준」，「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로 나 누어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2015년도＂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 가지로 법이론 및 실무 관련 전문가의 개별 자문，전문가회의 및 워 크숍 등을 통하여 사례 발굴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했다．

다만，2015년도＂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언 급한 것처럼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는 글자 그대로 조례 조 항의 해석이나 적용의 범위 내에서 위법하거나 위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단지 제거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합법성•합헌성 을 회복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요건을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그 조항의 내용을 합법적•합헌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 고，따라서 이 연구는 해당 조례 조문이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명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충실하여 합법적•합헌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사전적•예방적 연구의 일환으로 해당 조례 조항의 위법성－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등을 검토하는데 그친다．${ }^{24)}$

24）박영도 외，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법제처，2012，i．；이 세정 외，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법제처，2013，34쪽．

또한 이 연구는 2015년도＂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 구＂의 후속 연구로서，2015년도 선행연구에서는 조례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 정비의 필요가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방 법의 연구를 수행했으나，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이론적 연구는 수 행하지 아니하고 2015년도 선행연구에서의 조례 정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정비의 필요가 있는 사례를 곧바로 발굴하는 방법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25）
다만，이 연구는 2015년도 연구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그 대상 으로 한 것과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 으로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는＂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 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본래 광역자 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구분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 단체의 조례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고 동일한 사무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중첩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질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인데，26）기초지방자치단체

25）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논리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설명은 이세정，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2015 제2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6）홍정선，신지방자치법， 317 쪽；박균성，행정법론（하），박영사，2015，186쪽．＂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 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 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사무처리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27)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시•도 조례에 반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무효가 된다28)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는 사례 역 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9)}$

## 2. 연구의 구성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 성한다.

제2장부터 제4장30)까지에서는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 야별로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2)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3)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헌법상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4) 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

대판 2006. $10.12,2006$ 추 38 ; 대판 2000. 11. 24,2000 추 29 .
27)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ㅍ, 법문사, 2015,126 쪽; 김동희, 앞의 책, 85 쪽.
28) 김동희, 앞의 책, 85 쪽;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317쪽;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 영사, 2015,160 쪽; 한귀현, 독일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론에 관한 소고 - 그 역사적 구조를 중심으로 -, 독일학연구 제14권,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1998, 194쪽.
29)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 발굴 사례의 수가 많지 않아 관 련 문제 사례에 포함하여 정리했다.
30) 2015년도 선행연구인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장, 절 구성의 편의상 국토•교통 관련 분야와 산업•자원 관련 분야(제2 장), 보건•복지 관련 분야와 농수축산 관련 분야(제 3 장),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와 환경 관련 분야(제4장)를 각각 1 개의 장으로 묶은 뒤, 다시 분야별로 절로 나누어 조례 정비사례를 발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준」，「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등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방법 （Focus Group Interview；FGI）을 활용하여 자치입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 황，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에서 발굴한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제 5 장에서의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내용 및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 참석이 곤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 별 의견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 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제 1 절 국토•고통 관련 분야

1．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관련31）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23 조 제 1 항 제 2 호의 대 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 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23 조（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1）영 제 17 조제 1 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

31）이 사례는 이세정，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5（이하＂2015 연구＂라 한다）중＂대구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 조 관련＂사례（6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이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사례 중 2015년 연구에서 검토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검토이유 및 정비방안의 내용 이 2015년 연구와 같거나 유사할 수 있음을 밝힌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을 제외한다．이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외에「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 1 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신청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 주소 및 주민등 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경찰서 또는 시 • 군 •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별지 제 13 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영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은 5 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 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 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경찰서장 또는 구청 장등은 제 2 항에 따라 대행업지정증을 교부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경찰청장이 정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에서 는＂r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 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 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 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의 상위법 렁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서는 대행법인등의 대

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기초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장에게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 등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자칫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청주시 견인자동 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제4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1）「도 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 23 조제 1 항제 2 호의 대행업무 처 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 무의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 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 $\mathbf{5}$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1）「도 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2）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 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 7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1）대행법인 등의 업무의 대행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영 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 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 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을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에 종사하는 직원 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1）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5 제 1 항제 2 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 여야 한다．
（2）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 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상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제 $\mathbf{4}$ 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1）규 칙 제 13 조의 5 제 1 항제 2 호의 대행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 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2）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정비방안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4조를 삭제한다．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4 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1）「도 로교통법 시행규칙」제 23 조 제 1 항 제 2 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 ＜삭 제＞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  |
|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 |  |
| 을 명시하여야한다. |  |
| (2)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  |
| 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 |  |
| 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 |  |
|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2）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 2 조 제 3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 2 조（과태료의 부과기준）（1）법 제 1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2）제 1 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개 별공시지가를 말한다．
（3）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 조（과태료의 부과）（1）행정청은 제 16 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 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 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과태료 금액，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 15 조부 터 제 20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1）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국세징수법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다만，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납세자는 제 1 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 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세무서장은 제 1 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 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제 2 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
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 를 통지하여야 한다．
（5）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 일 전까지 제2항에 따 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 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 인한 것으로 본다．

## 1）검토의견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 제2조 제3항에서는＂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3항에서는＂과태료 납부기 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 15 조부터 제 20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징수법」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사업에 현

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 행 중인 경우，（6）（1）부터（4）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 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하지 못하도록 한「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 2 조 제 3 항은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3항에 반할 수 있다．

2）정비방안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제 2 조 제 3 항을 삭제한다．과태료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되므로 조례에 별도 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32)}$

32）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4 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8 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 2 조 제 1 항은 상위법령을 단순반복 규정한 정도 의 의미밖에 없을 수 있으므로 이들 조항을 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4 조（과태료의 부과기준）（1）법 제 144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28 과 같다．
（2）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 144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 |  |
| 료의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 2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 (2) (현 <br> 행과 같음) <br> (2)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토지 <br> 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 <br> 토지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 (3)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br> 없다. <삭 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법 제 144 조제 1 항의 경우: 1 천만원
2. 법 제 144 조제 2 항의 경우: 5 백만원

## （3）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 29 조의 2 관련33）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법 제61조의 2 및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 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실무종합심의 회를 준용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br> 회）（1）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는 제 61 조제 3 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 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br> （2）제 61 조제 3 항에 따라 협의 요청 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 속 공무원을 제 1 항에 따른 개발행 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제 59 조의 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br> 회）（1）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 조제 3 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인•허가등＂이 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 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 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 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br> （2）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 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 |

33）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 18 조 관련＂사례（67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 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br> （3）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 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여야 한다．다만，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 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r> （4）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1）검토의견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의2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9 조의 2 에 따른 개발행 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실 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평택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민원의 성질도 다른 것인바 개발행위복합민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원 일괄협의회를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4）포항시 건축 조례 제 6 조 제 1 항 단서，제 3 항 단서 및 제 5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건축 조례

제 6 조（구성）（1）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25 명 이상 5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 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2）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위원회의 위원은 3 명 이내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 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공무원 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 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 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4）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 하로 구성한다．
（5）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mathbf{5}$ 조의5（지방건축위원회）（1）법 제4조제 1 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 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시 • 도＂라 한다）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이 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각 호 생략）
（2）제 1 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 5 조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3) 제 1 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25 명 이상 150 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 4 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6)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 위촉 • 제척 • 기피 • 회피 • 해촉 •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위원의 임명 • 위촉 기준 및 제척 • 기피 • 회피 • 해촉 • 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 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 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 분의 1 이상이 되 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해촉에 관하여는 제 5 조의 2 및 제 5 조의 3 을 준용 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 3 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 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 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 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삭제＜2014．11．28．＞
바．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 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제 1 항제 5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 도 • 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전 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할 것（제 5 조의 6 제 1 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 당한다）
카．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1）검토의견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 5 항에서는＂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 4 항에 따 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 • 도지사 및 시장－군수 • 구청장 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조례 제6조 제2항 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맞지 아니하다．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6항에서는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제 5 조의 5 제 6 항 제 1 호 마목에서 는＂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상위법령의 규정과 맞지 아니하다．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 1 항 단서에서는＂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 는 심의위원 수의 4 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하여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특정 회의 때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은 위원 회의 구성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이 고，해당 위원은 해당 회의에만 참석하는 위원인지，임기가 있는 위원인지 불명확하며，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공무원이 아닌 위 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도 특정 회의를 위해서 위원을 추가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색 하다．
－같은 조례 제6조 제3항 단서에서는＂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 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교통영향 분석 • 개선대책심의를 건축위원회와 동시에 개 최할 경우＂가 법문상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할 뿐 아니라，이 경우 에도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하 는 것도 위에서 설명한 제 6 조 제 1 항 단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문 제가 있다．${ }^{34)}$

34）＂다만，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출 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은 교통전문가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포항시 건축 조례」
－그 밖에 같은 조례 제6조 제5항에서는＂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자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 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건축 조례】 제 4 조（위원회의 구성）（1）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 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25 명 이상 80 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 5 조의 5 제 5 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명 및 건축•소방•도시계획• 도시설계 • 교통 • 조경 • 문화 • 예술 • 색채 • 환경 • 역사 • 방재 등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른 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4개 이상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 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별지 제3호 서식의 청 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는 「양 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 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 수의 4 분의 1 이상이 되 게 한다．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 단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4．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정비방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특정회의 때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포항시 건축 조례」 제6조 제5항은 삭제한다．

## 【포항시 건축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6 조（구성）（1）위원회는 위원장，부위 원장 각 1 명을 포함한 25 명 이상 5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다만，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 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 하는 심의위원 수의 4 분의 1 이상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 한다． <br> （2）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 제 6 조（구성）（1） $\qquad$ $\qquad$ - <단서 삭제> <br> （2） $\qquad$ 제1항에 따라 임명 또 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 |


| 현 행 | 개정안 |
| :---: | :---: |
| (3) 위원회의 위원은 3 명 이내의 시 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 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 • 개선대책 심의를 건 축위원회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에 필요한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br>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 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 의 1 이하로 구성한다. <br> (5)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 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r>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br> (7)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명하거나 위촉한다. <br> (3)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br> 삭제> <br> (4) (현행과 같음) <삭 제> <br> (5) $\qquad$ 3년 $\qquad$ $\qquad$ <br> (6) (현행 제 7 항과 같음)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 • 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5）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3 조（구성）（1）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당사자간 의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포항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2）위원회는「같은 법 시행령」제67조제 1 항에 따라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0 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포항시 소속 공무원
2．법학 • 경제학 •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 던 사람
3．변호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 사•검사
4．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 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5．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관련 법령 및 조문】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 :---: | :---: |
|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br> （1）제 42 조제 8 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 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br> （2）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 임－임기에 관한 사항 <br> 2．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br> 3．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 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br> 4．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 의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br> 6．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 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br> （3）제 42 조제 8 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 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 （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br> （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분 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1）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 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 을 포함하여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br> 1．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br> 2．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 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br> 3．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 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br> 4．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br> 5．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br> （2）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 :---: | :---: |
|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 • 군 • |  |
| 구의 조례로 정한다． |  |

1）검토의견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에서는（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파산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 행이 며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공동 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 법률인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조례 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주민 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에 비추어도 문제가 있다．
－한편，「주택법」은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되어（법률 제13805 호，2016년 8월 12일 시행）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 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1일자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법률 제13474호，2016．8．12．시행）에 따라「공동주택관

리법」제7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이 법에서도 공동주택분 쟁조정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5)}$

2）정비방안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 3 조 제 4 항을 삭 제한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 조（구성）（1）～（3）（생 략） | 제 3 조（구성）（1）～（3）（현행과 같음） |
|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삭 제＞ |
|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  |
| 상실 한다． |  |
|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 |  |
| 후견인 |  |
|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 |  |
|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  |
|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 |  |
|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  |
| 받고그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
| 5．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 |  |
|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  |
| 지나지 아니한사람 |  |

35）「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새로 제정된 「공동 주택관리법」 제71조 이하에 맞게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
（6）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제 3 조（과태료）（1）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1．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2）과태료 부과 •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 한다．
（3）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지방자치법」 제14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로법 시행령

제 105 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 117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다만，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 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과태료 부과 •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 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 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이 조례의 상위법 령인「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서는＂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 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과기준을 규칙 으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 고＇공평한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다．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3 조（과태료）（1）청주시장은 정당한 | 제 3 조（과태료）（1）（현행과 같음） |
|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  |
|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  |
| 과 • 징수할 수 있다． |  |
| 1．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행위
2．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 는 행위
3．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 는 행위
（2）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
（2）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 로 정한다．
（3）제 1 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3）（현행과 같음）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지방자 치법」제 140 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 법」을 따른다．
（7）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18 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1）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도시환경정 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 사업비 100 분의 20 으로 한다．
（2）시장은 제 1 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제 2 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 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 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1）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 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 분의 20 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제 5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 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한다．
（3）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 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15 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1）법 제29조제 1 항에 따라 예치하여
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 퍼센트로 한다．
（2）시장•군수는 제 1 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제 2 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 개발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금고에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 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1）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는 시장•군수는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 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 분의 20 의 범위 이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예치금은 같은 법 제57조 제 1 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서는 예치 및 반환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 서 정비사업비 예치금의 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도조례를 반복하여 규정하는 차원에 서 청주시 조례에서 규정하더라도 충청북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 항을 그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특히 제 18 조 제 1 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 업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을 정비사업비의 10 퍼센트로 규정한「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15 조 제 1 항과 달 리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 사업비 100 분의 20 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조례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2）정비방안
－정비사업비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조례」 제 15 조에 따르도록 하거나 도조례를 반복하여 규정할 필 요가 있으면 도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규정한다．

##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8 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1）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도시환 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 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 사업비 100 분의 20 으로 한다． <br> （2）시장은 제 1 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 를 지정개발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3）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 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 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br>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br>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 제 18 조（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등）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비 예치 등에 관해서는 「충청 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 15조에 따른다．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국채또는 지방채 <br> 3．「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 <br> 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br>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 <br> 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  |

（8）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 등）（1）시장은 법 제4조제 5 항에 따라 정비구 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까지 공공관리를 하 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위탁관리 수수료
（2）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 77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시장은 제 2 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 77 조의 4 제 1 항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 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1）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 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신탁업 자，「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 받은 자（이하＂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제 30 조제 4 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에 관한 지원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 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4)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 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 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 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7.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8.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9. 그 밖에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7)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0. 조합이 제 8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제 9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9) 제 8 항제 1 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제2항 및 제 3 항에 따 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공공관리＇를 신청할 수 있고，시 장은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 77 조의 4 제 1 항의 기관 중에서 공공 관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43조 제3항에서는＂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조례의 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 조의 4 제 4 항에서는＂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 담하되，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관 리 위탁의 경우에도 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조합이 위탁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이 조례 제43조 제3항 부분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43 조 제 3 항 중 조합이 해 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삭제한다．

##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43 조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 담 등) (1) 시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 라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 날부터 조 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 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br>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 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br> 2. 위탁관리 수수료 <br>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 77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 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br> (3) 시장은 제 2 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 이 있는 경우 법 제 77 조의 4 제 1 항의 기 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 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 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43조(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 <br> 담 등) (1) - (2) (현행과 같음) <br> (3) $\qquad$ $\qquad$ $\qquad$ <br> -- 한다. |

（9）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15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15 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 25 조제 4 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은 영 제 25 조제 4 항의 각 호로 한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mathbf{2 5}$ 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1）～（3）（생 략）
（4）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30 조 제 5 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다만，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가구（제42조의 2 제 2 항제 4 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 서 같다）면적의 10 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획지면적의 30 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건축물높이의 20 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제 46 조제 7 항제 2 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인 경우
6．건축선의 1 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는 제 18 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다만，용 도지역 • 용도지구 • 도시 • 군계획시설 • 가구면적 • 획지면적 •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 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 률을 감소시키거나 10 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 는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 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 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6）（생 략）

1）검토의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15 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 제 4 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 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 제 4 항의 각 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에서＂시행령～에 따른～은 시행령으로～한다＂라고 규 정하는 것은 조례의 법문으로는 매우 어색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 제 4 항 단서에서는＂다만，제 14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조례 제 15 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 제 4 항 제 14 호의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15 조를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5 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 | 제 15 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 |
| 항）영 제 25 조제 4 항에 따라 관계 행정 | 항）영 제 25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13 호 |
| 기관의 장과의 협의，국토교통부장관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 과의 협의，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 | 는 법 제 30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관계 |
| 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 |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국토교통부 |
| 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 |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
|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영 제 25 | 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 2 항 |
| 조제 4 항의 각 호로 한다． | 에 따릉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
|  |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
|  | 있다． |

## （10）아산시 건축 조례 제 18 조 관련36）

【관련 조례 및 조문】

## 아산시 건축 조례

제 22 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법 제 12 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 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민원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 로 본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 :---: | :---: |
| 제 12 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1）허 가권자는 제 11 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 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 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제 56 조부터 제 62 조까지 및 제 76 조부터 제 82 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제 10 조제 6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 제 5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br> （2）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 | 제 10 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br> （1）（생 략） <br> （2）허가권자는 법 제 12 조에 따른 건 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 부터 10 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3）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 최하기 3 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 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r> （4）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 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

36）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 18 조 관련＂사례（67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 :---: | :---: |
| 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 10 조제 | （5）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
| 7 항 및 제 11 조제 6 항에 따른 관계 행정 |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
|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 1 항에 |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 일 |
|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 |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
| 석하게 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6）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 |
|  | 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 건축조례로 정한다． |

1）검토의견
－「아산시 건축 조례」 제 22 조에서는「건축법」 제 12 조에 따른 건축복 합민원 일괄협의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 무종합심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민원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고 민원의 성 질도 다른 것인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민원실무종합심의를 개최한 경우 건 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하다．
－한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은 2015．8．11．，법률 제13459호（전부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 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6．2．12．부터 시행 중인바，「아산시 건축 조 례」에서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은 법률 개 정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도 있다．

## 2）정비방안

－「아산시 건축 조례」 제 22 조에서 「여수시 건축 조례」 제 17 조 등을 참고하여 「건축법」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 제6항에 따 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한다．

## 참고 입법례

【여수시 건축 조례】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1）법 제 12 조 및 시행 령 제 10 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협의회는 법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법 제 11 조제 1 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 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다만，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3）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간사는 건축 관 련 업무담당이 되고，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4）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담당 또는 담 당자로 한다．
（5）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 내에 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6）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1）정읍시 건축 조례 제 15 조 제 3 항 관련37）

【관련 조례 및 조문】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 15 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1）법 제 27 조제 1 항 및 영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한다．
（2）제 1 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한다．

1．법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 16 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와 법 제 29 조에 따른 협의건축물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2．법 제 19 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법 제 22 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 사 및 확인
4．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제 2 항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방법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 행하도록 한다．
（4）～（5）（생 략）

【관련 법렁 및 조문】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 :---: | :---: |
| 제27조（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  |
| 대행）（1）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 | 대행）（1）허강가권자난 • 검사 및 확인업무의 |
|  |  |

37）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 23 조 제 1 항 관련＂사례（7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 :---: | :---: |
|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법」 제 23 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br> （3）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 급하여야 한다． | 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 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 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br> 1．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닐 것 <br> 2．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br> （2）제 1 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

1）검토의견
－「정읍시 건축 조례」 제 15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대 행자 지정 및 방법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후단 및 제1호에서는 허가 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할 때＂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정읍시 건축 조 례」 제 15 조 제2항처럼 업무대행자 지정은 관내 건축사 중 시장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하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가 업무대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 20 조 제 1 항 제1호에 반할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시장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한 부분을「건축법 시행령」 제20 조 제 1 항 제 1 호에 맞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또는 공사감리 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 행하도록 명시한다．

## 【정읍시 건축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5 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br> 대행）（1）－（2）（생 략） <br> （3）제2항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방법 <br> 은 관내 건축사중 시장이 지정한 자 <br> 가 대행하도록 한다． <br> （4）～（5）（생 략） | 제 15 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1）－（2）（현행과 같음） <br> （3）제 2 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br> 1．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한다． <br> 2．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0 에 따 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 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 니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한다． <br> （4）～（5）（현행과 같음） |

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 3 항 관련【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2 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1）구청장은 공영노상주 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회 이상 체납 하였거나 10 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3）삭제＜2007．06．01．＞
（4）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드는 비용（이하＂해제비 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미 징수
2．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3 만원 징수 （사전고지 후 해제）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2 조의 2 제 1 항 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은 공영노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 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 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 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주차장법령에서는 주차요금 미납차 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조 례로 위임한 바 없는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가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상위법률에 근거를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 （2）포항시 건축 조례 제 12 조제 2 항 단서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건축 조례

제 12 조（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1）법 제 27 조제 1 항 및 영 제 20 조에 따 라 시장이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 （이하＂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 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1．법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 29 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
2．법 제 19 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전 현장조사업무．
3．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4．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2）업무대행 건축사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다만，선임된 업무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을 박 탈할 수 있으며，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최근 2 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반 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 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를 대 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서를「건축 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 하여야 하고，협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협 회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 를 작성할 수 있다．단，「주택법」에 따라 「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포항시 건축 조례

（4）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 1 항제 4 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대행（「건축사법」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 간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호，제 2 호，제 3 호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 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 :---: | :---: |
|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br> 대행）（1）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 <br> 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 <br>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법」 <br> 제 23 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br> 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 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br> （3）허가권자는 제 1 항에 따른 자에 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 20 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br> 대행）（1）허가권자는 법 제 27 조제 1 <br> 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br> 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br>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 <br> 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br>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 <br> 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br>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 <br> 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 <br> 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br> 1．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널 것 <br> 2．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br> （2）제 1 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 :---: | :---: |
| 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

제 113 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9 조제 3 항에 따른 건축물 대장 기 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 24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 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 24 조제 5 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 25 조제 3 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 27 조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 35 조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 75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 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6. 제 77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 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 :---: | :---: |
| 7．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  |
| 8．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  |
| 아니한 자 |  |
| 9．제87조제 1 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  |
|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 |  |
| 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
|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  |
| 교통부장관，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  |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
| （4）삭제＜2009．2．6．＞ |  |
| （5）삭제＜2009．2．6．＞ |  |

1）검토의견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업무대행 건축사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업무정지처 분이 없거나 최근 2 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령에서는＂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경우（1）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2）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이라는 제 한만 두고 있을 뿐，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 니한 바，영업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 하여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만 업무대행 건축사가 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건축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또한「포항시 건축 조례」 제 12 조 제 2 항 단서에서는 선임된 업무대 행건축사가（1）최근 2 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산하여 6 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같은 조례 제 12 조 제 5 항에 따른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 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대행건축사의 자 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이 경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대행건축사 자격박탈 및 재선임 금지는 업무대행건축사의 기 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상위법률의 근 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자격박탈 및 재선임 금지’에 관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2）정비방안
－영업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 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 개 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만 업무대행 건축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 한 「포항시 건축 조례」 제 12 조 제 2 항 본문 및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박탈 및 재선임 금지에 관해서 규정한 같은 항 단서，각 호는 삭제한다．

## 【포항시 건축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2 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1）법 제 27 조제 1 항 및 영 제 20 조 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 를 건축사（이하＂업무대행 건축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 경 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 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br> 1．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 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 한다．이하 같다）전 현장조사업무． <br> 2．법 제 19 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 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신청전 현장조사업무． <br> 3．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br> 4．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 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br> （2）업무대행 건축사는「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 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없거나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합산하여 6 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다만，선임된 업무 대행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 제 12 조（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업무의 <br> 대행）（1）（현행과 같음） |


| 현 행 | 개정안 |
| :---: | :---: |
| 건축사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로의 재선임은 1년 이 경과하여야 한다． <br> 1．최근 2 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통 산하여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 분을 받은 경우 <br> 2．제 5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br> （3）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2）～（4）（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와 같음） | 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 호 서식의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 청서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등록하여야 하고，협 회는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다만，협회의 통보 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 성할 수 있다．단，「주택법」에 따라「건축법」이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따라 제 1 항제 4 호에 대한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건축사법」제28조에 따 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제 1항 제 1 호，제 2 호，제 3 호에 대해서 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

| 현 행 | 개정안 |
| :---: | :---: |
| 여금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  |
| 수 있다. |  |
| (5)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  |
| 대행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 |  |
| 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 |  |
| 서를 시장(市長)이 정하는 기한까지 |  |
| 제출하여야 한다. |  |

## （3）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 21 조 제 4 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21조（과징금 처분）（1）영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 와 같다． （2）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 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 일 이내로 한다．
（3）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 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 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 라 징수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 :---: | :---: |
| 제 24 조의 2 （과징금처분）（1）제 24 조에 따 | 제 17 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
| 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 | 과징금의 금액 등）（1）법 제 24 조의 2 |
| 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 |
|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
| 로 정한다． | 별표 5 와 같다． |
| （2）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 （2）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 |
|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 주차장의 귬，ᅩ，노외주차장 설치지 |
| 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


|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
| :---: | :---: |
|  | 횟수나，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 1 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 분의 1 의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br> 제 18 조（과태료의 부과기준）（1）법 제 30조제 2 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 6 과 같다． <br> （2）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2 분의 1 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

1）검토의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 21 조 제 4 항에서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체납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에는＂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주차장법」 제24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한 것은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지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니므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제3항，「정읍시 주차 장 조례」 제 21 조 제 4 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과징금 처분）（1）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 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 일 이내로 한다．
（3）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10 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4）제1항에 따라 부과된 징수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영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8 과 같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 21 조（과징금 처분）（1）영 제 17 조에 따른 과징금가감 기준은＂별표 6 ＂과 같다．
（2）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발부일로부 터 20 일 이내로 한다．
（3）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 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정비방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제21조 제4항 중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다．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1 조（과징금 처분）（1）영 제 17 조제 2 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9와 같다． <br> （2）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 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 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 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 야 하며，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 일 이내로 한다． <br> （3）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 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br> （4）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 일 이 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 고 체납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br> （5）제 1 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 제 21 조（과징금 처분）（1）～（3）（현행과 같음） <br> （4） $\qquad$ $\qquad$ $\qquad$ |

（4）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38 ）제 13 조 제 2 항 관련39）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3 조（한옥 등의 보존기간）（1）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 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 실해서는 아니 된다．다만，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제 16 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 급한 날부터 5년

2．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2）제 1 항의 보존기간 중에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조례에 따 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3）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을 받은 한옥 등을 제 1 항에 따른 보존기간에 마지못해 철거•멸실할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 여야 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에서는 보 존기간 중에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

38）한편，「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한 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 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7 조 제 3 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 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이 시행규칙 제9조 제 1 항은 상위 조례에 반할 뿐 아니라，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
39）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 5 조 제 2 항 관련＂사례（82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 가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옥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한옥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의 소유권 변경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상 위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5）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40）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4 조（자동차표지 발급 등）（1）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 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제 1 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위반차량 조치）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동차 와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 게는 다 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임산 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 시에는 예 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이를 위반 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와 임산부가 탑승하 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0）이 사례는 2015 연구 중＂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 관련＂사례（8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지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에서는＂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 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 주차，견인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려면 상위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 것 이다．

2）정비방안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최근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9．］［법률 제13109호，2015．1．28．，일부개정］）제17조 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주차 금지 및 단속 등에 관하여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이를 참고하여 이 법에 임산부전용주차 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1)}$

## 참고 입법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 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1）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 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3）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

41）이세정，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90 쪽．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참고 입법례

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 니한 경우에도 같다.
(5)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7) 제 2 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 3 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 5 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 관련42）
【관련 조례 및 조문】

##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 관리조례

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사용료를 3 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제 7 조를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1）검토의견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8조 제4호에서는 원주시 공용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의 하나로＂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를 들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 한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43）을 말하는데，명확성의 요청은 규범 자체의 명확 성，적용가능성，수범자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다．44）

42）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 관련＂사례（9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43）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2014，479쪽．
44）박영도 외，앞의 보고서，54쪽；이세정，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조례의 내용은 충분히 명확하여야 하고 자명하여야 한다．45）조례 의 수범자가 그 규범내용을 인식할 수 없으면，그 조례는 명확성 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46）
－통상 헌법상의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 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조례 규정이 부 담적•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47）사용허가의 취소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조례에서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처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 반하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오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 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호도 이 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 조（사용허가의 취소）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연구，95쪽．
45）홍정선，신지방자치법，344쪽；이세정，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95쪽．
46）R．Stober，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3．Aufl．，1996，S．
272；BVerfGE 5， 31 f．；22．346．홍정선，신지방자치법，344쪽 재인용．
47）이세정 외，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법제처，2013，108쪽．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 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유예기간을 줄 수 있고, 즉시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입주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 6 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6.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 불안정으로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시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정비방안

-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원 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8조 제4호를 삭제하 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2）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호 관련48）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7 조（위원의 위촉해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는 위원을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특별한 사정이 없이 3 회 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정당한 회의의 진행을 방해한경우

3．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4．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협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6．협의회에서 취득한 정보를 투기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1）검토의견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제 4호에서는＂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 확하고 주관적•가치 비중립적이어서 주민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 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48）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 5 조 제 2 항 제 3 호 관련＂사례（31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분야
2) 정비방안

-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평택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관련49）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 4 조（부담금의 반환 등）（1）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 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 적 또는 길이의 90 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 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 우 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3）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 연2회 반기별로 정산 할 수 있다．

## 1）검토의견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서는＂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서＂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매우 불명확한 사유 로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발생시키거나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49）이 사례는 2015 연구 중＂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사례（102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 제1 항 제 3 호，「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제 1 항 제 3 호，「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9조 제 2 항 제4호 및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 12조 제3호，「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7조 단서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mathbf{5}$ 조（원인자부담 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1）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 복구공사 가 필요치 아니하게 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 보다 작아 도 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다만，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3）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 $\mathbf{5}$ 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1）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최 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 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3）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 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 사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9조（부담금 환부）（1）시장 은 원인자가 손괴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을 한 후 부 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다 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 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은 굴착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다만，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 를 환부할 수 있다．
1．시의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제 7 조（부담금 환부）기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다만，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 1 절 국토•교통 관련 분야
2) 정비방안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환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 성을 제고한다.
（4）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7에 관한 조례 제 25 조 제 2 호 및 제5호 관련50）

【관련 조례 및 조문】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5 조（지원금액의 환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 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검토의견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5 조 제 2 호에서 는 도시재생사업 지원금액의 환수 사유로서＂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같은 조 제5호에서는＂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 였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를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어떠한 행위가 법에서 금지되고 또 한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해지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원칙51）을 말한다．

50）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5조 제5호 관련＂사례（9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51）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 479 쪽．이 보고서의 검토의견란에서 논거가 되는 원칙， 기준，사유 등과 관련하여 각주를 달 경우 최초로 언급하는 부분에서 각주를 달고 그 이후에는 재차 각주를 달지 아니함을 밝힌다．

- 통상 헌법상의 명확성의 정도는 개개의 법률이나 법 조항의 성격 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 규정이 부 담적•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52) 지원금액의 환수를 비롯한 각종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조례에서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 적용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53)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 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오고 주민의 예측가 능성• 법적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지원금액의 환수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강릉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5 조 제 2 호 및 제 5 호를 삭제 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

52) 이세정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108 쪽.
53) 이세정,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97쪽.
（5）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항 제2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6 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1）～（5）（생 략）
（6）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1．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2．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검토의견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강 릉시장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위탁 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장이＂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공영주차장의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공영 주차장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소 지가 있다．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취소）（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 지할 수 있다．
1．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수탁조건，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제 1 항제 1 호와 제 2 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 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해지 예정일 30 일 전까지 그 사 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정비방안
－공영주차장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 나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6항 제2호를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명예감독관의 의무）（1）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 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에 책임을 진다．
（2）명예감독관은 각종 민원사항과 공사추진 및 제반업무에 노력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 항에서는＂명예감독관은 각종 민원사항과 공사추진 및 제반업무에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문의 문장은 문법에 맞지 아니하고 명예감독관이 어 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2）정비방안
－명예감독관의 노력 의무를 문법에 맞게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7）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 17 조 제 6 호 관련54）
【관련 조례 및 조문】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 17 조（지급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1．익명이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3．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4．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해당 신고사항이 수사 중에 있는 경우
5．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6．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1）검토의견
－「청주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 17 조 제 6 호에서는 청주시부실 공사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를 열거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원회의 심의 결 과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매우 불명확한 사유로 포상금 지급을 하 지 아니하게 되어 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을 초래하거나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할 소지가 있다．

54）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 13 조 제 5 호 관련＂ 사례（10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포상금 미지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밖에 위원 회의 심의 결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를 삭제하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 성을 제고한다.


## （8）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10 조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10 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법 제 47 조제 3 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단위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 년 만기 정기예금 금 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지방자치법」제 124 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확정 내용에 따른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 조（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1）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 • 위치 •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용도지역 •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고，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1）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 되지 아니하는 경우（제 88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 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같다）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이 경우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 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 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2）매수의무자는 제 1 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 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 년 이내로 하며，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 는 1 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4）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5）도시 •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매수의무자는 제 1 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 사 • 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매수하기로 결 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 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제 1 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을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제54조，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 지 아니하는 경우

1）검토의견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 10 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단위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 년 만기 정기예 금 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지방자치법」 제 124 조에 따른 지 방채 발행 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지방자치법」 제 124 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확 정 내용에 따른다＂라는 문장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 간 및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매수 대금을 받은 토지소유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조례의 집행상 혼란을 가져다 줄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 거나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면 「강릉시 도 시계획 조례」 제 14 조 등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다．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참고 입법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법 제 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10 년 이내로 하며，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 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 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지방재정법」제 11 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4．기 타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 조 제 2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 조（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1）제6조제 3 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힉은 「건축법，등 제반 법령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 조 제 1 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 6 조 제 3 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 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같은 조례 제7조 제 2 항에서는 건축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디자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갖고，위원회의 자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바，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는 것만으로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 은 부적절하다．

2）정비방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되，구청장은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 문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7 조（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1）제 | 제 7 조（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1） |
| 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 |  |
| （현행과 같음） |  |
| 획은 사업 시행 전에 건축디자인위원 |  |
| 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
| （2）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2）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br>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건축디자인위원회의 자 <br>  문을 시설물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br> 노력하여야 한다．  |  |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및 제5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 3 조（구성）（1）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하여 15 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기획예산과장
2．교통행정과장
3．도시계획과장
4．건설관리과장
5．도로과장
6．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7．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제 $\mathbf{5}$ 조（회의）（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회의는 매년 1 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4）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 의에 갈음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1항 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 인을 포함하여 '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1) 기획예산과장, (2) 교통행정과장, (3) 도시계획과장, (4) 건설관리과장, (5) 도로과장, (6)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7)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상에 따르면 15 인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8 명이 되고, 민간 위원은 7 명이 되는바,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에 공무원인 위원들 의 견해에 의해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또한 같은 조례 제 5 조 제 4 항에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장도 위원이므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 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가부동수인 경우 위 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한 부분은 삭제한다.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려면 위원회의 정원을 늘리거나 당연직 위원 중 일부를 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영등포구의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가부동수인 경 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만 정비안 으로 제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mathbf{5}$ 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 제 $\mathbf{5}$ 조(회의) (1) ~ (3) (현행과 같음) |
|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
| (2) 정기회의는 매년 1 회 개최하고 |  |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
|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  |
| 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  |
|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4)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 삭 제> |
|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
| (5)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 (4) (현행 제5항과 같음) |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 |  |
| 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

(3)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장 관련55)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 3 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13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 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2)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 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관리) (1)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굴착과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DB 구축(갱신)에 관하여 평택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55)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9조 관련" 사례(127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공간정보의 DB 구축(갱신)은 사업 준공일로 한다.
(3)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1)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 치 -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50 일 이내에 도로기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 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 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전담부서의 장은 제 15 조제 1 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 후 20 일 이내에 현 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도)을 시공 사에 전달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시공사로부터 성과 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전담부서의 장을 경유 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1)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 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 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3)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5 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 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8 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1)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장（제12조부 터 제 18 조까지）에서는 공간정보체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역할 등 행정 내부적인 사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행정 내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훈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4장 및 제27조도 이와 마찬가지 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 【청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 4 장 공간정보업무 지정 및 시스템 운영
제15조（업무지정）시장은 공간정보 자료관리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총괄부서，관리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총괄부서
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리의 기획 및 총괄
나．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시설 $(\mathrm{H} / \mathrm{W}, \mathrm{S} / \mathrm{W}$ ，네트워크，응용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다．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갱신，유지관리
라．관리부서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세부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따른 협 조•조정 및 지원
마．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 관련 계획수립，교육，관리 총괄
바．수치지도 수정•갱신
사．공간정보 자료제공
아．자문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 관리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수정•삭제 등 최신의 자료 상태 유지를 위한 신속한 자료 갱신 또는 파일제출
나. 도시기반시설물을 신설 • 추가 • 보완 • 변경 공사할 때 위치와 속성값이 표시된 시설물도 파일 생성 및 총괄부서에 결과 파일 제출
다. 입력된 공간정보데이터 확인 점검
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자료유출 금지 등 공간정보 보안사항 준수
바. 관리부서 공간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사. 단말기 운영 및 유지관리

제16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1) 공간정보 관련 주전산기 등은 총괄부서의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관리부서에 설치한다.
(2)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설 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 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 관련업무 추진상 효율성 및 공간정보 구축자료의 공동 활용성 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개별적 DB 운용 또는 시스템 설치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5)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장비별 - 업무별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관 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간정보데이터의 통합관리) (1) 공간정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여 통 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각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공동 활 용 할 수 있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에 대한 계획수립•통합시스템 구축 및 유지 운영 등을 위하여 관리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시스템 등록•수 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야 한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제 18 조(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1) 관리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정보 DB 국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에 따른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부서 및 관계 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신설, 변 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반드시 작성하거 나 수정하여 주전산기에 입력 또는 총괄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탐사 및 측량은 절대측량으로 한다.

제19조(공공기준점 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준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관리) (1) 총괄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 의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갱신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도형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하면 관리부서 에서는 준공 후 3 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처리기한까지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관리부서의 장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수치지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의 백업 등 전산파일의 보존 및 파손 방지에 대비 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의 안정성 확보 및 복구)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멸실, 훼손 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 며, 전산파일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장을 삭제하 되,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수수료의 반환）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 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2조에서는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 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는＂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개 별적•구체적인 대가성（代價性）이 있는 것이다．56）
－공간정보관련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행정기관 의 서비스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 이 되어 주민은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게 되고 행정은 부당이익을 누리는 것이 된다．

56）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411쪽．
2) 정비방안

- 일정한 수수료 반환 기준을 정하여 공간정보관련 자료 사용 중 사 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일부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제 7 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1）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 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시장은 영 제 13 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검토의견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시장은 영 제 13 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는＂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그 밖의 일반인으 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행정절차법 제2 조 제6호）으로 공청회에 드는 모든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이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민 주적이다（이 조례에서는 제안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제안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2）정비방안
－공청회의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지울 수 있도록 한 「평택시 도시 개발 조례」 제7조 제2항을 삭제한다．

## 【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7 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1) 시 | 제 7 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현행 |
| 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 제1항과 같음) |
|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 |  |
|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
| 을 지급할 수 있다. |  |
| (2)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 <삭 제> |
| 개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제안자 |  |
|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6）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1）법 제43조제 3 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 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 29 와 같이 지정한다．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9 에서 정하지 않은 시 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 장이 지정한다．
（3）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평 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평택시 사무위임규칙』，『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및『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1）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 명칭 • 위치 • 규모 등을 미리 도시 •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다만，용도지역 •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고，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3）제 1 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 • 군계획시 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 10 조 제 1 항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 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 29 와 같이 지정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별표 29 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 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조직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무엇보다도 추가로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도 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이 관리부서를 지정하도록 한 것은 시장의 보조기관인 국장이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역 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1）법 제43 <br> 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삭 제＞ |
| 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br> 별표29와 같이 지정한다． |  |
|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 삭 제＞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불분명하거나 별표 29에서 정하지 |  |
| 않은 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관리부 |  |
| 서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 |  |
| 획업무 담당 국장이 지정한다． |  |
| （3）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 （현행 제3항과 같음） |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  |
| 재정법』，『평택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
| 조례』，『평택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 |  |
| 용료 등 징수 조례』，『평택시 사무위 |  |
| 임규칙』，『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  |
| 조례』및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  |
|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

（7）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 4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제 17 조（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1）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 무가 있는 건축물，공원，도로의 허가，시공，사용승인，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 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 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시장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사전 점검토록 함에있어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사전점검 대상）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공원，공중이용시설，도로로 한다．다만，국가와 정부투자기관，지방자 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제 7 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한다．

제 19 조（시설 주와의 협력）（1）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 의 취지를 통보하고，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해당 부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준공 이전에 점검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 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시설주의 의무）（1）시설 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 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 21 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1）센터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제 2 장 국토•교통/산업 - 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 3 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 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 여야 한다.

제 22 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1)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 시설이 잘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 와 교통약자의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평 택시는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 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 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검토의견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제17 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보행환경 개선 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는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조례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보행권과는 직 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인바，이 조례 전체의 목적，체계 및 내 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도 2007년 12월 28 일자로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경기도평택시조례 제858호）가 제정되어 「평택 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바，「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2）정비방안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장（제17 조부터 제 22 조까지）을 삭제한다．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비안】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 개정안 |
| :---: | :---: | :---: |
| 제21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1) 센터 <br> 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 일 이 <br> 내에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br> 서식 또는 별지 제 2 호서식)를 작성하여 <br>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2) 만일 3 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 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br> 제22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1)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 한다. <br> (2)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 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부서의 의 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 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삭 제> |  |

제 2 장 국토•교통／산업•자원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8）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관련57）

【관련 조례 및 조문】

##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교육 및 홍보）（1）시장은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연 1 회 실시하여야 한다．
1．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관한 서비스 교육
4．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제 1 항의 교육은 강원도지사 및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 보하여야 한다．
（4）시장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이 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1）교통사업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 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7）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9조 관련＂ 사례（16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 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 1 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검토의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3 조 제 1 항에서는 교통사업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 • 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방법，내 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 15 조에 서는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에 관 한 대강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방법이나 경비 등에 관 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 전자에 대한 교육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교통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방법，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다．
（9）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3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시민모니터단 구성）（1）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2）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그 결과를 위원장에 게 제출한다．
1．시내버스의 안전운행，서비스 실태 점검
2．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1）검토의견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3 조 제1항에서는＂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는 청주시 대중교통정책에 관해서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회의 자문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 등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위원회에＇위원＇이 아닌＇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두는 것은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입법례에 비추 어 부적절하다．

2）정비방안
－시민모니터단을 시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시민모니터단의 자격，구성，임기，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모니 터단의 실질적 운용을 도모한다．
（10）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 1 조（목적）이 조례는「국토이용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의2제2항제6 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과태료처분 통지 등）시장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위 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 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 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 조（과태료 부과기준）（1）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별표＂의 과 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2）＂별표＂과태료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한다．

제 4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1）시장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 33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 3 호서 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 제 33 조의 2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별지 제 4 호서 식＂에 의한다．

제 5 조（과태료의 귀속）（1）법 제 33 조의 2 제 2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 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다만，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 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제 7 조（준용규정）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2003．1．1．］［법률 제6655호，2002．2．4．，타법폐지］

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검토의견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에 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 2 항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은 2002년 2월 4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6655호，2003．1．1．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는바，「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 료부과징수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이다．

2）정비방안
－「정읍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 제 2 절 산업－자원 관련 분야

## 1．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제4호 관련58）

【관련 조례 및 조문】

##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위탁의 취소 등）（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릉시 장은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부정한 방 법으로 시장관리자 지정을 받은 때
2．시장의 승인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시설물을 변경 또는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때
3．사용료 부당징수，시정명령 위반이 3 회에 달한 때
4．관리 • 운영능력이 불량한 자 등 시장관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1）검토의견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 35 조 제 4 호에서 는 강릉시장은＇관리－운영능력이 불량한 자 등 시장관리자로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 물 중 강릉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위탁을 취소하 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장이＂관리•운영능력이 불량한 자 등 시장관리자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

58）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호 관련＂사례（18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 명확하여 시설물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제 12 조 제 2 호，「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제 19조 제1호 및 제3호，「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 29 조 제 3 호 및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 18 조 제 3 호，제 4 호 및 제 33 조 제 1 호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 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조（위탁의 철회）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는 창업지원센터의 공동 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 10 조의 의무와 제 11 조의 지도•감독 관련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2．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기타 공동 운영 및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수탁자가 제 16 조에 따른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제29조（관리위탁의 취소 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임시시장의 영업정 지）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 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 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33 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1）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다만，경미한 화재의 경 우는 제외한다．）
3．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제 1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 문절차를 거친다．

2）정비방안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사유를 보다 명확하 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조례」 제 35 조 제 4 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관련59）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 조（예우－지원 중단）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 처로 규제된 경우
4．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1）검토의견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호 에서는 포항시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중단의 사유로＂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유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단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고，무엇보다도 과연 어느 정도로 직업병 이 발생한 경우에 이 조에서 말하는＂직업병 다발＂에 해당하는 것 인지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 고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소지가 있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 14 조 제 4 호，제 5 호 및 제 7 호，「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59）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 7 조 제 1 호 관련＂사례（18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1호 및 제3호，「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6 조 제 1 호，「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 한 조례」 제6조 제1호 및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14 조 제 4 호부터 제 7 호까지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 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 6 조（예우•지원 중 단）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 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부도 등으로 3 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 처로 규제된 경우
4．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선정취소）시장은 유망 강소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에서 취소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제6조에 따른 선정대상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
4．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세금체납，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제 13 조에 따른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하거나 육성 의지가 없는 경우
7．시장이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시장은 제 12 조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제 14 조에 따 른 기업이나 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다만，기업의 합병，법인전환 등으로 그 동일성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기업이나 기업인의 과실로 중대한 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업인
3. 부도 등으로 3 개월 이상 휴업 -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 로 규제된 기업이나 기업인
4.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업인
5. 부도 등으로 3 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 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 조(적용배제) 시장 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 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 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비방안

-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중단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 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방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 을 제고한다.
（3）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4조（지원 제외 대상）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다수인관련민원을 야기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 상에서 제외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34조에서는＂환경정책기 본법 제 3 조 제 4 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다수 인관련민원을 야기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 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다수인＇이 몇 명을 말하는지 매우 불명확하고，＇다 수인관련민원＇이 다수인에 의해서 제기된 민원을 말하는 것인지， 다수인에 관한 민원을 말하는 것인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중의적 （重義的）해석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

2）정비방안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예외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제외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 한다．

## 2．기 타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부담금）（1）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임대료，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 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2）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회의실 등 창업지원센터 공동 시 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용료 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3）구청장은 제 1 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 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제7조는 ‘부담금’이라는 조명（條名）하에＂입주자는 소정 의 보증금，임대료，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이하＂부담금＂이라 한 다）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증금，임대료，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금’으로 약칭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이 보증금，임대료，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부 담금’으로 약칭할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부담 금＇（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 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 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과 혼동될 수 있는바, 이 조례에서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금으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약칭한 ‘부담금’을 ‘보증금 등’ 정도로 수정한다.
（2）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 4 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 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 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 업을 말한다．
2．＂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를 말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서는＂지역건설 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상 권리 • 의무의 주체는＇인（人）＇만 될 수 있는바，‘지역 건설산업체＇를 의무의 주체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정비방안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건설산업체＂로 정의하고 있는바，이 조례 제4조의 책무의무의 대상을 건설산업체로 규정한 것은 이 조례 제 2 조 제 2 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이 조례에서 말하는＂건 설산업체＂는 ‘건설사업자＇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 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br> 1．＂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 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포항시（이하＂시＂라 한 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br> 2．＂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 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br> 제 $\mathbf{4}$ 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 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 조（정의）（현행과 같음） <br> （현행과 같음） <br> 2. $\qquad$ ＂건설사업자＂－ $\qquad$ $\qquad$ $\qquad$ $\qquad$ <br> 제 4 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지역 건설사업자 $\qquad$ $\qquad$ $\qquad$ $\qquad$ |

（3）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 20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 20 조（사업의 점검 등）시장 및 위원회는 제 11 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소속 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 13 조（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지원 대상지역 및 사업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보조금 지원금액 등과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검토의견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 20 조에서는＂시 장 및 위원회는 제 11 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 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는 시장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문을 해주는 자 문기구로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상황 점 검，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 2）정비방안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21조 중 위원회 가 같은 조례 제 11 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 한다．

##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0 조（사업의 점검 등） $\qquad$ 회는 제 11 조에 따른 감독과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20 조（사업의 점검 등）시장은 $\qquad$ $\qquad$ $\qquad$ |

（4）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재정지원）（1）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에너 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4조 제1항에서는＂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은 시장이 하는 것인바，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정비방안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청주 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은 삭제한다．

##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4 조(재정지원) (1) 시장은 에너지 정 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원할 수 있다. <br> (2)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사업자, 에 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 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br> (3)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 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 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 제 14 조(재정지원) <삭 제> <br> (2) - (3)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제 1 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1.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1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 6 조(자격과 임용) 제3조에 따른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2. 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 과 같다.
4. 비상근 소장은 지역유지로서 신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1 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 심의 • 연구 •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 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및 부위원장 1 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 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3）당연직위원은 안전도시국장 및 과장 10 명 이내로 하고，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 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 인 이내로 구성하며，그 회의가 종 료함으로써 해촉된다．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5）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 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 :---: | :---: |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1）특별시 <br>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 <br>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및 <br>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br>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br>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 <br> 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br> 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 <br> 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 <br> 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 원하여야 한다． <br> （3）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 항에 따 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 제 14 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br> （1）법 제 29 조제 1 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청소년상 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의 기능을 수행한다． <br> 1．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 지지원 <br> 2．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br> 3．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 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br> 4．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 한 전화 운영 <br> 5．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 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법률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 :---: | :---: |
|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br> （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 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br> （5）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 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br> （6）제 1 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 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및 의료 지원，일시 보호 지원 <br> 6．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및 재활（再活）지원 <br> 7．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br> （2）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 명을 두고，관리업무，청소년 대상 실무업무，일반 행정업무를 수 행하는 직원을 두며，일시보호시설 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 는 직원을 둔다． <br> （3）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는 장 1 명을 두고，관리업무，청 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 원을 둔다． <br> （4）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 영 기준은 별표 1 과 같고，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 14 조제 4 항 관련）

2．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구 분 | 자격기준 |
| :---: | :---: |
| 가． | 1）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
| 센터의 장 |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
| :---: | :---: |
| 구 분 | 자격기준 |
|  | 2）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 <br> 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br> 3）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br>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br>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4）청소년상담사 1급 |  |
| 5）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 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 |  |
| 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 |  |
| 정하는 사람 |  |

1）검토의견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1호에서는 정읍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시•군•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 명을 두고，관리업무，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센터장의 자격이나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 지 아니한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임명 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정비방안
－정읍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을 채용할 때「청소년복지 지 원법 시행령」 제 14 조 제 4 항과 결부된 별표 2．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면 될 것 인바，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 1 호는 삭제한다．

##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6 조（자격과 임용）제3조에 따른 상담 <br> 복지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br> 따른다． |  |
| 제 6 조（자격과 임용）（현행과 같음） |  |
| 1．소장은 시정조정위원회 추천을 | ＜삭 제＞ |
|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
| 2．팀장과 팀원（행정원 포함）은 공개 | 1．～3．（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필요 | 와 같음） |
| 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  |
| 시장이 특별임용할 수 있다． |  |
| 3．직원 등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  |
| 1 과 같다． |  |
| 4．비상근 소장은 지역유지로서 신 |  |
| 망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  |

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고용승계）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 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단，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 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 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위탁계약기간
3．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다만，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제 1 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 조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위탁기간 중 또는 만 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 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단，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 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 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은 새로 수탁자가 된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 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고，계 약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
－한편，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의 2 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조례 제 12 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정비방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 조를 삭제하고，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개별 위탁 시 위탁계약에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 |
| 제 12조（고용승계）위탁기간 중 또는 만 | ＜삭 제＞ |  |
| 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 <br> 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  |  |
| 보장해야 한다．단，사업수행에 중대한 |  |  |
|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  |  |
|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  |  |
| 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 18 조 제 2 항 및 제 3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 18 조（제공인력）（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 26 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활동지원사업 교 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3）활동지원인력은 소속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4대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 재해 • 사망 등 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6 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제 16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 27 조（활동보조인）（1）제 16 조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 28 조제 1 항 에 따른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법 제 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으로 한다．

1．법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활동 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2．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방 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 양보호사 중 1 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육과정을 수료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br> （2）제 1 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교육 과정，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법 제 1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방 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br> 가．「의료법」 제 2 조에 따른 간호 사로서 2 년 이상 간호 업무 경 력이 있는 사람 <br> 나．「의료법」제 80 조에 따른 간호 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 3 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 한 사람 <br> 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 18 조 제 2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를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활동지원인력은 소속된 제공 기관을 통하여 4대 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활동지원서 비스 제공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활동지원인력에게 이상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려면＂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 서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2）정비방안
－활동지원인력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감염병 등에 걸릴 위험이 있으 면 상위법률에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활동지원인력의 서 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 12 조 제4항을 참고하여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구청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 입법례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활동보조인 지원 등）（1）장 애인 및 보호자는 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등록하며，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센터는 활동보조인의 활동시간에 준하는 활동비를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4）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시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3．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 5 호 관련60）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4조（위탁의 취소）（1）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법규를 위반 하였을 때
2．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수탁자가 제 22 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 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받았을 때
（2）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 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제 1 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 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는＂수 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를，같은 항 제 5 호에서는＂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 적，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 이 된 때＂에는 영등포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등포구 보육

60）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강원도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 4호 관련＂사례（225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위탁 취소 사유는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수 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특히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 및 품위손상으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수탁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 재를 받게 되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2호，「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4조 제3호，「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2호，「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 조 제 1 항 제 4 호 및 제6호도 이와 마찬가지 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수탁자가 제 8 조부터 제 10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가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4．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5．제 8 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 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제 1 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의 취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
2．수탁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수탁기관이 제 10 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수탁운영기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
소）（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위탁•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수탁자가 위탁 • 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위탁의 취소 등）（1）시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민원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2）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 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다만，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의 취소와 지원 중단）（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관련법규 위반，회계 부정，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시설사용이 쉼터의 기능에 위배된 경우
6．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 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 • 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 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24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61）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1）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 5 조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국ㅁㅁㄴ곽궁ㅈㅇㄴㅂㅂㅂ

제 9 조（금연을 위한 조치）（1）삭 제＜2011．6．7．＞
（2）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3）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 를 부착하여야 한다．
（4）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 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 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각 호 생략）
（5）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61）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사례（21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국민건강증진법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
니 된다．
（7）삭 제＜2011．6．7．＞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6 조 제 1 항에서는＂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는 이 조례에 따른 흡연구역의 설 치 등에 관한 주민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사유가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하고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현저 하게 저해함으로써 행정청과 주민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7조 제1항 및「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 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7 조（금연구역 지정 변 경 등）（1）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는 해제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 5 조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 조（금연구역 지정 변 경 등）（1）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 는 해제할 수 있다．
（2）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준용한다．

2）정비방안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만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면，법령 차원에서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기본적 사유를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정비안 】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6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1）구  <br>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1）－－－ <b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62）이세정，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219쪽．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 우(or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할 수 있다. | $\frac{\text { 경우)에는 ------- }}{1 .}$ |
|  | 2. |
|  | 3. |
| (2)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 |  |
| 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 | (2) (현행과 같음) |
|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3）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63）

【관련 조례 및 조문】

##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의 취소）（1）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 11 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제 1 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검토의견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주시장은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시장이＂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의 자 의적 법집행을 초래하거나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청과 수탁자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63）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강원도 사회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 4호 관련＂사례（225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도 이와 마 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 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제12조（위탁의 취소）（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 다．다만，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 절 보건•복지 관련 분야
2) 정비방안

-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 로 규정하거나 「원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 조 제 1 항 제 2 호를 삭제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4. 기 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장비 등을 시설의 운영에 적정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 불공정한 사 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 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 - 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1)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 불 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 •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 • 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1)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 리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 장비 -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 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 • 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 • 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 장에 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6)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다 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7)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에서는＂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축에 드는 비용을 수탁자가 조달한 경우에도 시설을 구 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것은 영등포구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 이므로 부당하다．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5항 및「서울특별 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15 조 제 5 항에 비추어 보 더라도 모든 경우에 기부 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 18 조 제 7 항도 이와 마찬 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 18 조（수탁자의 의무）（1）수탁자는 복 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 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5）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 구하거나 복구비용에 든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6）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7）수탁자가 시설을 증축•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준공 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다만，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8）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 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정비방안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 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도록 한「서울특별시 영등 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 12 조 제 1 항 제2호를 삭제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제 13 조 제 5 항처럼 기부 채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 7 조（지원의 제한）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 고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경우
2．영업주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 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조（지원사업）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1．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주 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컨설 팅 및 교육 지원사업
3．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
5．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검토의견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르면＂영업주와 건 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1）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 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 선사업，（2）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 한 연구개발，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3）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위생수준 향상을 위 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5）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이 중（1）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주방 및 간판 등 시 설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건물 그 자체와 무관한 지원 이므로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한 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정비방안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지원 제한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7 조（지원의 제한）지원대상 위생업소 <br>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br> 1．「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 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 나，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 게된 경우 | 제 7 조（지원의 제한）（1） $\qquad$ $\qquad$ $\qquad$ <br> 1．－2．（현행과 같음） |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2. 영업주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지 아 니한 경 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괄호 신설)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 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 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 소할 수 있다.
5. $\qquad$
$\qquad$
-(제 4 조제 1 호에
따른 사업만 해당한다)
(2) (현행 제4호와 같음)
（3）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 6 조 제 1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 6 조（사용료）（1）화장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다만，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 분의 800 을 징수한다．다만，영덕 • 울릉군민에 게 는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2）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다만，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사용자）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시 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검토의견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첫 번째 단서 에서는＂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용료의 100 분의 800 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포항시민 이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8 배나 많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 은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포항시민에게 우선적 사용이 가능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 다하여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이는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례 제4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도 문제가 있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용료 금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한다.
（4）청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보육 조례

제16조（위탁 취소）（1）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25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수탁자가 제 15 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4．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다만，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3）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 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 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는 시립어린이집 관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그 단서에서는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방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면 서 행정청의 주관적인 의사나 독단과 편견에 의한 결정을 방지하

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바，${ }^{64)}$ 수탁자 가 시립어린이집을＇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지 않는다면，행정청이 임의로 운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 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수탁자에게는 운영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확정적이지 않는 의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생략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의견진술제도를 두고 있는 조례의 취지를 몰각시킬 소 지가 있다．

2）정비방안
－수탁자의 의견진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의견진술을 생략하도록 하기 보다는「행정절차법」 제22조 제 4항처럼＂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 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 청주시 보육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6조（위탁 취소）（1）시장은 위탁기간 | 제16조（위탁 취소）（1）（현행과 같음） |
| 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 |  |
| 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할 |  |
| 수 있다． |  |
| 1．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
|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  |
| 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  |

64）이세정，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3．6，75쪽．

## 현 행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 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3. 수탁자가 제 15 조의 의무를 위반 하 였을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 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 략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2) $\qquad$
$\qquad$
--------------------. 다만, 수탁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 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하는 경우에는 3 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5)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 조(운영요원) (1) 수탁자는 대학생, 퇴직공무원 및 교사, 주부 등을 활용하여 공 부방에 1 명의 상근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1 \sim 2$ 명의 일일 보조 자원 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상근자는 청소년들의 학습지도와 생활고충 상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4) 상근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해치는 청소년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원증

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일 운영 일지를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9 조(공부방운영위원회 구성운영) (1) 수탁자는 공부방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하여 각 공부방에 공부방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 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부방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2. 공부방 분위기 쇄신을 위한 협의
3. 위원회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4. 공부방 운영실태 분석 및 연말결산
(3)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위원 5 명 이상 9 명 이 하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성별을 고 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연 2 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 조 제 2 항에 서는 청소년공부방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에는 공부방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부방운영위원회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 여 각 공부방에 두는 일종의 자문위원회로서，조례에서 수탁자에게 상근자 채용 시 공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수탁자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정비방안
－수탁자의 자율적 인사권 보장을 위하여 수탁자가 상근자를 채용할 때 에는 공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청주시 청소년공 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 조 제 2 항은 삭제하거나 청소 년공부방 상근자 채용 시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 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정도로 수정한다．
（6）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관련【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 3 조（지원 대상）（1）귀농－귀촌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가진 귀농인 및 귀촌인 으로 한다．
（2）제 1 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세부적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 3 조 제 1 항에서는 귀농• 귀촌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가진 귀농인 및 귀촌인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세부적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 귀농인，귀촌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지 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이 조 례는 2014년 7월 1일에 제정된 것으로 그 동안 약 2 년이 경과하였 는데，규칙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2）정비방안
－청주시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자의 세부적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에 관한 규칙을 마련한다．

## 제 2 절 농수죽산 관련 분야

1．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 관련65）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7 조（지정조건）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제 5호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거래규모，순자 산액 비율，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br> 시행령 |
| :---: | :---: |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1）도매 |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1） |
| 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 | 법 제23조제 1 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
| 별로 지정하되，중앙도매시장에 두는 | 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 |
|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 | 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
|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
| 헙의하여 지정한다．이 경우 5년 이상 |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 |
| $10 ㄴ ㅕ ㄴ ~ ㅇ ㅣ ㅎ ㅏ ㅇ ㅢ ~ ㅂ ㅓ ㅁ ㅇ ㅟ ㅇ ㅔ ㅅ ㅓ ~ ㅈ ㅣ ㅈ ㅓ ㅇ ~ ㅇ ㅠ ㅎ ㅛ ㄱ ㅣ ㄱ ㅏ ㄴ ~$ | 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
| 을 설정할 수 있다． |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
| （2）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 |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제 |
| 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 |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  |  |

65）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 4항 관련＂사례（24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br> 시행령 |
| :--- | :---: |
| 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  |
| （4）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 |  |
| 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 |  |
| 었을 때에는 3 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 |  |
| 을 갖추어야 한다． |  |
| （5）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 원이 제3 |  |
| 항제 2 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  |
|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  |
| 해임하여야 한다． |  |
| （6）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 |  |
| 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
| 로 정한다． |  |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서는 포항시장 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 조 제 1 항 제 5 호에 의하여＂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 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3 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특히 같은 항 제5호에서는＂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의 범위를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원의 자 격，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등＂에 관하여 업무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지 지정할 때마다 임의로 지정조건 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청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7조 및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 영관리 조례」 제7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지정조건）시장은 도매 시장법인（이하＂도매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 시행규칙 제 16 조제 5 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운전자금，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 7 조（지정조건）시장은 도매시장법 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 본금 규모，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증금，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시 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7 조（지정조건）개설자는 도매시 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 모•시설사용계약 • 보증금 • 운전자금 •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정비방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 거 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
| :---: | :--- |
| 개정안 |  |
| $\frac{\text { 제 7 조（지정조건）시장은 도매시장법인 }}{}$ | ＜삭 제＞ |
| 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 |  |
| 항제5호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자본금 |  |
|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거래규모， |  |
| $\frac{\text { 순자산액 비율，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 |  |
| 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  |

（2）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 관련66）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휴•폐업 신고）（1）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 일 전까지，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는 폐업예정일 30 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 게 제출 하여야 한다．
（2）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시 이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시장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 1 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20 조 제 1 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 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 일 전까지，영업을 폐업

66）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12 조 제 4 항 관련＂ 사례（28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 일 전까지 휴•폐업신고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휴업•폐업 신고 의무 부과는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비추 어 부적절하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0조，「창원시 농산 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37 조 제 1 호，「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9조 제1항 및 제42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0조（휴•폐업 신고）시장도매인 의 휴•폐업에 관하여는 제 20 조를 준용한다．이 경우＂도매시장법인＂은＂시 장도매인＂으로 본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휴•폐업 신고）（1）도매 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 일 전까지 별지 제 4 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시장은 제 1 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7 조（신고）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 29 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중도매업무를 휴 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제 28 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제19조（휴업•폐업 신고）（1）도매시장 법인은 제4조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려는 경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는 10 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 1 항의 휴업•폐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주시 보, 일간신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도매시장법인의 휴업•폐업 시 이를 행정청이 관리•감독할 필요 가 있어 보이는바,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 규정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가 없으므로 곧바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상위 법률에 도매시장법 인의 휴업•폐업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 관련67）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지정조건）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시 설사용계약，보증금，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 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 36 조（시장도매인의 지정）（1）시장도매 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 정한다．이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br> 1．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 을 것 <br> 2．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 | 제 18 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 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 17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br> 1．정 관 <br> 2．주주 명부 <br> 3．임원의 이력서 <br> 4．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 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 |

67）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10 조 제 3 항 및 제 4항 관련＂사례（25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 :---: | :---: |
| 시행령 |  |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40 조에서는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모，시설사용 계약，보증금，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36 조 제 2 항에서는 시장도매인 지정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특히 같은 항 제 5 호에서는＂거래규모，순자 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 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그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 며，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 제 2 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를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 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등에 관해서 업무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할 것이지 지정할 때마다 임의로 지정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7조，「청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4조 및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 영관리 조례」 제 16 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허가조건）시장은 중도 매업을 허가할 때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시설사 용계약，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4조（지정조건）시장은 시장도매인 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제 16 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자본 금 규모，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증금，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시 설사용계약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6조（허가조건）개설자는 중도매 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시설사용계 약•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정비방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를 삭제하고 거 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시장도매인 지정요건은 시 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 |
| 제40조（지정조건）시장은 시장도매인을 | ＜삭 제＞ |  |
| $\frac{\text {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자본금 규 }}{}$ |  |  |
| 모，시설사용계약，보증금，거래규모， |  |  |
| 순자산액 비율，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  |  |
| 가입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  |  |

（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 관련68）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36 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1）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시장은 신청 중도매인의「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중도매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종업원 중 1 명에 한하여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
（3）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의 조건 및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 조（중도매업의 허가）（1）～（4）（생 략）
（5）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 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6）（생 략）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36 조 제 1 항에서는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68）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15 조 관련＂사례 （25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 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같은 조 제 3 항에서는 보조경매 참 가자 운영의 조건 및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5 항 제2호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보조경매참가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경 매인을 중도매인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6 조 및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 30 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 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6 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 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 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0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1）중도 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나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써 입증자 료를 붙여 별지 제 6 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3 일 전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1. 질병, 장기 출타, 장기 해외체류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시장은 보조경매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참여 를 금지하도록 한다.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6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중도매인의 경우 보조경매참가자를 인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 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 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5)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8 장 관련69)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8 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9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1)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 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2)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3조(구성) (1) 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9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 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 명을 포함하여 7 명 이내로 하며 농수산물유통 관 련전문가 및 농어민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도매시장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해당 업무담
69)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42 조 관련" 사례 (25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4조(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 95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 재임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은 2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6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 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의 3 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8조(수당)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렁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br> 시행규칙 |
| :---: | :---: |
| 제 78 조(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1) <br>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 제 54 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br> (법 제 78 조제 1 항에 따른 시장관리운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br> 시행규칙 |
| :---: | :---: |
|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 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br> （2）삭제＜2008．12．26．＞ <br> （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각 호 생략） <br> （4）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영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br> （2）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 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8 장（제 92 조부터 제 98 조까지）조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관하여 규정한「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 장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장，「청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 11 장，「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40 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정비방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8장을 삭제하고 시 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 정으로 정한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8 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br> 제9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1）도매시 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라 도매시장별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br> （2）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br> 1．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 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br> 2．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br> 3．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br> 4．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br> 5．정가•수의매매 거래，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 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br> 6．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삭 제＞ <br> ＜삭 제＞ |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 개정안 |
| :---: | :---: | :---: |
| 제9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 <삭 제> |  |
|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 재 |  |  |
| 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 |  |  |
| 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  |  |
|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  |  |
| 은 기간으로 한다. |  |  |
| 제9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 <삭 제> |  |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  |  |
|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  |
|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  |  |
|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 |  |  |
| 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  |
|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  |  |
| 경우 <br> 3.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시 |  |  |
|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 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 <삭 제> |  |
| 위원의 3 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 |  |  |
|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 |  |  |
|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  |  |
| 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  |  |
|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제98조(수당)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 | <삭 제> |  |
| 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  |  |
| 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  |  |
|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 |  |  |
|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6)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장 관련70)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9 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99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1) 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법 제78조의 2 에 따라 도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 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 쟁을 심의 • 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 100 조(구성) (1) 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9 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창조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포 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항시 수산물도매시 장은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1 명 및 출하자 대표 1 명을 포함하여 7 명 이내로 하며 도매시장 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해당 업무담 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1조(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 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 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70) 이 사례는 2015 연구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43 조 관련" 사례 (26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 제 78 조의 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 회의 설치 등) (1) 도매시장 내 농수산 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 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 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br>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 • 조정한다. (각 호 생략) (3)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6 조의 2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 회의 구성 등) (1) 법 제78조의2제1항 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 1 명을 포함하여 9 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br> (2)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 으로 한다. <br> (3)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1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 호 생략) <br> (4)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 년 으로 한다. <br> (5)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 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6) 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 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 무규정으로 정한다. |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장（제99조부터 제 101 조까지）에서는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을 조정하기 위한 도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8 조의 2 제 3 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 36 조의 2 제 6 항에서는 도매시장거래분 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 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도매시장별 거래분 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 조례 제9조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장，「청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30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정비방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장을 삭제하고 도 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9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삭 제＞ |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 |
| 담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 |  |  |
| 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  |  |
| $\frac{\text { 제101조(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 }}{}$ | <삭 제> |  |
| $\frac{\text { 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 }}{\text { 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4조부터 }}$ |  |  |
| $\frac{\text {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text { 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 |  |  |

（7）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71）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 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1）제 5 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 터가 법 제 15 조제 6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 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 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동물보호법

제 15 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지정 등）（1）～（5）（생 략）
（6）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 5 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제 8 조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제 22 조를 위반한 경우
6．제 39 조제 1 항제 3 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 •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 회 이상 거부한 경우
（7）～（9）（생 략）

71）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 제2항 관련＂사례（26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복지송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1）검토의견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법」 제 15 조 제 6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 15 조 제 6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 1 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정 취소를 의무화 하고 있는바，조례에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는 것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자칫 법률의 입법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도 이와 마찬 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 $\mathbf{6}$ 조（동물보호센터 감독）（1）전년 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 15 조제 8 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시장은 시행규칙 제 15 조제 4 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2 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3）제 2 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 15 조제 6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4）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 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2）정비방안
－「동물보호법」 제 15 조 제 6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6 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1） 제 5 조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 보호센터가 법 제 15 조제 6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 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단서 신설＞ <br> （2）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동물보호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 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 하여야 하며，지정 취소 후 3 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 시 지정하여야 한다． | 제 9 조（동물보호센터 감독）（1）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2）（현행과 같음） |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1）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관련72）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9 조（재지정）（1）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 료 90 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증금 등 법 제 23 조제 3 항의 지정요 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
1．법 제 77 조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 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 우
2．법 제 77 조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 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 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 분의 2 이하인 경우
3．법 제 82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시장은 제 3 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 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1）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 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 ．관리와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공판장 • 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재무 건전성 등 경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72）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4조 제3항 관련＂ 사례（27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3）도매시장 개설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 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5）（생 략）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시 장은（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동안 3 회 이상 또는 2 회 연속 부 진 평가를 받은 경우，（2）같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 분의 2 수준 이하 인 경우，（3）같은 법 제41조 제 1 항 을 위반하여 출하자에 대한 대 금결재 지연으로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 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받은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렁에서는 도매시장법 인 재지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농수산물 유통 및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77 조 제 3 항에서는 같은 조 제 1 항 및 제2 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 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1）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2）부 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권고，（3）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같은 조 제2항의 재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 률의 위임 없는 새로운 규제로서 국민의 기본권（영업의 자유）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도매시장법인 평가 결과는 재지정과 결부지울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차등 지원 등의 조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 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 법인의 지정）（1）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법인은 지 정기간 만료 3 월 전까지 별지 제 1 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법 제 77 조에 따른 평가결과 5 년 평가기간동안 3 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법 제 77 조제 1 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도매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 회 이상 업체 평균의 $2 / 3$ 수준 이하인 경우
3．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 월 이 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 회 이상 받은 경우
（3）시장은 제 2 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보증금 등 법 제 23 조제 3 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제 2 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 하지 않는 경우 개설자는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 우 시장은 공모 전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2）정비방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9 조（재지정）（1）지정기간이 만료되어 | 제 9 조（재지정）（1）•（2）（현행과 같음） |
|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 |  |
| 간 만료 90 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  |
|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2) 시장은 법인의 거래규모, 순자산 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지정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br>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 <br> 1. 법 제 77 조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 회 이상 부진평가 를 받은 경우 <br> 2. 법 제 77 조제 1 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 회 이상 재무건전 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 분의 2 이하인 경우 <br> 3. 법 제 82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br> (4) 시장은 제 3 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 여 신규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삭 제> <br> (4) (현행과 같음) |

（2）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4조 제2항 관련73）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1）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2）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3 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1）•（2）（생 략）
（3）제 1 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법인이어야 한다．
1．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 판장 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 명 이상 있을 것
2．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견인이 없을 것
4．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73）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 제1항 관련＂ 사례（2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 3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에는 3 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 3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6）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34 조 제 2 항에서는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렁에서는 이상과 같 은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 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이와 같은 보고 의무를 조 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제2항 및 「청 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18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중도매법인의 관리）（1）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영업하여야 한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시장은 필요하면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청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 18 조（도매시장법인 관리）도매시장법인 은 정관의 변경，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정비방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34조 제2항을 삭제 하거나 만일 중도매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정관의 변경，주주 및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3）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9조 제2항 관련74）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49 조（시장도매인의 관리）（1）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2）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3 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1）•（2）（생 략）
（3）제 1 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법인이어야 한다．
1．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 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 명 이상 있을 것
2．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 정후견인이 없을 것
4．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 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74）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5 조 제 1 항 관련＂ 사례（2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 3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에는 3 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 3 항제 2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6）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9조 제2항에서는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 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상과 같 은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바，＂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 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이와 같은 보고 의무를 조 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40조 제2항도 이와 마찬 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 40 조（시장도매인의 관리）（1）시장도매 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2）시장도매인은 정관 변경，주주•임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40조 제2항을 삭제 하거나 만일 시장도매인에 대한 관리감독상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련75）
【관련 조례 및 조문】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 7 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 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소장은 제 7 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 분석결 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 전하거나 용지•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 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례 제8 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고•선전，용기•포장 등에의 표시 금지，정부 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 사용 금지는 상위법 률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의무 위 반에 대해서는＂정정 또는 취소＂라는 제재가 예정되어 있는바，＂주

75）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련＂사례（29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정비방안
－상위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는「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 8 조를 삭제하거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분석 결 과를 이용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에게 제재조치 등을 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 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5）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 15 조 관련76）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명칭사용의 금지）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 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이와 같거나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는 향토음 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 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이와 같거나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서 특정 자 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 두는 규정이다．${ }^{77)}$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특정 자격자에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특 정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에서 오는 폐해 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78)}$

76）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제19조부터 제 22 조까지 관련＂사례（296쪽 이하）및＂부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7조 제3항 관련＂사례（36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77）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465쪽．
78）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465쪽．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관한 규정을 두되，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79）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제한（금지）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 13 조도 이와 마찬 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 13 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 지）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과 표진판을 사 용할 수 없다．

2）정비방안
－향토음식점을 지정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청주시 지역에서 전통적 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 • 보전하고자 하는 이 조례 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지정제도에 부수하 여 명칭사용 금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상위법률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9）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465쪽．
（6）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4 조 및 제 15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1）시장은 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 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3）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 1 항에서는 평 택시장은 가공사업（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 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몪별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물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시 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이미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불필요하거나 이중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상위법 률의 근거가 없는 새로운 규제인바，＂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 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의 3，「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 및「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7 조의3（식품가 공사업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1）시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 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 여야 하며，제 1 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자에게 적용한다．
（4）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6 조（시설기준 및 점검）（1）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2）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 1 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 조（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1）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3）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 1 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7 조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1）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 별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하며，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 기준은＂별표＂와 같다．
（2）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 보관하고 시장이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3）농업인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2）정비방안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를 삭제하거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령에 따라 규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3．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0 조（인증대상）（1）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2）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 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23 조（인증의 취소 등）（1）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표시정지，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인증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 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2 년 이내에는 다시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1）검토의견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 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는 어느 법령 에 따른 영업정지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인증받은 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 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 23 조 제 1 항에서는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 이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 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20 조 제 2 항에 따른 취소와 같은 조례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취소가 어떤 관계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2) 정비방안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 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을 어느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인 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나의 인증에 대하여 조례에서 2 개의 조문에서 취소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하므로 제 20 조 제 2 항에 따른 취소와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취소를 통합하 여 규정한다.
（2）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116 조 관련80）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116 조（재해시의 물품확보）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검토의견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116 조에서는 포항시장 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여 어떤 물품의 확보가 필요한 때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지가 매우 불명확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 인 및 중도매인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 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조례 제 116 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시장도 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시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 데，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로서＂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

80）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55 조 관련＂사례 （304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6조，「청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 100 조 및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 영관리 조례」 제56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6조（재해시의 물품확보）시 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제 100 조（재해발생 물품확보）시장은 재 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 장도매인 •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6조（재해시의 물품확보）개설자는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정비방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 116 조를 삭제하거나 만일 일정한 재해가 발생，특정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여 도매시장 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률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게 손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 배상•보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14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14 조（지정취소）도매시장법인이 제 7 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 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정취소 등 행정처 분을 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14 조에서는 도매시장법 인이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그 밖에 법 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개설자는 지 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그 밖에 법령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도매시장법인 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정 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중＂그 밖에 법령 또 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부분을 삭제한다．
（4）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 제 3 항 제 2 호 관련81）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 28 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1）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또한 등록사항 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제 1 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개설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 을 교부하여야 한다．
（3）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 24 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 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우리 도매시장 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1）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생산자단체가 구성 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도매시장법인이 제 31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중도매인이 제 31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81）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19 조 제 3 항 제 2 호 관련＂사례（30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 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4)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 • 매수 또

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 •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1) ~ (4) (생 략)
(5)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 25 조 및 제 46 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2. 제 29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판매 - 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이하 생략)
1) 검토의견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에서는 개설 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1) 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 매시장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산지유통인의 예측 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2호를 삭 제한다．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28 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1）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 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 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등록변경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br> （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 에는 개설자는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br> （3）개설자는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br> 1．농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 를 한 경우 <br> 2．그 밖에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 제 28 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br> （1）－（2）（현행과 같음） <br> （3） $\qquad$ <br>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 <br> 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 <br> ＜삭 제＞ <br> ＜삭 제＞ |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 (4)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 <br> 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 <br> 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 <br> 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br> 우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행한 것과 <br>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5）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관련82）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 조（보조대상 범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사업신청일 현재 3년이상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 주하는 자
2．외지 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1）검토의견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서는＂외지 관 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정읍 시 농촌민박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외지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매우 불명확하여 농촌민박 보조사업을 하려는 자 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또한＂외지 관광객 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로 할 경우 정읍시 농촌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사 업신청일 현재 3년이상 정읍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를 신청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례 제 4 조 제 1 호의 규정 취지를 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82）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9조 제3항 제2호 관련＂사례（30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정읍시 농촌민박 보조사업 신청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를 삭제한다.
（6）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호 관련83）

【관련 조례 및 조문】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의 철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경우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 9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검토의견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3호에서 는＂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여수시 특산품전시판 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 여 사용자의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허가 및 위탁 철회 사유를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 11 조 제 3 호를 삭제한다．

83）이 사례는 2015 연구 중＂대구광역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제 11 조 제3호 관련＂사례（30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7）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5호 관련84）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 9 조（위탁의 취소）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위탁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의 경우
3．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의 경우
4．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의 경우
5．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1）검토의견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5호에 서는 정읍시장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의 수탁자 가＂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6호에서는 수탁자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이＂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거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

84）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3 조 제4호 관련＂사례（3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 정비방안

-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 적으로 규정하거나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 례」 제9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4．기 타

（1）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 9 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이 조례를 위반한 때
2．사용허가，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4．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5．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허가 후 1 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 개월 이상 휴업한 때
8．사용료를 3 개월 이상 체납한 때
9．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0．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 5 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 까지는 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시장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 하나，＂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나 ＂시장이 필요한 때＂（만일 공익적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취소，사용 해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을 시장（市場）자신이 제공한 것이 아닌바，이 경우에도 시장 （市長）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 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 항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

2）정비방안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은 삭제한다．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9 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 제 9 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br> （현행 제 1 항과 같음） |
| （생 략） 제 1 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 | 삭 제＞ |
| 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  |
|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제 3 장 보건•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 3 조, 제4조 제 1 항, 제 3 항 등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 3 조(위원회 설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 업지구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 인, 부위원장 1 인과 위원(기본구성 인 원수는 30 인으로 하되 몽리자수가 30 인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 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사업지역의 시의원과 각 사업지구내의 법 제 11 조의 자격자 및 농 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제 3 항의 법 제 11 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직 위원총수의 3 분의 2 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 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부락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 6 조(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몽리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 (1)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 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2)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3）제 1 항 및 제 2 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하고，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검토의견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제3조에서는＂농업생 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 에 응하고＇몽리자＇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 지구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례 제 4 조 제 1 항，제 4 항，제 6 조 제 1 항 제 4 호，제 14 조 제3항 등에서도 ‘몽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85）
－몽리자（蒙利者）의 사전적 의미는＂이익을 얻는 사람 또는 덕을 보 는 사람＂인데，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2 등에서 사용된 용어이나，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매우 어려운 한 자 용어에 해당한다．

2）정비방안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몽리자’ 라는 용어를 보다 쉬운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민법」 개정안에서는 ‘몽리 자＇86）라는 용어를＇이용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87）

85）이 조례는「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2 등에서 사용된 ‘몽리자’라는 용어를 그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6）＂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
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233조）．
87）＂민법 어려운 한자•일본식 표현 57년 만에 사라진다＂，법률저널，2015．8． 28.
（3）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3 조，제 4 조 제 1 항，제 3 항 등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mathbf{5}$ 조（보상 제외대상）피해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총 피해보상금액이 30 만원 미만인 경우
2．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1）검토의견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서는＂총 피해보상금이 30 만원 미만인 경우＂를，같 은 조 제 2 호에서는＂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보상금 제외 대상 금액 상한으로서＇ 30 만원＇은 다소 높 고，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11＞（최종접속 ：2016．8．31）；
＂＂일본식＂민법 표현，57년 만에 사라진다＂헤럴드경제，2015．8． 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5000975\＆md＝20150826003218＿BL＞ （최종 방문 2016．8．31）；
＂궁박？구거？어려운 민법 표현 사라진다．．법무부，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투데이， 2015．8． 2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87082＞
（최종접속 ：2016．8．31）

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려는 이 조례의 입법 취 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어 보인다．
－참고로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 10 조에서는＂총 피해보상금이 5 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농외 소득 유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지 아니하며，「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 한 조례」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에 관한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다．

## 참고 입법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 10 조（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지원 제외대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피해보상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2．피해면적이 1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4．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7．최근 5 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 8 조（보상 및 피해예방 시설 지원 제외대상）（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 배한 경우
2．「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피해예방 시설은 최근 5 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4．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참고 입법례

5. 산림자원 불법채취,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 등 금지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6.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7.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8.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9.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또는 피해예방시설 보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2) 정비 방안

- 피해 보상금 지급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인근에 있는 강릉시나 원주시에 비추어 포항시의 경우 상 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 포항시 주민들이 상대적인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바, 재정 상황이 고려하는 범위에서 "총 피해보상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 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 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보상금 제외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입법례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제 $\mathbf{5}$ 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 이상인 경우
2．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제4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2 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예 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4）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 5 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1）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 조제 1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 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 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 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 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 3 조제 2 항 각호의 심 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검토의견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에 관한 조례」 제 5 조 제 1 항에서는＂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 2 조제 1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주무부장관＇은 포항시의＇상급행정기관＇으로서 조례에서 상급행정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 어난 것이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상북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주무부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다．

2）정비방안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 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제 5 조는 삭제한다．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mathbf{5}$ 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1）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 조제 1 항 각 호외의 부분 단 서 및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2）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 2 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 2 항 각호 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 제> |

（5）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6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6 조（재산처분의 제한）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 년경과 전 에 건축물을 양도 • 교환할 수 없다．

1）검토의견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6 조에서는 농촌민박 보조 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 년 경과 전에는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 경과 전까지 건축물을 양 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 성한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 조사업에 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보조사 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정비방안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 경과 전에는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한「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6조는 삭제한다．

##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6 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교환할 수 없다. | <삭 제> |

제 3 장 보건 • 복지/농수축산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6)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4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 8 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때 선량한 관 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포도체험센터"내에서는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친환경 농산물 취급 및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타지역 농•특산품 및 친환경농산물을 취급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위탁시설물"운영 및 사용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은 수탁운영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하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 - 망실에 대하여 수탁운영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3. 수탁운영자가 "위탁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운영자가 부담하고, 위탁계약 만료 할 때 그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으며,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운영자는 수탁기간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 부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
6. 수탁운영자는 위탁사업 추진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관련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제 9 조(위탁의 취소) 수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위탁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의 경우
3.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의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의 경우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5．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1）검토의견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9조 제4호에 따르면 정읍시 청정유기농포도체험센터의 운영 수탁자가 위탁시설 물에 대한 재임대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례 제8조 제5호에서는＂수탁운영자는 수탁기간에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포도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 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례 제9조 제4호 는 전대（재임대）를 허용하는 같은 조례 제8조 제5호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2）정비방안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8조 제5호에 서 전대（재임대）를 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조례 제9조 제4호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승인 없이 재임대한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9 조(위탁의 취소) 수탁운영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r> 1. 수탁운영자가 제 8 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br> 2. 위탁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의 경우 <br> 3.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 에 불응의 경우 <br> 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의 경우 <br>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 단될 경우 <br>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정읍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제 9 조(위탁의 취소) (현행과 같음) <br> 1. ~ 3. (현행과 같음) <br> 4.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탁시 설물을 전대한 경우 <br> 5. - 6. (현행과 같음) |

##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제 1 절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1．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 14 조 제3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운영）（1）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단지 전체 또는 일부시 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주차장관리 운영을 개인，법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 탁 운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자에게 필요한 임대료 징수 및 필요한 시설을 명할 수 있다．
（3）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협약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위탁운영자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1）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1）법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행 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 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 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할 수 있다. <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 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 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 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 할 수 있다. <br> (4) 제 1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br> (5) 제 4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 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 을 제 3 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6)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 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 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 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 야 한다. <br>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 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br>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9 조의 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br>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br>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 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r> 2. 법 제 27 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 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br>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br>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 | （5）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 |
| 으로 할 수 있다． |  |
| （7를 사용 • 수익하거나 다븐 사람이단체는 관리위탁을 받 |  |
| 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하려는 |  |
| 아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 |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 |
| 원할 수 있다． |  |
| （8）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 |  |
| 으로 정한다． |  |
| 1．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  |
| 자격 |  |
| 2．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  |
| 관리 |  |
| 3．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  |
| 충당 |  |
| 4．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 |  |
| 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
| 5．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 |  |
| 한 사항 |  |

1）검토의견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 14 조 제 3 항에 서는＂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따라 결정하며，협약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단지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는＂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같은 조 제 3 항에서는＂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9 조의 5 에 따라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협약기간 만료 시 문화재단지의 위탁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청주 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3 조 제 3 항도 이와 마찬가지 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 $\mathbf{4}$ 조（운영）（1）청주시장 은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영리법인이나 비영 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위탁조건，관리책임，계약보증 등 운영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재계약의 경우에도 같다．
（3）청주시장은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운영）（1）시장은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청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 영할 수 있다．
（2）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 을 보조할 수 있다．
（3）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 며，위탁기간은 3 년으로 하고，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 개월 전에 3 년 이 내의 기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4）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시장의 동의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없이 기본 설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제 4 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게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 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 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정비방안

- 문화재단지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하면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5년 이내의 기간 동안)할 수 있도록 하 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하면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 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5년 이내의 기간 동안)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다.

제 4 장 문화•체육 • 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 10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 10 조（시설변경）（1）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 • 설치 등을 할 경우， 위탁기간 • 수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나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제 2 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mathbf{2 0}$ 조（수탁재산의 관리）（1）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다만，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 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는＂수탁자 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나 승 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관 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나，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 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비추어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 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 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인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바，어느 경우 에도 시장의 허가나 승인이 없으면 시설의 구조나 사용용도 등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및「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시설 변경 금지）（1）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탁•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다만，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 2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0 조（시설 변경 금지）（1）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임의로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변경할 수 없다．
（2）제 1 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위탁．수탁 기간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다만，원상복구가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 또는 승인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3）제 2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2）정비방안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10조는 삭제한다．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10 조（시설변경）（1）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 는 시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제 1 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 • 설치 등을 할 경우，위탁기간•수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다만，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나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r> （3）제 2 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 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 ＜삭 제＞ |

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 4 조（가산금 및 독촉）（1）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산금으로 징수한다．
（2）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 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 일이내）에 10 일이내의 납부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 제2항 에서는＂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관광진흥법，에서는 이와 같은 가산 금 부과에 관해서 규정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주민의 권리 제 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22조 단 서에 비추어 보면，이와 같은 가산금을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2）정비방안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관해서 규정하는 「서울특별 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는 삭제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 |
| 제 4 조（가산금 및 독촉）（1）구청장은 납 | 삭 제＞ |  |
| 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 <br>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br> 체납된 과징금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 <br> 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br> （2）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br>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br> 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 일이내（은 <br> 행납인 경우에는 20 일이내）에 10 일 <br> 이내의 납부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 <br> 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  |

（2）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 제3항 관련88）
【관련 조례 및 조문】

##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 5 조（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1）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별연합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 또는 종목 별연합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3）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검토의견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조 제3항에서는＂시장으로부터 보 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 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 정 • 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사전 협의 의 무를 부과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 면，위와 같은 협의의무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 단체에게 부 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88）이 사례는 2015 연구 중＂부산광역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7조 관련＂사례（36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정비방안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등과 관 련한 사전 협의 의무를 부여하는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5 조 제 3 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mathbf{5}$ 조（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1）시 | 제 $\mathbf{5}$ 조（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1）• |
| 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 | （2）（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회 또는 종 |  |
| 목별연합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
|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 |  |
| 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 또 |  |
| 는 종목별연합회 등의 원활한 운영 |  |
| 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  |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3）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 | 삭 제＞ |
| 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  |
|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 |  |
|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  |
| 규정의 제정 개정 등 중요정책을 |  |
| 결정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 |  |
| 여야 한다． |  |

## 3．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2조 제1호 관련89）

【관련 조례 및 조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2조（위탁 취소）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12조 제 1 호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건전여가교실의 위탁 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이＂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수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자칫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함으로 써 수탁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89）이 사례는 2015 연구 중＂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4호 관련＂사례（37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 제 10 조 제 2 호，「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 1 항 제 1 호，「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제 13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8조 제1항 제1호，「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도 이와 마 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의 철 회）（1）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 을 철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수탁자가 관리－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구청장이 제 1 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려면 미리 수탁자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그 사유와 철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 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예정일 30 일전 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탁 의 취소 등）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취소）（1）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할 수 있다．
1．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수탁조건，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제 1 항제 1 호와 제 2 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 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제13조（위탁취소）（1）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
（2）시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3）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불이행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8 조（위탁의 취소）（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제 17 조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3）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제 $\mathbf{8}$ 조（위탁의 취소）（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경우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2．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체육공원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할 경우
4．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 5 조나 제 13 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3 회 이 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제 1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와 제 5 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자 상호 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2）정비방안
－생활체육교실，건전여가교실의의 위탁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 육 진흥 조례」 제 12 조 제 1 호를 삭제한다．
（2）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4조 제 1 항 및 제 2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 4 조（사용허가）（1）회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다만，ㅌㅡㅡ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4조 제 1 항에서는＂회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특별한 시설＇이 어 떤 시설인지，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가 매우 불명확하고 「포항시 문화 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 고 있지 아니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자의적인 행정을 가 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

제 4 장 문화 - 체육 • 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시설'을 보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8 조 제 1 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8 조（대관허가의 취소）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 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이 경우，대관자에게 발 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
2．제 15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미술관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1）검토의견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호에서 는＂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한 때＂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상이할 경우를 의미하는지 매우 불명확하여 자칫 행정 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여 대관자와 행정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제 4 장 문화 - 체육 • 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8 조 제 1 호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내용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 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 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6 조 제 1 호 관련90）

【관련 조례 및 조문】

##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6 조（위탁의 철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도서관 설립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4．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검토의견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호에서 는＂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수익적 처분의 철회（취소）사유로서 매우 불명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제1호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0]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위탁의 철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 여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1．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2）정비 방안
－주민의 예측가능성 •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전문도 서관 위탁 철회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창 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제1호를 삭제 한다．

## 4．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8 조 제 1 호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7 조（위촉연령）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 세 이하로 한다．

1）검토의견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는＂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 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촉연령 제한은＇능력’에 따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55 세 이상의 사람은 합창，연주，연극 등을 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칫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단원의 위촉연령을 제외하는「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7조를 삭제한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안】

| 현 행 |  | 개정안 |
| :---: | :---: | :---: |
| 제 7 조(위촉연령) 지휘자 및 연출자를 <br>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 <br> 로 한다. | 삭 제> |  |

## 5．기 타

（1）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 $\mathbf{1}$ 조（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 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 장애인을 말한다．
2．＂수화＂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각언어를 말한다．
3．＂농문화＂란 수화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 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수화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 화로，수화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수화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화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 을 말한다．
8．＂공공시설 등＂이란「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 조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 • 체육관 •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청각장애인 편의 증진과 수화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제 4 조(청각장애인 편의증진) (1)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 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평택시는 자막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공 시설 등에 자막 스크린과 수화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평택시 시정뉴스와 평택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화, 한글자 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평택시 지역 내 관공서에 수화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mathbf{5}$ 조(수화활성화) (1) 시장은 수화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화 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화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수화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화책임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 6 조(수화통역사 및 속기사의 보호) 시장은 수화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 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1)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 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택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4．수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수화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지원）（1）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화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통역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 9 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 •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 스템이나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 10 조（포상）（1）시장은 수화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 렷한 시민，공무원，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포상은「평택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 한국수화언어법

제 1 조（목적）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 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장 문화 • 체육 • 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한국수화언어법

제 3 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 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 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 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 의 총칭을 말한다．
5．＂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 하는 것을 말한다．
7．＂공공기관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 육 • 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mathbf{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한국수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6 조（기본계획의 수립）（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 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들 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 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 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 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3)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 $\mathbf{8}$ 조(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

제 11 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 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 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 수 - 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 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12 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 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6 조(수어통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 -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 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 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8 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생 략）

1）검토의견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 원 조례」는 평택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활성화하여 청각장 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18일자로 제정•시행 중인 조례로서 무엇보다도 법률이 제정 되기 전에 수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선도적이 고 의미 있는 조례이다．
－그런데 2016년 2월 3일자로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자로 시행될 예정인바，이 조례 중 ‘수 화’에 관한 사항은「한국수화언어법」이 상위법률이 되게 된다．
－따라서 이 조례 중 ‘수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컨대，제2조 제2호， 제 3 호나 제 7 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의 경우 「한 국수화언어법」과 달리 규정한 부분이 있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 므로 상위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4 장 문화 • 체육 • 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정비방안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 원 조례，중 「한국수화언어법」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뱁률 에 맞게 수정한다．
（2）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5 조 제 2 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5 조（조직 및 인력）（1）시장은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과 직원 을 둔다．
（2）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 급 $\sim 6$ 급 상당으로 한다．
（3）시장은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1 명을 관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4）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추천자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 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이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시장은 관장을 해임 • 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6）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도서관법

제 30 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1）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2）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 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제 2 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서는 청 주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 급 6 급 상당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청주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청주기적의도 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 서 1 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 5 항에서는 청주시장 은 관장을 해임 • 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동 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도서관법」 제30조에서는 공립 공공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 의 자격요건이나 임명방법•절차 등에 관해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 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 규정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관장 임명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은 관장의 임명권자인 청주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2）정비방안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5 조 중 시장의 관장 임명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관장의 임명은「도 서관법」 제 30 조에 따라 시장이 사서직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5 조(조직 및 인력) (1) 시장은 도서관 <br> 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직 원을 둔다. <br> (2) 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5 급~ 6 급 상당으로 한다. <br> (3) 시장은 청주기적의도서관운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복 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1 명을 관장 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br> (4) 시장은 제 3 항에 따른 추천자 중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는 위원회에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br> (5) 시장은 관장을 해임•면직 및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r> (6)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 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제 5 조(조직 및 인력) (1) (현행과 같음) $\begin{aligned} & \text { (2) 시장은 관장을 임명할 때 사서직 } \\ & \text { 으로 한다. } \\ & \text { <삭 제> } \end{aligned}$ <br> <삭 제> <br> <삭 제> <br> (3) (현행 제 6 항과 같음) |

## 제 2 절 환경 관련 분야

1．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1）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관련91）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1）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경매•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 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
（3）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권리 • 의무의 승계）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 계한다．

91）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관련＂사례（41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1）검토의견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4 조 제1항에서는＂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유 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경매•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 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 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49조의 3 에서는＂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 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 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폐수종말처 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여 ‘당 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부 담금 이외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이 조례 제24조는 상위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정함으로 써 신규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 35 조，「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 수 조례」제29조，「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4조 제1항，「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권리• 의무의 승계）양도 • 상속 • 합병 • 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5조（권리•의 무의 승계）처리구역 안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29조（권 리 의무의 승계）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 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4조 （권리•의무의 승계）（1）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 법원경락 등 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등 모든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다만，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 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 17 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부과한다．
（2）사업장을 양도•상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7조（권리•의무의 승 계）양도，상속，합병，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 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정비방안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4 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맞게 수 정한다．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1）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 등의 사 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다．＜단서 신설＞ <br> （2）경매－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 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qquad$ $\qquad$ $\qquad$ <br> －－．다만，양도•합병의 경우 당사자 <br>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br> （2）（현행과 같음） |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14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1）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 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같은 날 $(00: 00 \sim 24: 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3）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 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다만，과 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begin{tabular}{|c|c|c|c|c|}
\hline \multirow[b]{2}{*}{위반 사항} \& \multirow[b]{2}{*}{해당 법조문} \& \multicolumn{3}{|c|}{과태료 금액} \\
\hline \& \& \begin{tabular}{l}
1차 \\
위반
\end{tabular} \& \begin{tabular}{l}
2차 \\
위반
\end{tabular} \& \begin{tabular}{l}
3차 \\
이상 \\
위반
\end{tabular} \\
\hline \begin{tabular}{l}
가. 법 제9조제 1 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
(이하 생략)
\end{tabular} \& \begin{tabular}{l}
법 제41조 제 1 항제 1 호 \\
법 제41조 제 1 항 제 2 호
\end{tabular} \& \[
100
\]
\[
100
\] \& \[
200
\]
\[
200
\] \& 300

300 <br>
\hline
\end{tabular}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 16 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 1 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서는＂주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계 없이 항상 1 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 조와 결부된 별표 81 ．개별기준에서는 위반 회 차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주 민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는 위반 회수와 관계 없이 1 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 14 조 제 2 항에서는＂같은 날（ $00: 00 \sim 24: 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 50 조와 결부된 별표 81 ．일반기준 가．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 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날（00：00 ～24：00），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는 1 회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례 제14조 제3항에서는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해야 할 과태료의 50 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와 결부된 별표 81 ．개별기준 나에서는 부과권자는（1）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 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위반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4）그 밖에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피신 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하 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이 조례 제14조 제3항은 이 미 과태료를 납부한 후 50 퍼센트를 환불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 는데， 50 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문맥상 부적절하다）．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는 당사자가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제 16 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피신고자가 위반행 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과 태료를 감경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14 조 제 3 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 제 1 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2）정비방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 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조례로 정하더라도 상위법령 과 다른 내용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 14 조는 삭제한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4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 | <삭 제> |
| $\frac{\text { 태료 부과) (1)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 }}{}$ |  |
| 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와 관 |  |
| 계없이 항상 1차 위반했을 때의 과태 |  |
| 료를 부과한다. |  |
| (2)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 |  |
| (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  |
|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  |
| (3)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 |  |
| 고 정해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 |  |
| 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  |
|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  |

（3）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 제 1 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5 조（위탁운영）（1）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 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이와 유 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시장은 제 1 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 고，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청주시 사무 의 위탁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 7 조（위탁기간）（1）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3년으 로 하며，재위탁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 일 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1）지방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
|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 및 기간）（1）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 |
|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 |
|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 |
| 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 | 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 |
| 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 | 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 |
| 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기 한다．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 <br>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 （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 년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 |
| 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 | 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 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 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 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 할 수 있다.
(4) 제 1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제 20 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5) 제 4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 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 을 제 3 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6) 제 1 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 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 으로 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 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 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9 조의 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 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 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가 제 1 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 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원할 수 있다． | 여야 한다． |
| （8）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 |  |
| 으로 정한다． |  |
| 1．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  |
| 자격 |  |
| 2．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  |
| 관리 |  |
| 3．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  |
| 충당 |  |
| 4．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 |  |
| 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
| 5．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 |  |
| 한 사항 |  |

1）검토의견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7 조 제 1 항에서는 청주시재활용（3R）센터의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3년으로 하며，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주시재활용（3R）센터의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 2항에서는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하는＂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5 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인，단체，또는 개인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례 제7조 제 1 항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정비방안
－법인，단체，또는 개인에 대한 위탁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렁」 제1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7 조（위탁기간）（1）위탁기간은 위탁시 <br> 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 <br> 년으로 하며，재위탁할 수 있다． <br> （2）제 1 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 <br> 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 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7 조（위탁기간）（1）위탁기간은 5년 이 내로 하되，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5 년 이내로 한다． <br> （2） $\qquad$ 갱신을 하고자 $\qquad$ <br> －－－－갱신 $\qquad$ |

（4）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 관련92）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3 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법 15 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다만，읍• 면지역은 50미터 이내로 하되，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된 지역의 하수 유입 입 지 여건，장래 하수관거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렁 및 조문】

##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1）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 구역을 말한다．이하 같다），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관계도면을 일반에 게 공람하여야 한다．
（2）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 1 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3조에서는 「하수도법」 제 15 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 터 3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2）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관련＂사례（40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그런데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제 15 조 제 2 항에서는＂공공하수도관리 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하수관거로부터 30 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과는 부 합하지 아니하다．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제 $\mathbf{2}$ 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법 제 15 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 터 3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정비방안
－청주시의 경우 그 실정을 고려하여 법령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 는 것이 아니라면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 도법」 제 15 조 제 2 항에 맞게 하수관로 93 ）로부터 직선거리 30 m 이내 로 하도록 수정한다．

[^1]（5）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 2 항 관련

##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9 조（수탁자의 의무）（1）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관계 법령이나 조 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권리의 양도 및 전대，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 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3）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 여야 하며，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1）지방자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1 관리수탁자 |
| 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 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 관리하여야 하며，수탁재산에 피해가 |
| 자치단체 외의 자에 게 그 재산의 관리 |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 |
| 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 단체의 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수 있다． | （2）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 |
|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 | 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
| 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다만， |
| 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다만，계 |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 |
| 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 | 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
| 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 |
|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 | 고하여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다. <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에 따 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br> (4) 제 1 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 탁을 받은 자는 제 20 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br> (5)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 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 3 자에 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br> (6) 제 1 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 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 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 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 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br> (7)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br> (8)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r>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br>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br> 3. 제 6 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 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 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 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 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 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 야 한다. <br> (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 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br>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9 조의 5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br>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br>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 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br> 2. 법 제 27 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 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 | :---: |
| 충당 <br> 4．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br> 5．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가 제 1 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br> 3．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br> 4．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br> （5）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 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1）검토의견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서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권리의 양도 및 전대，권리설정은 물론 시 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있고，같은 조 제 5 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 당 행정재산을 제 3 자에게 전 대（轉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 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서는＂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주시재활용（3R）센터의 전대 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청주 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또한「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에 서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 항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나，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 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비추어 보면 관리위탁 행 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가 아닌 경우에는 수 탁자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인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없이 관 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바， 어느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변경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수탁자의 의무）（1）수탁 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개 축•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 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정비방안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은 삭제 한다．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9 조（수탁자의 의무）（1）수탁자는 재 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관계 법령 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정당 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r> （2）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권리 의 양도 및 전대，권리설정은 물론 시 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br> （3）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 구하여야 하며，복구가 불가능할 때에 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br> （4）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 9 조（수탁자의 의무）（1）（현행과 같음） <삭 제> <br> （3） <br> （4）（현행 <br> 제4항 <br> 및 제 5 항과 같음） |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6）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30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30 조（소멸시효）제 15 조의 하수도사용료와 제 21 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 효는「민법」 제 16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 년으로 한다．다만，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민 법

제 163 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1．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기타 1 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 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도급받은 자，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 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제 82 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1）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지방재정법

（2）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 1 항과 같다．

1）검토의견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30 조에서는＂제 15 조의 하수도사용료 와 제 21 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 년으로 한다．다만，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 82 조 제 1 항에서는＂금전의 지급을 목적으 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금전 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 1 항과 같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원칙적인 시효기 간은 5 년이고，이에 대한 예외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 「하수도법」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이 조례 제30조는 상위법령과 부합 하지 아니하다．

2）정비방안
－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지방재정법」 제82 조와 달리 규정한「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 30 조는 삭제한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정비안】

| 현 행 |  |
| :---: | :---: |
| 개정안 |  |
| 제30조（소멸시효）제15조의 하수도사용 | ＜삭 제＞ |
| 료와 제21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br>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br>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다만，하수도  <br>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  <br> 금，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  <br> 로 한다．  |  |

## 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1）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 제3항 관련94）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급수 중지와 폐전）（1）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 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급수의 중지는 3 개월 이내에 하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수도사용자 등이 3 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4）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 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제20조 제3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은（1）수도사용자 등이 3 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4）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사례（421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그런데 이상과 같은 급수설비 폐전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 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급수설비 폐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4 조，「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 26조，「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7조 및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 26 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1）수도사용자 등은 필요 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급수의 중지는 6 개월 이내로 하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 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3）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수도사용자 등이 3 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정당한 사유 없이 3 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4．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4）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 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급수설비 폐전）（1）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 게 급수공사의 승인을 신청한 자나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소유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설비 폐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 률이나 법원의 소송(가처분 결정을 포함한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됨 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중지 또는 폐전을 신청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삭 제 <2014.11.07.>
(3)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 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 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 제 <2014.11.07.>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4)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정비방안

- 수도사용자 등이 3 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등의 경우 급수설비를 폐전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 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급수설비 폐전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급수설비 폐전의 필요 성, 적절성, 최소침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2항 관련95）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1）수도사용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 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1）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급수설 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 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제 40 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 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 분의 4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2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95）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제3항 관련＂사례（423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그런데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려면＂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고，「수도법」 제 68 조 제 1 항에서는＂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을 체 납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면 될 것이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 제2항，「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제2항，「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아산시 상 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 및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제2항도 이와 유사하므 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1）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요금의 징수）（1）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 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2) 정비방안

-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1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수도사 | 제21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1) (현행 |
| 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 | 과 같음) |
|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  |
| (2)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 삭 제> |
|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  |

（3）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17조 관련96）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17조（신고）（1）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급수설비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제 25 조제 2 항과 제 4 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2）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용도변경 등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검토의견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 17 조 제 1 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 등은（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 전하고자 하는 때，（2）급수설비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같은 조례 제 25 조 제 2 항과 제 4 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4）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 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 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6）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1조 관련＂사례（426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그런데 이상과 같은 신고 의무 부과 및 그 불이행 시의 급수 중 단，용도변경 등 제재적 처분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 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 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 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 18 조，「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 20 조，「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 21조，「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제21조 및「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제 20 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8조（신고）（1）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제 26 조제 2 항 및 제 4 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2）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용도변경 등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0조（신고）（1）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급수설비의 파손，누수，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4. 제 30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고하도록 정하는 사항
(2) 삭제<2000.12. 8>
2) 정비방안

- 급수설비 사용 개시•중지•폐지 신고 등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 17 조 제 1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신고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에 대 한 제재적 처분 발령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존치시킬 필 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4）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38조 관련97）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 38 조（정수처분）（1）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 를 정지할 수 있다．다만，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사용요금을 2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盜用）한 자
3．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 고자 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2）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 수료를 징수한다．
（3）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 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 38 조 제 1 항에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 시장은（1）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자，（2）급수를 도용한 자，（3）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

[^2]행한 자，（4）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 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급수를 남용하거 나 급수를 판매한 자，（7）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정수처분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 제 22 조 단서에 비추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 조，「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 44조，「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5조，「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4조 및 「여수시 수도급수 조 례」 제 43 조도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정수처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다만，시장이 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사용요금을 2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수수료，공사비 등 이 조례 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급수를 도용한 자
3．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정수처분) (1)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을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 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 21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1.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삭제<2007.12.14.>
2) 정비방안

- 사용요금을 2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정수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렁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 도 정수처분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급수설비 폐전 의 필요성, 적절성, 최소침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관련98）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 20 조（가산금 및 중가산금）（1）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을 납부기한까 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 여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 분의 12 에 상당하는 중가산 금을 제 1 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부과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준 용한다．

1）검토의견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 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 분의 12 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부 과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률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시설설치비，유지관리비 및 적립금 미납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주민의 권리 제 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22조 단 서에 비추어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신설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 21 조，「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 수 조례」제25조，「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8조，「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3조 및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4조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1조（가산금 및 중가산금）（1）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 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중 가산금＂이라 한다）을 제 1 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이 경우 중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가산금 및 중가산금）（1）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 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 천분의 12 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 1 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25조（가 산금 및 중가산금）（1）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 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 분의 5에 상 당하는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로부터 매 1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 산금（이하＂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 1 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 수한다．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 하지 못한다．

2）정비방안
－시설설치비，유지관리비 및 적립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 산금 신설에 관해서 규정하는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20조（가산금 및 중가산금）（1）시설설 |  |
| 치비와 유지관리비 및 적립금을 납산금 및 중가산금）삭 제＞ |  |
|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  |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 |  |
| 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  |
|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
|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 | 삭 제> |
|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  |
| $\frac{\text { 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 }}{\text { 납된 부담금의 } 1000 \text { 분의 } 12 \text { 에 상당 }}$ |  |
| $\frac{\text { 하는 중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text { 가산금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 경 }}$ |  |
| 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  |
|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3) 기본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 (현행 제3항과 같음) |
|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 |  |
| 를 준용한다. |  |

（6）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3조 관련99）
【관련 조례 및 조문】

##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3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1）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 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 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다만，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원인자 부담 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4）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 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1）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 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 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제 1 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99）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15조 관련＂사례（41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 수도법

（3）제 1 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1）검토의견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13 조 제 1 항 본문에 서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 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수도시설에 인접 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 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 항 본문에서는＂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법」 제 71 조 제 1 항에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 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지우고 있 을 뿐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바，＂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다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요구，그 불응에 따른 강제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정비방안

- 다른 시설물의 수도시설과 인접 설치 금지, 다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요구, 그 불응에 따른 강제 철거 등이 수도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당 제도를 곧바로 없애는 것보다는 상위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8 조（가산금 및 독촉）（1）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제 1 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되，납부기간을 10 일 이내로 한다．

1）검토의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8 조 제 1 항에서 는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시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모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대행업자의 수수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가산금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정비방안
－대행업자의 수수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규정한「청 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8 조는 삭제한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8 조(가산금 및 독촉) (1) 시장은 대행 <br> 업자가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 | <삭 제> |
| 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금액의 100 분 |  |
| 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
| (2) 제 1 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 |  |
| 이 경과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독 |  |
| 촉장을 발급하되, 납부기간을 10 일 |  |
| 이내로 한다. |  |

## 3．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1）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단서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과태료）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검토의견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 41 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3의 기 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되，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불명확하 여 행정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과태료 부과 처 분 대상자들 사이에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차별을 가져올 소지 가 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단서，「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단서，「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7조 단서，「청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 49 조 단서，「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 48 조 단서，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제47조 단서 및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제 46 조 제 1 항 단서도 이와 유사하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정비대상 유사 입법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과태료 등）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 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과태료 등）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에 처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47조（과태료 등）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과태 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2）정비방안
－과태료 경감 사유를 조례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하 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 4．기 타

（1）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항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 6 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1）제 5 조 제 3 항과 제 4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 장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제 1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 공무원 2 명 1 개조를 기 준으로 한다．다만，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 개조의 인원으로 부족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검토의견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2항에서는 ＂제 1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검사를 위한 출장은 공무원 2명 1 개조를 기준으로 한다．다만，검사용 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 으로 1 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공무원의 출장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사항＇의 일종으로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장이 훈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2）정비방안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를 삭제하고， 출장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 6 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1) 제5 | 제 6 조(관계 공무원의 출장 범위) (현행 |
|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 제 1 항과 같음) |
| 의 현장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  |
|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직원이 검 |  |
| 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 |  |
| 나 출장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라 제 1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수질 | 삭 제> |
| 검사를 위한 출장은 공무원 2명 1 개조 |  |
|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  |
|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 개조의 인 |  |
| 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 |  |
| 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2）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 10 조 관련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 10 조（지원결정 통보）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 대상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문】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br> 법률 시행령 |
| :---: | :---: |
| 제21조（주민지원사업）（1）시장－군수（광 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또는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 35 조 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br> 1．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 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이하 이 조에서＂시•군•구＂라 한 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br> 2．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 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 제 23 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br> （1）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 <br>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r> 1．법 제 31 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중 다 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br> 2．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qquad$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 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 적，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2）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 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 대사업
2．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3．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 원사업
4．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 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 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 로행위（漁撈行爲），선박을 이용한 영 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간접 지원사업
（3）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배 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 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3 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서 정한 사항
（3）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 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 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4）위원회는「국가재정법，제66조제 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 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그 결과 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5）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위원회의 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 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 침에서 정한다．
（6）시장•군수•구청장은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br> 법률 시행령 |
| :---: | :---: |
| （4）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 9 조와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 3월 31 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br> （7）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향후 사업 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 영하여야 한다． <br> （8）제 7 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1）검토의견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 10 조 에서는 시장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위원회로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 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시장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승인이 있는 경우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오인하는 것이다．

2）정비방안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한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 10 조를 삭제한다．

【 청주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정비안】

| 현 행 | 개정안 |
| :---: | :---: |
| 제10조（지원결정 통보）시장은 주민지원 | ＜삭 제＞ |
| $\frac{\text {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 |  |
|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원대상 <br>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제 4 장 문화•체육•관광／환경 관련 분야 정비대상 사례 및 정비방안

## （3）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관련 조례 및 조문】

##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제 1 조（목적）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 2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 21 조，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규정 에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중수도 의 적절한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 적인 용수수급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하 생략）

【관련 법령 및 조문】

## 하수도법

제 26 조 삭 제＜2010．6．8．＞

【관련 법령 및 조문】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 조（중수도의 설치• 관리）（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 （대통렁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 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물 사용량의 10 퍼 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 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 일 폐수배출량이 1 천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건축법」제2조제2항제 25 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 일 폐수배출량이 1 천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관광진훙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도시개발법」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택지개 발촉진 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2）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 3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5 조에 따른 공기업
3．「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중수도의 시설 • 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같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 3 항에 따른 시설 •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
（5）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 18 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 계 • 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 • 시공업자＂ 라 한다）에게 설계 •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 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6）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 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른 시설 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8）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가 제 3 항에 따른 시설 •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제 1 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1）검토의견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는「하수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적절한 설치•관리 및 요금감면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다．
－그런데 구「하수도법」 제26조의 중수도 설치에 관한 규정은 2010.
6．8．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59호） 제정에 따라 삭제되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는바，이 조례는 구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므로 현행성 이 확보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2）정비방안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중수도 설치•관리 및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새로 정한다．

# 제 5 장 자치입 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 제 1 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이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 정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발굴,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서 는 이상과 같은 다수의 사례들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인식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기초지방자치 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 법제전문 가의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과의 집단심층인터뷰를 통해 조례의 운영 현황과 조례 제•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2. 조사 설계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법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인터뷰는 기초지방자체단체 입법관리의 현실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 마련의 기초자 료로 삼고자 구성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역, 직급 등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 목록을 정리하였다. 목록에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 하기로 한 일정에 참석 가능한 사람들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의회와 관련하여 전 국회사무처 전문가, 종전 법제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자문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기초지방자치 단체 법무팀 팀장 또는 법률자문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자 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특성, 직책, 업무영역으로 인해 보다 다채로운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전체 7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들로부터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초점집단인 터뷰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다음의 표와 같다.
<초점집단인터뷰(FGI)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 |
| 조사 방법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FGI) |
| 조사 표본 수 (총 7명) | - 전 국회사무처 전문가: 1 명 <br>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관 : 1 명 <br> - 기초지방자치단체 법무팀 팀장 또는 법률자문관 : 총 3 명 <br> - 광역지방자치단체 법률자문관: 2 명 |
| 표본 추출 방 법 | 분야•직급 - 업무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임의할당 추출법 |
| 조사 일시 | 2016년 9월 23일 15:00~18:00 |

이번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에서의 조사 내용은 (1) 현행 기초지방 자체단체 조례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기초지방자체단체 조 례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제 2 절 연구 방법

## 1.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의 의미

초점집단(Focus group)에서는 대략 7명에서 12 명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한 방에 모이게 된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구 중인 주제와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선정된 사람들이 다. 100 ) 참가자들은 현재 기초지방자체단체의 조례와 관련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이들로서 해당 주제에 관하여 관련성 정도가 매우 높은 집단이다.

초점집단의 참가자들은 엄격한 확률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른 정량적 조사방법에서 얻어진 결과물들 처럼 어떤 모집단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 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 현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초점집단인터뷰를 이용하는 목적은 어떤 결 정적인 측면을 기술하는데 있기 보다는 '탐색'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리처드 크루거(Kruger, R. A.)에 따르면 초점집단인터뷰 방법을 이용 하는 것에 대해서는 (1)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생활을 포착하 는 사회적으로 지향된 연구방법이라는 점, (2) (다른 정량적 조사방법 에 비해) 유연성을 지닌다는 점, (3) 초점집단인터뷰는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는 점(인터뷰 참가자들의 말을 통해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관찰 을 통해 개념화하고 그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 베이나 실험연구와 비교하여 타당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 (대 규모 서베이와 달리)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5) (대규모 서
100)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37 쪽.

베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면에서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101)

## 2. 초점집단인터뷰의 실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는 사전준비작업 $\rightarrow$ 인터뷰의 실시 $\rightarrow$ 자료 분석 $\rightarrow$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실시된다. 사전준비작업 단계에서는 참가자 선정 및 수배, 인터뷰 지침서 작성, 장소 섭외, 녹음 준비 등 인터뷰를 위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한다. 인터뷰의 실시 단계 에서는 사회자가 참가자들과의 좌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 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는 녹음을 풀고 정리한 후, 보고서를 작성 하게 된다.102)
(1) 사전 준비

1)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그룹의 속성, 그룹의 수, 그룹별 참 석자 수에 관한 내용을 결정한다. 그룹별로 동일한 속성을 지닌 참석 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야 참가자들 사이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며 심층적인 의견 및 새로운 의견의 도출이 가능하다. 참석자 의 수가 많아지면 심도 깊은 토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너무 적 다면 집단 토의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8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되, 다뤄야 할 내용의 깊이에 따라 심도 깊은 경우는 6 명 이하, 간단한 경우는 10 명 정도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101) R. A. Krueger, Focus Groups. Newbury Park, CA: Sage, 1988, p. 47; 이세정, 행정

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37~38쪽 재인용.
102) 이세정,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38~39쪽.
2) 일정 및 장소 선정

사회자 한 명이 초접집단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횟수는 $1 \sim 2$ 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자가 집중하여 참석자들을 제어하며 인터뷰를 진 행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피로를 유발한다. 따라서 제대로 사회를 볼 수 있는 횟수는 1~2회에 그친다. 일정은 참석자들의 속성에 따라 참석하기 쉬운 요일이나 시간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 인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로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 반해, 대학 생이나 주부들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시간대를 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장소는 참석자들이 모이기 쉽고,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곳을 선택한다.
3) 사회자 및 보조원 선정

초점집단인터뷰는 사회자의 기량에 좌우된다. 원활한 인터뷰의 실시 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인터뷰 경험이 있으면 좋다. 또한 인터뷰 를 돕기 위해 인터뷰 중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인터뷰 후 녹 음한 내용을 풀어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보조원이 필요하다.
4) 참석자 수배

참석자 수배는 위에서 정한 대상자 속성을 지닌 사람들 중 조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여 이루어진다. 적합성 정도를 판단한 후 조사 목적을 알려주고 정 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석 여부를 묻고 최종 참석자로 선정한다.
5) 인터뷰 지침 마련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질문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지 침서에 따라 인터뷰를 실시하고 결론을 유도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제 5 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크게 현행 기초지방자체단체 조례의 문제점 및 운영현황 파악, 기초 지방자체단체 조례 운영의 개선방안 도출 관련 내용 등을 순서대로 묻고자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인터뷰 지침서는 꼭 정해진 순서와 내용을 따를 필요 없이, 인터뷰 를 진행하면서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필요한 질문이나 순서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6) 기타 준비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는 참석자들의 좌석 배치도와 같은 메모 용지와 인터뷰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메모 용지도 필요하다. 이러한 보조 도구를 통해, 앞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각 참석자들의 응답을 헷갈리지 않고 이어 새로운 질문 으로 원활하게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밖에 녹음 장비, 필기도구, 참석자에 대한 사례 등의 준비도 철 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2) 인터뷰 실시

1) 오리엔테이션

참석자가 모이자마자 바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 가 조사 목적, 주요 내용, 사회자에 대한 소개, 참석자에게 인터뷰를 위해 몇 가지를 알리고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 당부할 내용으로는 '솔 직하게 응답할 것',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것', '진행 중이라도 중 간에 생각나면 언제든 이야기 할 것,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들 이다.
2) 인터뷰 실시

인터뷰에서 사회자는 대화를 주도한다기보다는 사회자가 던지는 주 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주제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 도록 이끌어야 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단계에서 잠정적인 판단을 통해 정리하 고 참석자들에게 반응을 청취하여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역할 및 유의할 점을 신경을 쓴다면 인 터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 너무 간단히 응답할 경우 추가로 질문하여 의견을 표출하도록 유도한다.
- 인터뷰 지침 순서와 달리 참석자가 미리 다음 순서의 질문에 대한 응답까지 하는 경우, 관련성 정도에 따라 다음으로 넘기던지 혹은 응답을 끝까지 듣고 난 후 메모하여 이후 순서에서 그 부분을 빼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 응답 중에 새로운 사실, 특히 중요한 사실이 나올 경우, 사회자의 판단에 따라 지침과 달리 각 참석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 하여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
- 참석자의 의견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참석자들에게 거 수하도록 하여 파악할 수도 있다.
- 특정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된 경우라면 간단히 넘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확인 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심 층적인 의견을 얻는데 집중한다.
-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참석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며 본 주제로 돌아가게 하거나, 다음 순서의 참가자에게 질 문 기회를 줌으로써 끊도록 한다.
- 말이 너무 많은 참석자의 말은 적절히 통제하는 반면, 말이 너무 적 은 참석자에게는 응답 기회를 주고,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묻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묻어가려는 것을 피해야 한다.

3) 대화 기록

참석자들이 펼쳐놓는 내용들에 관하여 녹음하고 보조원이 해당 내 용을 푸는 작업을 하여 자료 분석을 한다. 이외에 사회자에 의해 중 요한 대화 내용의 메모하고, 참관하는 조사 담당자에 의한 메모를 통 해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4) 인터뷰 참관

사회자는 참석자들이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진행을 이끌어 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대화 내용 전반에 대해 파악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조사 담당자가 인터뷰 를 관찰하고, 대화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메모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잠정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 제 3 절 조사 결과

## 1．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1）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현황
1）조례 제정•개정과 관련된 상황
먼저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한 문제가 과거에 비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관련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그 결과 최근 「지방재정법」등의 개정 으로 보조금 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개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가 증가하 는 경우，그리고 의원 조례의 증가가 합쳐져 전반적인 조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러다보니 양적으로 늘어난 정도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금 조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왜 냐하면「지방재정법」이나 상위법이 바뀌면서 보조금 조례를 제정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 개 이상 조례가 증가되면서（후략）．．．【전문가 3】

지금 조례의 양적인 증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기 관장님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단체 시민들의 의견이 들 어오면 기존에 있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실적 평가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일단은

제 5 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조례의 수를 늘리고 보자．약간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 습니다．【전문가 4】

2）조례 제•개정 처리 시 절차와 관련된 상황

다음은 담당 실무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절차에 대한 파악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취지에 걸맞게 위임입 법의 취지를 살려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지를 확인하 고자 했다．그 결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를 검토하고 그와 유사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실무 담당자들이 유사조 례를 참고하여 만든 해당 지역의 조례에 대해 결재권자들 역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점은 수정되어야 할 문 제로 판단된다．

조례 관련 상위법이 제정되면 법제처에서 알림서비스로 안내가 옵니다．그 알림서비스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제 정해야 될 부분들，저희 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해당 부서에 공문으로서 알리고 있습니다．공문으로 알렸으면 저희들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데이 터 관리를 해서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를 체크하는데．．． （중략）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유사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전문가 3】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방식은 이제 타시•군 조례부터 검토 를 합니다．（중략）공무원들은 타시•군 조례를 보게 돼서＇그냥 근 거가 법에 맞습니다가 아니라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그러면 사실은 다 오케이，오케이 해서 넘어 가거든요．（중략）그래서＇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논리는 주변에 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전문가 5】

조례를 만들 때 타시군의 조례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게 되더라 고요．사실은 각 지역별로 다 좀 특색이 있게 해야 되는데．그런 걸 느꼈어요．그러니까 똑같이 하는구나．【전문가 2】

3）조례에 대한 현장의 인식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례에 대해 실무 담당자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전 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실무 담당자들은 실무를 위한 단계이며， 두어 달 정도 배우면 가능할만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아울러 조례를 성과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개정 내지 폐기 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지방자 치단체에서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조차 법제가 변호사로 서 지속적인 경력을 쌍아 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야라 인식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조례라는 건 그냥 실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인 거지．뭐 법 률적인 전문성 같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아직까지는 인 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실무적으로는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 아 직 많이 공감을 얻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전문가 4】

변호사들 입장에서 법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송무 분 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향후에 법률전문가로서 송무 쪽으로 나 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법제 같 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적인 행정 공무원분들께서도 한•두 달 정 도 이렇게 배우면 가능할 것 같다．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조례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근원이 되는，근거가 되는 걸 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성과물，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함부로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거에 대해 두려움이 좀 있 는 것 같더라고요．【전문가 6】

옛날에 만들어 진 거기 때문에 법이랑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그래서 처음에는 폐지를 하라고 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존 것을 폐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해당 과 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스 러워 하시더라고요．【전문가 7】

사실은 이 법제업무라는 게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단순 히 변호사님들은 처음 형사，민사 이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전문가 2】

4）조례 법제업무 담당 인력 구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담당하는 인력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위와 같은 인식이 나타난 이유를 유추하고자 했다．현재 기초지방자 치단체에서 조례와 관련하여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법제와 송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통계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의 인력들이 법무라는 이름 하에 배정되어 있으며，이는 업무의 과 중으로 말미암아 조례를 비롯한 법제 업무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조례 같은 경우는 법무통계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어떤 경우 는 팀 소속은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이기도 해요．【전문가 5】

우리 시의 경우 집행부에 변호사 한 분이 있고，의회에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그 집행부에는 송무팀장이라고 해가지고 심판하

고，송무 쪽 일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법제는 다른 일반직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심사가 안 되고 있어요．【전문가 2】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법제하고 송무 분야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인력적으로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전문가 4】

시•군은 자치법규 업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통계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그리고 사실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지요．그렇게 법에 헌법 합치성 이렇게 다 담당자가 숙 지하면서 볼 여유가，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 【전문가 7】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획예산과에 의회법무팀이 있더라고 요．의회법무팀에서 조례 업무를 하는데 담당자가，자치법규담당자 가 1 명인데 그 분이 송무 업무도 하더라고요．이렇게 혼자 송무 업 무도 하고，자치법규 업무도 하니까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요．

【전문가 1】
（2）조례 제 •개정 시 발생하는 문제점

1）중복 조례

앞서 조례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쳬의 현황을 통해 드러난 문제 점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다．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에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다시금 규정하는 중복 조례에 대한 사례 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복 조례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에 넣음으로써 이후 조례를 다시 보더라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령의 중복임에도 불 구하고 넣고자 했다．이와 같은 현상은 실무 담당자들이 법을 보지 않고，‘조례만＇보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수시로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현실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담당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이 내용을 넣지 않 으면 나도 잘 모르겠다．이 내용을 빼면 내가 만약에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후임자가 오면 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겠다．꼭 이 건 넣고 싶다．＂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그러면 법률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빼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전문가 4】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법을 찾아보지 않으니까 조례에서 한 번 더 규정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 으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전문가 1】

해설집을 만드는 건 상관없지만 조례나 규칙 자체에서 법하고 중복되면 너무 복잡해져버리지요．【전문가 2】

어떤 조례에서 보조금의 지원조건，지원자격 이런 것들이 비슷하 면 법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쓸 수는 있는데 법령이 바뀌거든요．법 령이 수시로 바뀌어서 적시에 조례를 개정해줘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을 못하게 되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되고，예를 들어 실무담당 자들은 조례를 보고 집행을 해버려요．그러면 법에 위반이 되어 버 리거든요．법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고，그러니까 법령을 즉시，즉시 반영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전문가 1】

2）표준조례 선호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역으로 표준 조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표준조례도 실제로 법제처에서 검토를 해

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존재함에 따라 주무부처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 우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자들은 표 준조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조례 에 대한 실무자들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시•군에서도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위임이 됐으니 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시•군법제 담당자들도 소관 부서에서 이걸 안 만드는 거예요．법령에서 위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만드냐고 했더니 표준조례．．．【전문가 7】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앞에다가 $\bigcirc \bigcirc$ 시만 붙이면 된다는 입장도 좀 있고요．

【전문가 5】

표준조례를 잘 만들어서 내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기초지 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에는 표준조례가 있 으면 빨리빨리 정비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전문가 1】

표준조례안은 그냥 위에서 옛날에 준칙안 내려오듯이 그렇게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전문가 3】

3）위임의 한계 일탈
조례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자들이 하나의 성과 내 지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인식함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등을 넣어 위임의 한계 일탈이라는 법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또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

로 해석하여 추가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예를 들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 규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실무관님들이나 담당자님들이 강제 보험 가입규정을 절대 안 빼려고 해요．왜냐하면 그걸 빼버리면 운 영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왜，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한 조례협약서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 이런 걸하고 있느냐，이런 부분들이 소송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 니다．【전문가 4】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해 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법에서）정하지 않았는데 법의 취지로 볼 때 이런 것이 들어가서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이런 부분 들이 많이 있거든요．제가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안사유를 더 집어넣고 하는（후략）．．．【전문가 1】

4）지방자치단체의 상황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외부의 인식
기초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례의 취지를 살려 지역의 사정에 맞 게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지방지차단체별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며 민원을 제 기하여 담당 공무원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조례의 취지를 살려 운영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법에서 어떤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들고，그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좀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 례마다 다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

오는 거지요．＂왜 옆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더 완화해주는데 우리는 완화 해주지 않느냐？＂그래서 서로 다르게 규정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중략）사실상 위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지기 가 어려운 거지요．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시•군 직원 들은 민원을 두려워하고．【전문가 7】

정말 다른 시•군에서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왜 유독 우리는 안 됩니까？이런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중략）기관의 장이라든지，그런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이렇게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전문가 4】
（3）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 • 개정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대안

1）조례 제정권자들의 법제 중요성 인식 부족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현재 조례 제정권자들이 조례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완성도가 높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지 못하고，관련 인력에 대한 보강도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나왔던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바탕에는 조례 제정권자들의 중요성 인식 부족이 기인 하는 바가 크다．예산이나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부 분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해야 됨 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안 됐다 고 보여요．【전문가 4】

조례제정권자들의 관심도가 너무 낮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 아요．예산 이런 거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쏟으시면서 조례에는 관

제 5 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심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조례를 가져가더라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예산가지고만．．．【전문가 6】

법제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의 인식이 좀 바뀌 어서 법제에 대한 최소한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전문가 1】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법제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임 기제라도 좀 더 뽑아주시면 좋은데，저희가 그래서 변호사를 뽑으 려고 노력하는 데도 잘 안돼요．임기제 더 뽑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자꾸 커트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전문가 7】

아무래도 민선에서 표가 되고 뭔가 화려한 광고가 되고 이러지 를 않다 보니까（조례제정권자들이）법제에 대한 인식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요．【전문가 5】

2）법제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대안

조례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첫째，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부족과 둘째，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법제 지식 부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법제 전문인력 필요성
참석한 전문가들 모두 법제 전문인력의 부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 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정원 등의 이유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어려워하고，확보한 경우라도 법제가 주력 분

야가 아니므로 체계적인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경로가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개별 부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문가로 만들 수 는 없겠지만 총괄 팀에 있는，최소한 거기서 다른 부서를 봐주는 총괄 팀에 있는 담당자들은 최소한 법제업무 전문가로 하고，또 업 무 양도 최소한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아요．【전문가 1】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본인들이 이제 전문성을 키우기도 어 렵거니와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것도 상 당히 어렵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가를 찾으면 없더라고요．．．지금은 뭐 딱히 어떻게（할 방법이．．．）이 렇게 본인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전문가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전문가들，그런 분들께서 체계적인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어요．【전문가 4】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위에서 살펴본 법제 전문가 필요성과 더 불어 이들을 충원하는데 대한 방법도 제시하였다．즉 예산만 허용된 다면，최근에 정원에 구애받지 않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다만，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필수임을 함께 언급하였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예산만 있으면 정원에 없이 임기제는 다 할 수 있거든요．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그런데 아직 그런 것을 모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위에서 의지가 있으면 어 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그게 가장 첫 번째이고，의지만 있으면 다 돼요．【전문가 2】

아울러 전문가들을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법제에 관한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충원한 법률 전문가들 에게도 법제 전문 교육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실은 법 제처 해설서 이상의 법제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자료가 공유될 수 있 는 자료로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소수의 수십 년 경험을 지 닌 전문가들의 암묵지로 구전되는 정도에 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자 료화，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법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책을 찾으려고 하면 생 각보다는 많이 없습니다．그래서 법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있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문관님이라든지 로부터 구두로 듣는 거죠．법제 부분에 대한 지식 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느낌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 【전문가 4】

그 밖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전문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문변호사，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자문 응답을 성실히 해주는 고문변호사들에게 사건 을 맡기는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고문변호사제도만 잘 운영해도 굉장히 유리합니다．고문변호사들 운영을 할 때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월 보수를 매우 적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실무 공무원들이）질문도 짧게 했는데（고문변호사 들도）잘 모르다보니까 답장도 짧게 보내 와요．그래서 저희가 채 택을 했던 방식은 자문을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건을 준다라는 거 였어요．【전문가 5】
（2）실무 담당자들의 법제 지식 부족
실무 담당자들의 법제 지식 부족에 대해서는 크게 순환근무로 전문 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기본적인 법제 지식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실무선에서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법제에 대한 내용을 잘 모 르는 경우가 많아요．이 부분이 맞는가，안 맞는가，또 조례규칙을 검토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이런 불안감，예를 들어 실 무자들이 잘 접해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전문가 3】

담당자들도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뻴이 오른다고 했을 때라도 또 기간이 되면 또 다른 기관，또 다 른 부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전문가 4】

저도 여러 부서를 돌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들 일반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시인을 합니다．그동안 가지고 있던 커리어나 그런 지식들은 남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전문가 8】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걸 어려운 걸로 생각해 요．의회에 변호사 한 분이 채용되어 있고，자치단체에 송무팀장이 한 분이 채용되어 있는데，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 잖아요．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의원들이 어떤 안을 내면 그것과 관 계있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사실은 전문성 이 없다 보니까．【전문가 2】

먼저 순환보직에 따른 문제점의 대안으로 법제 부분에 있어 법제전 문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제 전문기관에 파견을 보내는 방법으로 전 문 인력 양성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법제 분야에 대한 인식 및 효율

제 5 장 자치입법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증진을 위해 조직의 분리를 통해 독립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도 제시하였다．

어떤 특수 직군에 대해서는 종신적으로 한 직군에서 일을 하겠 다라고 하면서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한다는 제도가 있다고 뉴스 에서 봤는데，그런 제도를 법제전문가 제도로 도입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최근에 $\bigcirc \bigcirc$ 시에서는 전문가제도 를 도입해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서 전문직으로 키워준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 제도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해서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이 사람들을 단지 그냥 몇 번만의 교육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법제처에 파견을 보낸다든지 해서 마치 신입 공무원，신규 공 직자 과정처럼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킨다면 정말 뛰어난 인력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전문가 5】

법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직이 전반적인 기관에서 분리가 되 어 있다면 그런 조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도 아， 법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분리가 되고，뭐 이렇게 하나보다． 뭐 이런 인식이 들 수도 있고요．팀이 분리가 되고 조직 구성이 되 면 별도 팀이 있기 때문에 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전문가 4】

다음으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법제교육을 비롯하여 기본 법률교 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법제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 해서라도 실무 공무원들의 법제 및 법률 관련 지식의 수준이 향상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공무원 특성 상 해당 법률에 대한 지 식 정도가 부족할 뿐이지，현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충분하 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법률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초지방자체단 체의 조례와 관련된 사안들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우리，지방자치단체가 9급， 8 급， 7 급 이런 분들 있는 데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학교육을，적어도 행정법은，행정법 하고 민법 이 정도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들 전부 다．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주기적으로 그건 교 육을 계속해서 시켜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야．

이제 법제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 법률에 대한，민법하고 행정법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강 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조례 담당）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 으로 하거나 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전문가 4】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교육에 대 해 맞춤식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이를 위해 년 단위로 특성별로 교육 일정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시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도에서 법제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법제처에서 아마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복지공무원，건 축공무원，$\bigcirc \bigcirc$ 공무원 다 앉혀가지고 한 번에 하는 교육은 좀 의 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전문가 6】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법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들 자체 가 그러니까 교육 1 ，교육 2 ，교육 3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축적되는 교육이 되어야지요．【전문가 4】

심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되풀 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이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좋은 데 뭔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그 교육으로는 충족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교육 자 체는 이것하고, 저것하고 멈췄다가 또 이것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교육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들어도, 이건 지난번 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제교육은 한번 들 으면 끝나는 교육, 약간 이런 맥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년 단위 기준으로 통합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면 듣는 사람 입 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7】
3) 재량권 행사를 위한 근거자료 부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를 만드는 경우, 관련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중앙 부처의 법제 이외에 조례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들이 많 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었다.

지방자치제로 인해 주어지는 그 재량의 어떤 모호함, 어디까지 우리가 몇 \%까지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담 당자들이나 실무자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우리 시는 $50 \%$ 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정보라든지, 국책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조금 더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 백업자료를 마련을 해주면 아무래도 일선 실무자들이나 조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느 연구

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우리 시의 생각을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근거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그런 사무랄까요？그런 부분에 대한 재량성이 조금 더 견 고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전문가 3】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데 이터가 부족하고（중략）이것을 도입했을 때 얼마큼 파급 효과가 있고，또 얼마큼 수혜혜택이 있는가를 재정분석이나 아니면 검토의 견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자료가 많이 부족하고요，국회 같은 경 우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일선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그 기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얼마큼 수혜성이 있어？＂라고 물어보면 실무자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용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요．【전문가 7】

## 2．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의견

## （1）조례 일몰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 해 몇 가지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먼저 실무 담당자들이 담당 조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 일몰 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에서 위임한 것을 일몰 시점에 재검토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조례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좀 넣어가지고 3년이나 5년 정도 그 러면 적어도 그 기간 안에는 1 번 정도는 검토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그래서 유효기간을 넣고 그 기간 안에 담당자가＇아，그래． 이런 조례가 있었구나．우리 시，우리 과，우리 팀에서 이런 조례를 담당하는 구나．＇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좀 느껴보자는 측 면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안 그래도 바쁜 데 이런 부담을 드려야 되나，어떤 기준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과 조례만 유효기간을 둬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전문가 4】

조례일몰제，지금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조례 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는 5 년 이내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조례일몰제를 도입하 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필요 없는 조례들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 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전문가 1】

법령에서 위임한 거라도 다시 재검토한다는 취지로，왜냐하면 법 은 계속 살아있는데 조례를 없애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라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2】
（2）조례 영향평가의 필요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 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효용성이 떨어진 조례들에 대한 정비를 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원 회 관련 조례 등 유명무실한 조례들에 대해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 는 사례도 있기에 적용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데 하나의 조례만 딱 빼내서 정비를 하는 건 좀 안 맞거든요．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번하 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 1】

한 4,5 년 동안 계속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조례의 효용성 이 떨어지면 그와 관련된 지원했던 조례들을 찾아서 폐지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 우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취지하고 지금 시대에 뒤떨 어진 조례들은 폐지하고，또 통합이 될 필요가 있는，특히 위원회 조례가 그렇습니다．각종 위원회 조례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거의 한 $20 \%$ 정도 됩니다． 1 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 는 위원회들은 통•폐합해가고 있거든요．【전문가 3】

조례는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 중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특히 도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거나，승인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전문가 5】

지금 연 한 2회 정도 자치법규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서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 권고를 하고 있고요．【전문가 4】
（3）상위기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및 외부 컨설팅 필요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노력을 하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해결 을 위해서 법제처 또는 광역시도에서 기초 시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아울러 공신력을 갖춘 외부 기관의 법제 관련 컨설팅은 기관 내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도에서도）크게 중요한 사건에 자문을 해준다든가，지금 자문팀 을 만들어서 하기는 하는데，도에서 도 예산으로（시군에）청문관을 파견해 주든가．법제처에서 법제협력관 같은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주든가．이제 외부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요．

【전문가 2】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금방금방 배울 수가 있는데 공문으로 질 의하고 이러는 것은 한참 좀 거리가 있지요．【전문가 7】

객관적으로 제 3 자가 우리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이런 객관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에 가서＂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결 과 의견이 나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도＂아，그랬어 요？그러면서 통과．＂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외부에서 별도로 어떤 단체라든지 법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이 있다 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뢰도 조금 하면 유기적으로 조금 더 자 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4】
（4）조례 및 법령의 필요성 인식
기초지방자치단체 실무 담당자들은 조례에 대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례만을 보는 상황에서 조례에 법령 상 내용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임입법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나아가 조례와 법령과의 링크 시스템의 보다 빠른 연동으로 인해 문제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조례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내용 전반이 커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전문가 4】

법령의 위임조항을 명시해서 그것을 항상 찾아볼 수 있게，아무 것도 찾아볼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몇 조에 근거한 건지 잘 모르 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법이라든지 위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좀 구체적으로 표시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1】

## 제 6 장 결 론

이상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비롯한 10 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국토•교통 관련 분야，（2）산업•자원 관련 분야，（3）보건•복지 관련 분야，（4）농수축산 관련 분야，（5）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6）환경 관련 분야 총 1,612 건의 조례 중（1）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2）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3）헌법상 명확성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4）기타（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사례 총 222 건을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대상 사례 발굴 현황＞

| $\begin{aligned} & \text { 분 } \\ & \text { 야 } \end{aligned}$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국토 <br> 교통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평택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 수에관한조례 제 4 조＂등 16 건 발굴 |
|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등 7건 발굴 |
|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제 8 조 제 4 호＂등 14건 발굴 |
|  | －기 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 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등 11건 발굴 |
|  | 소 계 | 48건 |


| $\begin{aligned} & \text { 분 } \\ & \text { 야 } \end{aligned}$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산업 <br> 자원 |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 한 조례 제 35 조 제 4 호 " 등 12 건 발굴 |
|  | - 기 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 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4건 발굴 |
|  | 소 계 | 16건 |
| 보건 <br> 복지 |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6조 제1호" 1 건 발굴 |
|  |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 조" 등 2 건 발굴 |
|  |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 24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5 호" 등 13건 발굴 |
|  | - 기 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 례 제7조 제4항" 등 7건 발굴 |
|  | 소 계 | 23건 |
| $\begin{aligned} & \text { 농수 } \\ & \text { 축산 } \end{aligned}$ |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 <br> 리 조례 제7조" 등 19건 발굴 |
|  |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등 15 건 발굴 |
|  |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0 조 제 2 항" 등 10 건 발굴 |
|  | - 기 타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 리 조례 제9조 제2항" 등 6건 발굴 |


| $\begin{aligned} & \text { 분 } \\ & \text { 야 } \end{aligned}$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 소 계 | 50건 |
| 문화 <br> 체육 <br> 관광 |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운영 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등 6건 발굴 |
|  |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 한과징금징수조례 제4조" 등 2 건 발굴 |
|  |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 12 조 제 1 호" 등 11건 발굴 |
|  | -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제1호" 1 건 발굴 |
|  | - 기 타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 원 조례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 지" 등 2 건 발굴 |
|  | 소 계 | 22건 |
| 환 경 | -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례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등 13 건 발굴 |
|  |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례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 제3항" 등 43건 발굴 |
|  |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사례 |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제41조 단서" 등 4건 발굴 |
|  | - 기 타 |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 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항" 등 3건 발굴 |


| 분 <br> 야 | 항 목 | 발굴 내용 및 건수 |
| :---: | :---: | :---: |
|  | 소 계 | 63 건 |
| 총 계 | 222건 |  |

이러한 조례 사례 발굴 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자치입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초점 집단 면접 조사 방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활용하여 자치입 법의 문제점 및 운영 현황, 자치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입법권은 입법자와 그 수범자 간의 간 격을 좁히고 당해 지역 내지 주민에게 적용되는 자율적 • 탄력적 법형 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의 핵심적 요 소라 할 수 있다. ${ }^{103)}$ 자치법규는 지역적응성 • 상황즉응성 • 지역종합성 의 성향을 갖는 법규로서104)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 법령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주민의 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 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헌 법 • 법령에 합치하게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적 과제 라 할 것이다.105)

이하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헌법 • 법령에 합치하게 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 방향(내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언하고자 한다.106)
103)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50努.
104)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론과 입법론 -, 50曻.
105)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2쪽.
106) 이하의 정비 방향(내지 방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이해 편의를 도모
(1) 조례는 법률이나 명령 등 국가법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이상 무엇보다도 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07) 우리 헌법 제 117 조 제 1 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 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도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 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상위법령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다. ${ }^{108)}$

최근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사항을 법령이 공포하는 즉시 일반국민 및 공무원 등에게 이메일 로 알려 주는 ‘법령개정 알림 서비스’를 개시하였고,109) 법제처 국가법 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상위법령 개정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110) 또한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법제처 의 상위법령 개정알림을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개정해야 할 조례를 체크하고 있다고 한다.

[^4]107)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17쪽.
108)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3쪽.
109) 법제처, 보도자료(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 • 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2016. 4. 27.
<http://www.moleg.go.kr/news/mglNews?searchCondition=AllButCsfCd\&searchKeyword=\�\%BO\%C\%E $\mathrm{C} \% \mathrm{~A} 0 \% 95+\% \mathrm{EC} \% 5 \% 8 \mathrm{C} / \mathrm{EB} \% \mathrm{~A} 6 \% \mathrm{BC} \& \mathrm{x}=0 \& \mathrm{y}=0>$ (최종접속 : 2016. 10. 1)
110) [http://www.law.go.kr/unOrdinSc.do?menuId=2\&schtype=0\&query=\&nwYn=6](http://www.law.go.kr/unOrdinSc.do?menuId=2%5C&schtype=0%5C&query=%5C&nwYn=6)
(최종접속 : 2016. 10.1)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법제처의 상위법령 개정 알림 제도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제정•개정 조례 체크는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FGI 결 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령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고쳐 지는 상황 속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때 반영 하는 데에는111) 여전히 예산 부족, 순환 보직에 따른 입법전문인력 부 족, 의회와의 협조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상위법령 제•개정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 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인력 확보, 의회와의 협조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 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에도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을 새로 규정 하는 사례 역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법령의 규 정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례 관리 및 집행의 편 의상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하는 불가피성이 있기는 하나, 법령 입법자의 입법취지•의도에 반하여 상위법령에 반 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서 단순반복하여 규정 하더라도 조례에서 새로운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12)}$

[^5]（2）「지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는＂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침해유보론을 채택하고 있다．113）이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으나，114）우리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각각＂지방자치법 제 22 조，제 9 조 제 1 항，구 지방자치법（2007．5．11．법률 제 8423 호로 전 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 1 항，제 15 조，행정규제기본법 제 4 조 제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 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주민의 권 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 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115）＂헌법 제117 조 제 1 항은＂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 산을 관리하며，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113）홍정선，행정법원론（하），156쪽．
114）「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에서 구체화되는 헌법 제 117 조 제 1 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서 합헌설을 취하는 입장（김동희， 앞의 책， 86 쪽），「지방자치법」 제 22 조 단서는 헌법이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 치입법권（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박윤흔•정형근，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2009，131쪽）또는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입법권을 부여한 취지 에 반하는 것（김남진，조례제정권의 범위，고시연구，1997．9，20쪽）으로서 위헌설을 취하는 입장，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직접 규율 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헌법합치적으로 새기는 입장 （류지태•박종수，행정법신론，박영사，2011，925쪽）으로 학설이 나뉘고 있다．홍정 선，행정법원론（하），157쪽．
115）대판 2007．12． 13,2006 추 52 ．그 밖에 대판 1995．5． 12,94 추 28 ．대판 2009． 5. 28,2007 추 134 ，대판 2012．11． 22,2010 두 19270 ，대판 2012．11． 22,2010 두 22962 등 도 같은 취지의 판례이다．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 15 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례들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직업수행 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 15 조 단서 소정의 주민 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116)라고 판시하여 이를 합헌으로 이해하고 있다.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 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다수의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의 재산권•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해 서 규정하거나 주민에게 등록•신고•준수의무 등 작위의무, 명칭사 용금지 등 부작위의무를 규정하거나 가산금 등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 고 있다.117)

이와 같은 사례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법률유보 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법집행시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의 불필 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 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에서 이를 새로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118)
116) 헌재결 1995. 4. 20, 92헌마 264,279 병합.
117)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5 쪽.
118)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5쪽.

한편，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그 원리적 배경이 된 법률 유보론을 완고하게 해석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법 률의 위임이 없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의 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는데，이는 지방자치 전면복원 이후 의 조례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매우 빈약하거나 편 향된 조례들이 주로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119)}$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 로 규정하지 아니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120）조례제정권과 관 련하여 국가법령에 의한 수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순간 이미 조례는 자치입법이 아니라 국가의 하위법령으로서 단순한 집행의 기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조례는 자치입법으로서의 규범적 역할을 본질 로 하지만 국가법질서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시범입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121）에서 자치행정의 의미가 축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122)}$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14 조 제 1 항에서는＂국가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123）에 비 추어，지방분권의 진행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의 증대，주민에 보다 밀

[^6]접한 행정의 구현,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위해서 지 방자치단체가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에 조례로 주민의 권 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24)}$
(3) 조례의 내용은 이행하여야 할 의무자가 다른 도움 없이 그 규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125) 그런데 2015년도 "조례의 법령 •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수 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불명확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가능 한 용어•문장을 사용하여 조례의 수범자가 그의 의미•내용을 용이 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가급적 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법전문가 뿐 아니 라, 일반주민도 그 내용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규율사항을 명 확하게 규정함으로써126) 법집행 및 해석상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2015년도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결과와 마 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비법률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장 이 매우 복잡하고, 매끄럽지 않으며 구어체형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 조례의 체계가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그 형식적인 완결도는 매우 떨어진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전문인력 부족, 조례에 대한 낮은 관 심도 등에 비추어 예측가능한 결과라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발전에서 의 조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법 단계에서부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참고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문법

[^7]적으로 적절하며 법문장으로서 적합한 문장 사용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127)}$
(5) 지방의회의원 간 조례 발의 경쟁 심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항 이행, 시민단체 등 이익집단의 증대, 상위법령의 제정•개 정 사항의 반영 등을 이유로 조례의 제정•개정 수요가 매우 증대하 고 있다. 그런데 조례를 입안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 전문지식 및 다 양한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나128) FGI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담당자의 수가 매우 적고, 이마 저도 순환보직에 따라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기초지방의회 의원이나 전문위원129)의 조례에 대한 관심 • 전문 성도 부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표 준조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를 답습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참고한 표준조례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문제점이 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여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잘못 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률의 위임 근거 가 없거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가 제정되 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표준조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더라도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 의 원칙, 헌법상 평등•비례•명확성의 원칙 등 조례 입안기준, 해당
127)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7쪽.
128) 정준현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구(區)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2. 9, 1131쪽.
129) 2016. 9. 21 에 실시한 자치입법 전문가 개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약 하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임용될 경우 의원들에 대한 입 법보좌와 의정지원 역할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6）조례입법관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 는 입법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이 필요하고，FGI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자문관제를 도입하거나 법제 검토지침 등을 만들어 참고하고 있으나，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예산 및 전문 인력의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바，임기제나 개방형 법제전문인력 채용 확대， 조례의 제정•개정 시 입법 전문가의 참여，130）중앙 부처 차원에서의 법제전문인력 파견지원 등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 책적－법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마지막으로 FGI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 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입법 관련 지식 및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례를 법령 및 헌법에 맞게 제정•개정하고 제대 로 이해하며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헌법，행정법，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및 「법령 입안 심사 기준」，「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대한 단계적•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심 및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정 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30）정준현 외，앞의 보고서，1131쪽．

## 참 고 문 헌

김남진, 조례제정권의 범위, 고시연구, 1997. 9.
$\qquad$ - 김연태, 행정법 П, 법문사, 2015.

김동희, 행정법 ㅍ, 박영사, 2015.
김춘환, 법률과 조례의 관계, 토지공법연구 제2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 자치입법권의 해석 론과 입법론 -, 지방자치법연구 제 12 권 제 4 호, 한국지방자치 법학회, 2012. 12,
$\qquad$ ,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제19호, 행정법이론실무 학회, 2007. 1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5.
박순종, 자치입법 처리 소요기간의 영향요인 분석-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을 중심으로 -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6. 2.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qquad$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법제처, 2012.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4.
이기우,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 13 권 제 3 호, 한국헌법학회, 2007. 9.

이기우,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향상방안 -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9.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
$\qquad$ , 행정절차법 개선을 위한 청문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한국 법제연구원, 2013. 6.
$\qquad$ 외,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 방안, 법제처, 2013.
정준현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구(區)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2. 9.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 조례에 대한 법률 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 33 집 제 3 호, 한국공법학회, 2005. 5.
$\qquad$ , 지방자치 20 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지방 자치법연구 제 15 권 제 2 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6.

최승원 외,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법제처, 2015. 11.

한귀현, 독일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론에 관한 소고 - 그 역사적 구조를 중심으로 -, 독일학연구 제14권,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1998.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15.
$\qquad$ ,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5.
A. Gern, Kommunalrecht, Baden-Württemberg, 9. Aufl., 2005.
G. Waibel, Gemeindeverfassungsrecht, Baden-Württemberg, 5. Aufl, 2007.
R. A. Krueger, Focus Groups. Newbury Park, 1988.
R.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3. Aufl., 1996.
"궁박? 구거? 어려운 민법 표현 사라진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 법예고", 이투데이, 2015. 8. 2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87082](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87082)
"민법 어려운 한자•일본식 표현 57년 만에 사라진다", 법률저널, 2015. 8. 2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11](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11)
""일본식" 민법 표현, 57년 만에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2015. 8. 2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825000975\&md=2 0150826003218 _BL>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지방선거",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vote.do?page=2](http://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vote.do?page=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2014. 3. 17.
<http://www.gaok.or.kr/gaok/bbs/B0000005/view.do?nttId=4286\&se $\operatorname{archCnd}=\& s e a r c h W r d=\& g u b u n=\& d e l C o d e=0 \& u s e A t=\& r e p l y A t=\&$ menuNo=200023\&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 ion1=\&option2=\&option5=\&pageIndex=5>

법제처, 보도자료(조례 등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인다 - 시•도 법무 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 2016. 4. 27.
<http://www.moleg.go.kr/news/mglNews?searchCondition=AllButCs fCd\&searchKeyword=\%EA\%B0\%9C\%EC\%A0\%95+\%EC\%95\%8C $\% \mathrm{~EB} \% \mathrm{~A} 6 \% \mathrm{BC} \& \mathrm{x}=0 \& \mathrm{y}=0>$

행정자치부•법제처, 보도자료(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 법규 13,946 건 정비 완료- 2015년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협 력관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 2015. 12. 24.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71226\&pageIndex=20](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71226%5C&pageIndex=20)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5년 1월 1일 현재), 2015, 4쪽.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 o?bbsId=BBSMSTR_000000000055\&ntIId=46105>

홍준형, 자치법규 통합관리의 효과, 경향신문, 2015. 8.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 22057535\&code=990304>

연구대상 조례 목록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토•고통 관련 분야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평택, 강원, 포항, 청주, 아산, 여수 |  |
| 14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  | $\bigcirc$ |
| 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평택, 강원,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창원, 정읍, 여수 |  |
| 16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  | $\bigcirc$ |
| 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 산업 - 자원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begin{array}{c}\text { 해당 자치단체에만 } \\ \text { 존재하는 조례 }\end{array}$ |
| :---: | :--- | :--- | :---: |
|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강릉, 청주, 아산, 여수 |  |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ㅇ |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평택,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정읍, |  |
| 4 | $\begin{array}{l}\text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 \\ \text { 관한 조례 }\end{array}$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아산, |  |
| 5 | 정읍, 여수 |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강릉, 여수 |  |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원주, 포항, 창원, 아산 |  |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평택, 강원,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창원, 정읍, 여수 |  |
|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평택, 원주, 청주, 아산 |  |
| 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평택, 포항, 창원, 아산 |  |
| 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포항, 청주 |  |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강릉, 포항, 청주, 여수 |  |
| 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 청주, 정읍 |  |
| 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평택 |  |
| 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청주, 여수 |  |
| 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 평택, 청주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 평택, 강원,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평택,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아산 |  |
| 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강릉, 포항, 창원, 정읍 |  |
| 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  | $\bigcirc$ |
| 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정읍, 여수 |  |
| 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원주, 청주, 아산 |  |
| 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평택,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27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 평택,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평택, 강릉, 아산, 정읍, 여수 |  |
| 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 |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원주, 창원, 여수 |  |
| 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  | $\bigcirc$ |
| 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릉, 창원 |  |
| 3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 $\bigcirc$ |
| 3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평택, 아산, 여수 |  |
| 3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  |
| 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청주, 아산, 정읍 |  |
| 3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릉, 포항, 청주, 아산, 여수 | $\bigcirc$ |
| 3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정읍, 여수 |  |
| 3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  |
| 4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 강릉, 포항, 창원 |  |
| 4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원주, 포항, 아산 |  |
| 4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 아산 |  |
| 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농수축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단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 평택, 강릉, 포항, 여수 |  |
| 2 | 서울득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주, 아산, 여수 |  |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 |  | $\bigcirc$ |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 원주, 창원, 아산, 정읍 |  |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창원, 아산 |  |
|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정읍, 여수 |  |
| 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  | $\bigcirc$ |
| 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  | $\bigcirc$ |

414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창원, 청주, 정읍, 여수 |  |
| 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br> 아산, 정읍, 여수 |  |
| 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 평택,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br> 정읍 |  |

## 환경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br>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평택, 포항 |  |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  |  |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평택,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br> 정읍 | 여수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6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 평택，창원，청주 |  |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 | 평택，강릉，원주，포항，창원，청주， 아산，정읍，여수 |  |
| 8 | 서울특ㅂ⼰ㄹㅅㅣ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 평택，강릉，원주，포항，창원，청주， 아산，정읍，여수 |  |
| 9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 | 평택，강릉，원주，포항，창원，청주， 아산，정읍，여수 |  |
| 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ㅇᅱᅱ 신고 포상 조례 | 아산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1 | 평택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12 | 평택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 $\bigcirc$ |
| 13 | 평택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원주, 포항, 창원 |  |
| 14 | 평택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  |  |
| 15 | 평택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법명개정) |  |  |
| 16 | 평택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포항 |  |
| 18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9 |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20 |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  |  |
| 21 |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22 |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릉,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23 |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4 | 평택시 버스운영개선위원회 조례 | 포항 |  |
| 25 | 평택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 관한조례 | 창원, 청주, 여수 |  |
| 26 |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  |
| 27 |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  |
| 28 | 평택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 여수 |  |
| 29 | 평택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 원주, 정읍 |  |
| 30 |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청주 |  |

2. 경기도 평택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1 |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 강릉 |  |
| 32 |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 - 운영 조례 | 아산 |  |
| 33 | 평택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 원주, 아산 |  |
| 34 | 평택시 조경 및 가로수 관리 조례 |  | $\bigcirc$ |
| 35 |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36 | 평택시 주택 조례 | 아산, 정읍 |  |
| 37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8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9 |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40 | 평택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41 |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42 | 평택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  | $\bigcirc$ |
| 43 |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 $\bigcirc$ |
| 44 |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 $\bigcirc$ |
| 45 | 평택용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례 |  | $\bigcirc$ |

419

- 산업 - 자원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 |  | $\bigcirc$ |
| 2 | 평택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 | 평택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4 | 평택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  | $\bigcirc$ |
| 5 |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정읍 |  |
| 6 | 평택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  | $\bigcirc$ |
| 7 |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 $\bigcirc$ |
| 8 |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 |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9 |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강릉, 청주, 아산 |  |
| 10 | 평 택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원주, 포항, 아산, 정읍 |  |
| 11 | 평택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아산, 여수 |  |
| 12 | 평택시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 |  | $\bigcirc$ |
| 13 |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  |
| 14 |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평 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  |
| 2 |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  |
| 3 |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활성화 지원 조례 |  | $\bigcirc$ |
| 4 | 평택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 운영 조례 |  |  |
| 5 | 평택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6 |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7 | 평 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 포항, 청주, 정읍, 여수 |  |
| 8 | 평택시노인요양원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 정읍, 여수 |  |
| 9 | 평택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  |
| 10 |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 아산 |  |
| 11 | 평택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 지원 조례 | 아산 |  |
| 12 |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13 | 평 택시 보건소수가조례(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check) |  |  |
| 14 | 평택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 대행에관한조례 |  | $\bigcirc$ |
| 15 | 평 택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16 | 평 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7 | 평택시 복지위원정수 조례 | 원주, 창원 |  |
| 18 |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 $\bigcirc$ |
| 19 | 평택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  |
| 20 |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 강릉, 여수 |  |
| 21 |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아산, 여수 |  |
| 22 |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
| 23 | 평택시.읍.면.동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 정읍, 여수 |  |
| 24 | 평택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 아산 |  |
| 25 | 평택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  |
| 26 |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27 |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포항, 창원, 청주, 아산 |  |
| 28 |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29 |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 아산 |  |
| 30 |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주 |  |
| 31 |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  |
| 32 |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33 |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  |
| 34 |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  |
| 35 | 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  |

2. 경기도 평택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6 | 평택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  |  |
| 37 | 평택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  |
| 38 | 평택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원주, 창원, 청주 |  |
| 39 | 평택시차세대위원회운영조례 |  |  |
| 40 |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41 |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 정읍, 여수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  |
| 2 | 평택시공수의조례 | 강원, 원주, 포항 |  |

423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 | 평택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읍 |  |
| 4 | 평택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 창원, 여수 |  |
| 5 |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포항, 창원, 아산, 여수 |  |
| 6 |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7 |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  |
| 8 | 평택시 농특산물 통항상표 관리 조례 | 원주, 포항, 청주, 정읍, 여수 |  |
| 9 |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 청주, 아산, 정읍 | ㅇ |
| 10 |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 |  | ○ |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ㄷㅏㅏ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  | ㅇ |
| 2 |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  |  |
| 3 | 평택시 문화상 조례 |  |  |
| 4 |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창원 |  |
| 5 |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 포항 |  |
| 6 |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정읍, 여수 |  |

2. 경기도 평택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7 | 평택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 원주, 포항, 창원 |  |
| 8 |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읍, 여수 |  |
| 9 | 평택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  | $\bigcirc$ |
| 10 | 평택시 진위천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1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12 |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 강릉, 원주, 청주, 여수 |  |
| 13 |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  | $\bigcirc$ |
| 14 |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  | $\bigcirc$ |
| 15 |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  | $\bigcirc$ |
| 16 | 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 - 운영 조례 |  | $\bigcirc$ |
| 17 |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18 |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 청주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평택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  |  |
| 2 | 평택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 원주, 청주, 정읍, 여수 |  |

425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 |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청주, 정읍 |  |
| 4 | 평택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시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5 | 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  |
| 6 |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 원주, 창원, 청주 |  |
| 7 |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강릉, 원주, 창원, 청주, 아산, 정읍 |  |
| 8 |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9 |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 포항 |  |
| 10 |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  |
| 11 | 평 택시 수도급수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12 | 평택시 수도사업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13 |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14 |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15 | 평택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  |
| 16 | 평택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아산, 정읍, 여수 |  |
| 17 | 평택시 지하수관리 조례 | 강릉, 원주, 창원, 청주, 아산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평택시 칠괴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  |  |
| 19 |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  |  |
| 20 |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br> 정읍, 여수 |  |
| 21 |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 강릉,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br> 정읍, 여수 |  |
| 22 |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  |  |

## 3.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강릉시 건설기계 관리조례 |  | $\bigcirc$ |
| 2 |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
| 3 | 강릉시 건축 조례 |  |  |
| 4 | 강릉시 경관형성 조례 |  |  |
| 5 |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  |
| 6 |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원주, 포항 |  |
| 7 | 강릉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8 |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  |  |
| 9 |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  | $\bigcirc$ |
| 10 |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1 | 강릉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
| 12 |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  |
| 14 | 강릉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  |
| 15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  |  |
| 16 |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7 |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8 | 강릉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  |
| 19 |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0 |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 人 |
| 21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  |  |
| 22 | 강릉시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  |  |
| 23 |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  |  |
| 24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25 |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
| 26 | 강릉시 지하수 조례 |  |  |

## ■ 산업－자원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영 |
| 2 |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 ○ |
| 3 |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  |
| 4 |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 강원도 강릉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5 |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  |
| 6 | 강릉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  |  |
| 7 |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br> 관한 조례 |  |  |
| 8 | 강릉시 전톤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  |
| 9 |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원준, 창원,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10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  |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강릉솔향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 ㅇ |
| 2 |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3 | 강릉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4 |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 |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  |
| 5 |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  |
| 6 | 강릉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  |
| 7 |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8 |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
| 9 |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원주, 창원 |  |
| 10 |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  |
| 11 | 강릉시 사회복지봉사증 수여조례 |  | $\bigcirc$ |
| 12 |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  |
| 13 | 강릉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4 | 강릉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  |
| 15 | 강릉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6 |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17 |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  |  |
| 18 |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9 |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 |  |
| 20 |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  |
| 21 |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  |
| 22 | 강릉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창원, 청주, 아산, 여수 |  |
| 23 |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4 |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  |
| 25 |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6 |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  |

## 3. 강원도 강릉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7 |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  |
| 28 | 강릉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  |
| 29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30 |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  |
| 31 |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 원주 |  |
| 32 |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  |  |
| 33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운영 조례 | 원주, 창원, 청주, 여수 |  |
| 34 |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  |  |
| 35 |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6 |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7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38 | 강릉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  | $\bigcirc$ |
| 39 |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0 |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  | $\bigcirc$ |
| 41 |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아산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농수죽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원주 |  |
| 2 |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  |
| 3 | 강릉시 공수의 여비조례 |  |  |
| 4 |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 원주, 포항 |  |
| 5 | 강릉시 농공단지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원주, 아산 |  |
| 6 |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원주 |  |
| 7 |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청주 |  |
| 8 | 강릉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창원, 아산 |  |
| 9 | 강릉시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 조례 | 창원, 청주, 아산, 정읍 |  |
| 10 |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  |
| 11 | 강릉시 농업 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주, 정읍, 여수 |  |
| 12 | 강릉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원주 |  |
| 13 |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아산, 정읍, 여수 | 원주 |
| 14 | 강릉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  |  |
| 15 | 강릉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  |  |
| 16 | 강릉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 |  |  |
| 17 | 강릉시 수산물폐수처리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  |

3. 강원도 강릉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 창원 |  |
| 19 |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원주, 아산 |  |
| 20 |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원주, 포항, 창원, 청주, 아산, 정읍, <br> 여수 |  |
| 21 | 강릉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 원주, 창원, 청주, 아산 |  |
| 22 | ㅏㅏㅇ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원주, 청주, 아산, 정읍 |  |
| 23 | 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  | (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여수 |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ㄷㅏㅏ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 |  | ○ |
| 2 | 강릉단오제운영조례 |  | $\circ$ |
| 3 |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 ○ |
| 4 |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포항, 창원, 아산 |  |
| 5 | 강릉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 ○ |
| 6 | ㅏㅏㅇ릉시 관광지 이ㅂㅏㅏㅇㄹㅛ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원주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7 |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 원주, 창원, 청주, 정읍, 여수 |  |
| 8 |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  |
| 9 | 강릉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창원 |  |
| 10 |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 |  | $\bigcirc$ |
| 11 |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  |
| 12 |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원주, 포항, 청주, 아산, 정읍 |  |
| 13 | 강릉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 청주 |  |
| 14 |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 원주, 여수 |  |
| 15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16 |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원주 |  |
| 17 |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  | $\bigcirc$ |
| 18 |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아산 |  |
| 19 |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조례 |  | $\bigcirc$ |
| 20 | 강릉시 창조도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1 |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  |  |
| 22 | 강릉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  |
| 23 |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포항, 정읍 |  |
| 24 |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 관리조례 |  |  |
| 25 |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원주, 청주 |  |

환경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 | 강릉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 |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포항, 창원, 청주, 아산 |  |
| 4 | 강릉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 원주 |  |
| 5 | 강릉시 상수도 그ㅂㅜㅜ 조례 |  |  |
| 6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  |
| 7 |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  |
| 8 | 강릉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 포항 |  |
| 8 | 강릉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 |  |  |
| 10 |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  |
| 11 |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12 | 강릉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포항, 창원, 정읍 |  |
| 13 |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  |
| 14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 $\bigcirc$ |
| 15 |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 여수 |  |
| 16 | 강릉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
| 17 | 강릉시 폐기물 등 과태료부과 •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 $\bigcirc$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ㅇ |
| 19 |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20 | 강릉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포항, 창원, 청주, 아산 |  |
| 21 |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  |  |
| 22 | 강릉시 환경기본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 ○ |
| 2 |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 상속에 관한 조례 |  |  |
| 3 | 원주시 건축문관자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아산, 여수 |  |
| 4 | 원주시 건축조례 |  |  |
| 5 | 원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6 | 원주시 경관 조례 |  |  |
| 7 |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 정읍 |  |
| 8 |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 포항, 창원, 청주 |  |
| 9 |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10 |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  |
| 11 |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 창원, 청주, 여수 |  |
| 12 |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 관리조례 | 포항, 청주, 여수 |  |
| 13 |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  |  |
| 14 |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5 |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6 |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
| 17 |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  |  |
| 18 |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9 |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  |
| 20 |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  |
| 21 |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  |  |
| 22 |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  |
| 23 | 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  |  |
| 24 |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5 |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  |  |
| 26 |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  |
| 27 |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28 |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창원 |  |
| 29 | 원주시 지하수 조례 |  |  |
| 30 |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  |  |

## 4. 강원도 원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보건•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弪례\end{array}\right]\)
4. 강원도 원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원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9 |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  |
| 20 |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1 |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2 |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  |
| 23 |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4 |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5 |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6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  |
| 27 | 원주시 정신보건조례 |  |  |
| 28 |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9 |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조례 |  |  |
| 30 |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  |
| 31 |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  |
| 32 |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  |  |
| 33 |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4 |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조례 |  |  |
| 35 |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  |
| 36 |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농수축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닺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원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 | 원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  |  |
| 3 | 원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  |  |
| 4 |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  |  |
| 5 |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6 | 원주시 농가경영기록열력 제작 • 배부에 관한 조례 |  |  |
| 7 | 원주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  |  |
| 8 | 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 포항 |  |
| 9 | 원주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0 |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11 |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 관리 조례 | 여수 |  |
| 12 |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_{44}$
4. 강원도 원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445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 조례 |  | $\bigcirc$ |
| 2 | 원주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  |
| 3 |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  |  |
| 4 |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  |  |
| 5 |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 $\bigcirc$ |
| 6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  | $\bigcirc$ |
| 7 |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8 |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9 |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10 |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 11 |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  |  |
| 12 |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 $\bigcirc$ |
| 13 |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 - 운영 조례 |  | $\bigcirc$ |
| 14 |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15 |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포항, 창원, 청주, 여수 |  |
| 16 |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 아산 |  |
| 17 |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 |  |  |

4. 강원도 원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  | $\bigcirc$ |
| 19 | 원주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  | $\bigcirc$ |
| 20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  |
| 21 |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개최 및 운영조례 |  | $\bigcirc$ |
| 22 | 원주시 재단법인 원주국제따뚜 지원조례 |  | $\bigcirc$ |
| 23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4 |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  |  |
| 25 |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6 |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  | $\bigcirc$ |
| 27 |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  | $\bigcirc$ |
| 28 |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  |
| 29 | 원주횡성문화정보센터 카나비 지원조례 |  | $\bigcirc$ |
| 30 | 재단법인 대한걸기연맹 지원조례 |  | $\bigcirc$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  |

- 뫈경 관련 분야

447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 | 원주시 기후변화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3 |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  |  |
| 4 |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 운영조례 |  |  |
| 5 | 원주시 분뇨위생처리부담금 징수조례 |  |  |
| 6 |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  |  |
| 7 |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  |
| 8 |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아산 |  |
| 9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 $\bigcirc$ |
| 10 |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  |  |
| 11 |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  |  |
| 12 |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  |  |
| 13 |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  |
| 14 | 원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조례 |  |  |
| 15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  |
| 16 |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17 |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8 | 원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  |  |
| 19 |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0 |
| 20 |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  |  |

4. 강원도 원주시

$\left.$|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 해당 자치단체에만 |
| :---: |
| 존재하는 조례 | \right\rvert\,

5. 경상북도 포항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포항시 건설공사의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2 |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
| 3 | 포항시 건축 조례 |  |  |
| 4 | 포항시 경관 조례 |  |  |
| 5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6 |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 ( |
| 7 |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 ○ |
| 8 |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  |
| 9 |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  |  |
| 10 |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  |  |
| 11 |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  |
| 12 |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  |
| 13 |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조례 |  |  |
| 14 |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5 |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 5. 경상북도 포항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보건•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5. 경상북도 포항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포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  |  |
| 19 | 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  |  |
| 20 |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  |
| 21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  |  |
| 22 |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  |  |
| 23 |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  |  |
| 24 |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  |
| 25 | 포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  |
| 26 |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  |
| 27 |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 |  |  |
| 28 |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  |
| 29 |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  |
| 30 |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  |
| 31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  |  |
| 32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3 |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  |
| 34 | 포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5 |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  |  |
| 36 |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7 |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  |
| 38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9 |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  | ㅇ |

( 농수죽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  |
| 2 |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  | $\bigcirc$ |
| 3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창원 |  |
| 4 | 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  |  |
| 5 |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  | $\bigcirc$ |
| 6 | 포항시 귀농인 지원 조례 |  |  |
| 7 | 포항시 나잠어업(해녀)보호 및 육성 조례 |  | $\bigcirc$ |
| 8 |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9 | 포항시 농기계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0 |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  |
| 11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 창원, 청주, 정읍 |  |

5. 경상북도 포항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2 |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창원 |  |
| 13 | 포항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  |  |
| 14 | 포항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  |  |
| 15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  |
| 16 |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 17 |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 정읍, 여수 |  |
| 18 |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9 |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  |
| 20 | 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  |
| 21 |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22 |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  |  |
| 23 |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  |  |

■ 문화 • 체욱 • 관광 관련 분야
457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 |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  |
| 4 | 포항시 군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여수 |  |
| 5 |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 $\bigcirc$ |
| 6 | 포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  |  |
| 7 |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  |  |
| 8 | 포항시 민속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창원, 아산, 여수 |  |
| 9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0 |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  |
| 11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주, 정읍 |  |
| 12 |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창원, 청주, 정읍, 여수 |  |
| 13 | 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  |
| 14 |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5 | 포항시 장두건미술상 운영 조례 |  | $\bigcirc$ |
| 16 | 포항시 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읍 |  |
| 17 |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8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  |  |
| 19 |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  |  |
| 20 |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아산, 여수 |  |
| 21 | 포항시 한흑구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5. 경상북도 포항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2 |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 해당 자치단체에만 |
| :---: |
| 존재하는 조례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6.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 4 조 경과조치) |  | $\bigcirc$ |
| 2 |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 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  | $\bigcirc$ |
| 3 | 창원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  |
| 4 | 창원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5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
| 6 | 창원시 건축 조례 |  |  |
| 7 |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  |
| 8 | 창원시 경관 조례 |  |  |
| 9 |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  | $\bigcirc$ |
| 10 |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  |  |
| 11 | 창원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2 |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  |
| 13 |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4 |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  |
| 15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6 |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17 |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  |
| 18 |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  |
| 19 |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0 |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1 |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2 |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  |
| 23 | 창원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  |
| 24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  |
| 25 |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  | $\bigcirc$ |
| 26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  |  |
| 27 |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  |  |
| 28 |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  | $\bigcirc$ |
| 29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청주 |  |
| 30 |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1 |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2 |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청주 |  |

6. 경상남도 창원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3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  |
| 34 |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5 | 창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  |
| 36 |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  |
| 37 |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 여수 |  |
| 38 |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9 | 창원시 시영임대주택 관리 조례 |  |  |
| 40 |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41 |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 $\bigcirc$ |
| 42 |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43 |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 $\bigcirc$ |
| 44 |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할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 $\bigcirc$ |
| 45 |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46 |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  | $\bigcirc$ |
| 47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48 |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  | $\bigcirc$ |
| 49 |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  |
| 50 |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  |
| 51 | 창원시 지하수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52 | 창원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  |
| 53 |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  |
| 54 |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  |  |
| 55 |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주, 정읍, 여수 |  |

## - 산업 - 자원 관련 분야

6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7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3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4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8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9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10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464
6. 경상남도 창원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1 |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  |  |
| 12 |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  |
| 13 |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0 |
| 14 |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0 |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  |  |
| 2 |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위원회 조례 |  |  |
| 3 |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  |  |
| 4 | 창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 운영 조례 |  |  |
| 5 |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  |
| 6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7 |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  |
| 8 |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  |
| 9 |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0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1 | 창원시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원 조례 |  |  |
| 12 | 창원시립 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3 | 창원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수 |  |
| 14 |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  |
| 15 | 창원시민 복지 조례 |  | $\bigcirc$ |
| 16 |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  |
| 17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  |
| 18 |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  |  |
| 19 | 창원시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0 | 창원시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1 |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  |
| 22 |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3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4 |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5 | 창원시 아동급식위원회 조례 |  |  |
| 26 |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7 |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
| 28 |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 |  |  |
| 29 |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6. 경상남도 창원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0 |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1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  |  |
| 32 |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여수 |  |
| 33 |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
| 34 |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  | $\bigcirc$ |
| 35 |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  |
| 36 |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청주, 아산 |  |
| 37 | 창원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 $\bigcirc$ |
| 38 |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  |
| 39 |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  |
| 40 |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41 |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42 | 창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3 | 창원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  |  |
| 44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5 | 창원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청주, 정읍 |  |
| 46 |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 |  |  |
| 47 | 창원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48 |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49 |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50 |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 |  | ○ |
| 51 |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52 |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  |
| 53 |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54 |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주 |  |
| 55 |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56 |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
| 57 |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  | ○ |
| 58 |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

- 농수축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  |  |
| 2 | 창원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 3 |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0 |
| 4 |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6. 경상남도 창원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5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  |  |
| 6 |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  |  |
| 7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
| 8 |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9 |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0 | 창원시 농수특산물 창원몰 운영 조례 |  | $\bigcirc$ |
| 11 | 창원시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  |
| 12 | 창원시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 조례 |  |  |
| 13 |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4 |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  |
| 15 |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6 |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 | 정읍 |  |
| 17 |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  |  |
| 18 | 창원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주 |  |
| 19 |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0 |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주, 아산 |  |
| 2 |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  |  |
| 3 |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  |  |
| 4 |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  |
| 5 |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6 | 창원시 내서운동장 관리 운영 조례 |  | $\bigcirc$ |
| 7 |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  |
| 8 | 창원시립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  | $\bigcirc$ |
| 9 |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  | $\bigcirc$ |
| 10 |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1 |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2 |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  |  |
| 13 |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  |  |
| 14 |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  |  |
| 15 |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16 | 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7 | 창원시 문화상 조례 |  |  |

6. 경상남도 창원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창원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주 |  |
| 19 |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  |
| 20 |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1 |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  | $\bigcirc$ |
| 22 |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3 | 창원시 사립 박물관 - 미술관 진흥 조례 |  |  |
| 24 | 창원시 삼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bigcirc$ |
| 25 | 창원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  |  |
| 26 |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  |
| 27 |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8 |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9 | 창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
| 30 |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1 | 창원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  |  |
| 32 |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  | 0 |
| 33 |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bigcirc$ |
| 34 | 창원시 진해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5 |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36 |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7 | 창원시 체육진흥협의회 ㅈㅈ직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8 | 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0 |
| 39 | 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 40 | 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0 |
| 41 |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  | 0 |

## $\square$ 환경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  |
| 2 |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  | ○ |
| 3 | 창원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  | ○ |
| 4 | 창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  |
| 5 | 창원시 녹색창원 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6 |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  |  |
| 7 | 창원시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  |
| 8 |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9 |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  |  |

6. 경상남도 창원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0 |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1 |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  |
| 12 |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 운영 조례 |  | $\bigcirc$ |
| 13 |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  |  |
| 14 |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15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
| 16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  |  |
| 17 |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8 |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  | $\bigcirc$ |
| 19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 한 조례 |  |  |
| 20 |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21 | 창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  |  |
| 22 |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  |
| 23 |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4 |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5 | 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  |
| 26 |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7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  |  |
| 28 |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 $\bigcirc$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9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  |  |
| 30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  |
| 31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32 | 창원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  |
| 33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  |  |
| 34 |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
| 35 |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 |  | $\bigcirc$ |
| 36 |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  |  |
| 37 |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  | $\bigcirc$ |

7. 충청북도 청주시

- 국토•고통 관련 분야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6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  |
| 17 |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8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롸 • 징수 조례 |  |  |
| 19 |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  |
| 20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  |
| 21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  |
| 22 |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 |  |  |
| 23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  |  |
| 24 |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  |
| 25 |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  |
| 26 |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아산 |  |
| 27 |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  |
| 28 | 청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  |
| 29 |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  |  |
| 30 |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  |
| 31 | 청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  |
| 32 | 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  |
| 33 | 청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
| 34 | 청주시 슬레이트 지붕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  |

476
7. 충청북도 청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5 | 청주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6 |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  |
| 37 | 청주시 주차장 조례 |  |  |
| 38 |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
| 39 |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여수 |  |
| 40 | 청주시 지하수 조례 |  |  |
| 41 |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  |
| 42 |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  |
| 43 |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 |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  |  |
| 3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  |
| 4 |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읍, 여수 |  |

477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5 |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6 |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 |  |  |
| 7 |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  |  |
| 8 |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  |  |
| 9 |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  |
| 10 | 청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  |  |
| 11 |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12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ㄴㅗㅗㅗ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3 |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4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  |  |
| 15 |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 보건 • 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  |
| 2 |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  |

478
7. 충청북도 청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 |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 |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  |  |
| 5 |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6 |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  |
| 7 |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  |
| 8 |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  |
| 9 |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0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11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읍 |  |
| 12 |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 |  | $\bigcirc$ |
| 13 |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4 |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  |  |
| 15 |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6 | 청주시 보육 조례 |  |  |
| 17 |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 - 운영 조례 |  |  |
| 18 |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  |
| 19 |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0 |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  |  |
| 21 |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479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항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2 |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  |
| 23 | 청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
| 24 | 청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  |
| 25 | 청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관한 조례 |  |  |
| 26 |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  |
| 27 |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8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 |  |  |
| 29 |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  |
| 30 | 청주시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1 | 청주시 장애인 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2 |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3 |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4 |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5 |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6 | 청주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  |
| 37 |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  |
| 38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  |  |
| 39 |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 |  |  |
| 40 |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  |

7. 충청북도 청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농수죽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청원군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  |  |
| 2 | 청주시 귀농 • 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  |  |
| 4 | 청주시 농어업 •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  |
| 5 |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6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7 |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8 |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  |  |
| 9 |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0 | 청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1 | 청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  |
| 12 | 청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3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  |  |
| 14 | 청주시 주민소득사업자금 운용 • 관리 조례 |  |  |
| 15 |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7. 충청북도 청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 |  | $\bigcirc$ |
| 2 |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 | 청주시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4 |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  |  |
| 5 | 청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 |  |  |
| 6 |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7 |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8 |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9 | 청주시 명암봍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0 |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1 |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아산 |  |
| 12 |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 $\bigcirc$ |
| 13 |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  |  |
| 14 | 청주시 문화예술시설 관리 • 운영 조례 |  |  |
| 15 |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  |
| 16 |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  |
| 17 |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 운영 조례 | 정읍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19 | 청주시 배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0 | 청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 운영 조례 |  |  |
| 21 | 청주시 옹기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아산 |  |
| 22 | 청주시 유네스코 직지상 지원 조례 |  | $\bigcirc$ |
| 23 |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
| 24 |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  |  |
| 25 |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  | $\bigcirc$ |
| 26 | 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7 | 청주시 직지의 날 조례 |  | $\bigcirc$ |
| 28 | 청주시 직지찾기운동 지원사업 운영 조례 |  | $\bigcirc$ |
| 29 | 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30 |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 - 운영 조례 |  | $\bigcirc$ |
| 31 | 청주시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32 |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3 |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4 | 청주시 충렬사 관리 조례 |  | $\bigcirc$ |
| 35 | 청주시 한국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읍 |  |
| 36 |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  |  |

## 7. 충청북도 청주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7 |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  | ㅇ |
| 38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 • 운영 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2 | 청주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  |  |
| 13 |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  |
| 14 |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15 |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  |
| 16 | 청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7 |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  |  |
| 18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
| 19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20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21 |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  |
| 22 |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  |
| 23 |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  |  |
| 24 |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  |  |
| 25 |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 |  |  |

## 8. 충청남도 아산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아산 신정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 人 |
| 2 |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 ○ |
| 3 |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  |
| 4 | 아산시 건축 조례 |  |  |
| 5 |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  |
| 6 | 아산시 경관 조례 |  |  |
| 7 | 아산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  |
| 8 |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9 |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
| 10 |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  |
| 11 |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  |
| 12 |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  |
| 13 | 아산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  |
| 14 |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  |
| 15 |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  |  |

487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6 |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  |  |
| 17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  |
| 18 |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9 |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 $\bigcirc$ |
| 20 | 아산시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  | $\bigcirc$ |
| 21 |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  |
| 22 |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  |  |
| 23 |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  |
| 24 | 아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  |  |
| 25 |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  |
| 26 |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7 |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  |
| 28 |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9 |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0 |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1 |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 $\bigcirc$ |
| 32 | 아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 - 운영 조례 |  |  |
| 33 | 아산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  |
| 34 | 아산시 주차장 조례 |  |  |

8. 충청남도 아산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5 | 아산시 주택 조례 |  |  |
| 36 |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  |
| 37 | 아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  |  |
| 38 | 아산시 지하수 조례 |  |  |

## - 산업-자원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아산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 |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  |
| 3 |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 |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  |  |
| 5 | 아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 |  |  |
| 6 | 아산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7 |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 8 |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  |
| 9 |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ㅂㅗㅡㅡㅂ 지원 조례 |  |  |
| 10 |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ㄷㅏㅏ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1 | 아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  |
| 12 |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3 | 아산시 정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br> 관한 조례 |  |  |
| 14 |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  |
| 15 |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 0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
| 2 |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 |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  |
| 4 |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5 |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  |
| 6 |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  | 0 |
| 7 |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및 설치 • 운영 조례 |  |  |
| 8 | 아산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  | 0 |

490
8. 충청남도 아산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9 |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  |
| 10 |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11 |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2 |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  |
| 13 |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  |  |
| 14 |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5 |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6 |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  |
| 17 | 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8 |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  |
| 19 | 아산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0 |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1 |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  |
| 22 |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  |  |
| 23 |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4 |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5 |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  |
| 26 |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  |
| 27 |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하앙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9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  |
| 29 |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  |  |
| 30 |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  |
| 31 |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  |
| 32 |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 |  |  |
| 33 |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4 |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35 |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  |
| 36 | 아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  |
| 37 | 아산시 장애인 • 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8 |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  |
| 39 |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  |
| 40 |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및 징수 조례 |  |  |
| 41 |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42 |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43 | 아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44 |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  |
| 45 |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 •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46 |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8. 충청남도 아산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47 |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8 | 아산시 치매관리 • 지원 조례 |  |  |
| 49 |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  |
| 50 |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  |
| 51 |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  |
| 52 |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 |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3 |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 $\bigcirc$ |
| 4 | 아산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  |
| 5 | 아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  |  |
| 6 |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  | $\bigcirc$ |
| 7 |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  |
| 8 |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  | $\bigcirc$ |

493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9 | 아산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 특별지원 조례 |  | $\bigcirc$ |
| 10 | 아산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  |  |
| 11 | 아산시 농업기반공사구역 외 수리시설물 관리 조례 |  | $\bigcirc$ |
| 12 |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  | $\bigcirc$ |
| 13 |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  | $\bigcirc$ |
| 14 |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5 |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정읍 |  |
| 16 |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읍 |  |
| 17 | 아산시 농촌용ㅅㅜㅜ역 관리에 관한 조례 |  |  |
| 18 |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9 | 아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0 |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1 | 아산시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2 |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  | $\bigcirc$ |
| 23 |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  |
| 24 |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  |
| 25 | 아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  |
| 26 | 아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7 |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  |  |

8. 충청남도 아산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8 |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  | ㅇ |
| 29 |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아산 코미디홀 설치 • 운영 조례 |  |  |
| 2 | 아산시 관광발전진흥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  | 人 |
| 3 |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4 | 아산시 국내 • 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  |
| 5 |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  |
| 6 | 아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  |
| 7 |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8 |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9 |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 10 |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  |
| 11 |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2 |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495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3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  | $\bigcirc$ |
| 14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5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6 |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  | $\bigcirc$ |
| 17 |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 - 운영 조례 |  | $\bigcirc$ |
| 18 |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19 |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  |  |
| 20 | 아산시 체육진흥 조례 |  |  |
| 21 |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2 |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  |
| 23 |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 환경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  |
| 2 | 아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  |
| 3 |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

496
8. 충청남도 아산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4 |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  |
| 5 |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  |
| 6 |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  |
| 7 |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  |  |
| 8 | 아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  |
| 9 | 아산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  |
| 10 |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  |
| 11 |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  |
| 12 | 아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  |
| 13 |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14 |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15 |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  |
| 16 |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  |
| 17 |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  |
| 18 |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  |  |
| 19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
| 20 |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  |  |
| 21 | 아산시 환경 기본 조례 |  |  |
| 22 |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  | $\bigcirc$ |

497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3 |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24 |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  | ㅇ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499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 9. 전라북도 정읍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  |  |
| 2 |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 |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 |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5 | 정읍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  |  |
| 6 |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
| 7 |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  |
| 8 |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br> 관한 조례 |  |  |
| 9 |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  |

## 보거 • 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 :---: | :---: |
| 1 |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501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항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 | 정읍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  |
| 3 |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
| 4 |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  |
| 5 |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  |
| 6 |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  |  |
| 7 |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8 |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  |
| 9 | 정읍시 노인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0 |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1 | 정읍시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2 |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
| 13 |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운영 조례 |  |  |
| 14 |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5 |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6 |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
| 17 |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  |
| 18 |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  |
| 19 | 정읍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0 | 정읍시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9. 전라북도 정읍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항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503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농수축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9. 전라북도 정읍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7 |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  | $\bigcirc$ |
| 38 | 정읍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  |  |
| 39 | 정읍시 후계농업인 융자금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 |  |  |
| 40 |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 - 운영 조례 |  | $\bigcirc$ |
| 2 |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  | $\bigcirc$ |
| 3 |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  | $\bigcirc$ |
| 4 |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  | $\bigcirc$ |
| 5 |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6 |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  |  |
| 7 |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8 |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 운영 조례 |  |  |
| 9 |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 |  |  |
| 10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bigcirc$ |

506
9. 전라북도 정읍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1 |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 |  |  |
| 12 |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13 | 정읍시 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  |  |
| 14 |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  |
| 15 | 정읍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  |  |
| 16 |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 17 |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  |  |
| 18 |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9 |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  |  |
| 20 | 정읍시 역사 • 문화마을 육성지원 조례 |  |  |
| 21 |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2 | 정읍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  |
| 23 | 정읍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  |
| 24 |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  |  |
| 25 | 정읍시 정읍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  |
| 26 |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징수 조례 |  |  |
| 27 | 정읍시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8 |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 |  |  |
| 29 |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  |  |

507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0 |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1 | 정읍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2 |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33 |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  |  |
| 34 |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  |  |
| 35 | 정읍시립미술관 운영 관리 조례 |  |  |
| 36 | 정읍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
| 37 | 정읍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환경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  |
| 2 |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  |  |
| 3 | 정읍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  |
| 4 |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  |
| 5 | 정읍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  |  |

508

##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6 |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7 |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  |  |
| 8 |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  |  |
| 9 | 정읍시 수도시설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조례 |  |  |
| 10 |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  |
| 11 |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  |
| 12 |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  |
| 13 |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  |  |
| 14 |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  |  |
| 15 | 정읍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  |
| 16 |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  |
| 18 |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  |  |
| 19 |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  |  |
| 20 |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  |  |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  |
| 2 | 여수시 100 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 |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  |
| 4 | 여수시 건축 조례 |  |  |
| 5 | 여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  |
| 6 | 여수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  |
| 7 | 여수시 경관 조례 |  |  |
| 8 |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  |
| 9 | 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  |
| 10 |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  |  |
| 11 | 여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  |
| 12 |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  |
| 13 |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  |
| 14 |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5 |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10. 전라남도 여수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35 |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  |  |
| 36 | 여수시지구 토지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  | 0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단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  |  |
| 2 |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 |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  |
| 4 |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  |
| 5 |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  |  |
| 6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
| 7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  |  |
| 8 | 여수시 에너지 기본 조례 |  |  |
| 9 |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0 | 여수시 유통엉 상생발전 및 전통ㅅㅇㅇ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  |
| 11 |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  |
| 12 |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  |

513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3 |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
| 14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  |
| 15 | 여수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  |
| 16 | 여수시 •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 ( |

## 보건•복지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  |
| 2 | 여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  |
| 3 | 여수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 • 징수 조례 |  |  |
| 4 |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 5 |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  |
| 6 | 여수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7 |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  |  |
| 8 |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  |
| 9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  |

514
10. 전라남도 여수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0 | 여수시 도서지역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  | $\bigcirc$ |
| 11 |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  |  |
| 12 |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13 |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  |
| 14 | 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  |
| 15 |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  |
| 16 |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  |
| 17 |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  |  |
| 18 |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  |
| 19 | 여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20 | 여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1 | 여수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2 |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  |  |
| 23 | 여수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  |
| 24 | 여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
| 25 |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6 | 여수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  |  |
| 27 |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28 |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  |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29 |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  |
| 30 |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  |
| 31 |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2 |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3 |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4 |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  |
| 35 |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 원에 관한 조례 |  |  |
| 36 |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  |
| 37 |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부과 - 징수 조례 |  |  |
| 38 |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39 |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40 | 여수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 |  |  |
| 41 |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  |  |
| 42 |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  |  |
| 43 |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  |  |
| 44 |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  |  |
| 45 |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농수죽산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 10. 전라남도 여수시

| 순 번 | 조례명 | 동일-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8 |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  |  |
| 19 |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  |  |
| 20 |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  |
| 21 | 여수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22 |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 $\bigcirc$ |
| 23 | 여수시 평화테마촌 운영 및 관리 조례 |  | $\bigcirc$ |
| 24 |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 |  | $\bigcirc$ |
| 25 |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  |
| 26 |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  |  |
| 27 | 여수시민의 노래 및 찬가에 관한 조례 |  | $\bigcirc$ |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해당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 |
| :---: | :--- | :--- | :--- |
| 1 | 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  |
| 2 | 여수시 분뇨수집 $\cdot$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 징수에 <br> 관한 조례 |  |  |
| 3 |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  |

519
《부록》연구대상 조례 목록

| 순 번 | 조례명 | 동일 • 유사 조례를 보유한 자치단체 |
| :---: | :--- | :--- | :---: | \(\left.\begin{array}{c}항 자치단체에만 <br>

존재하는 조례\end{array}\right]\)


[^0]:    90）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 8 조 제 4 항 제 3 호 관련＂사례（370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1]:    93）종전에 ‘하수관거’로 표현하던 것은 2013．7．16．자 「하수도법」개정（법률 제11915호， 2014．7．17．시행）에 따라＇하수관로＇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2]:    97）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43 조 관련＂사례（428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3]:    98）이 사례는 2015 연구 중＂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0조 제1항 관련＂사례（432쪽 이하）와 유사한 사례이다．

[^4]:    하기 위하여 2015년도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광 역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정비 방향(내지 방안)을 기초로 그 내용을 보충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5]:    111) 홍준형, 자치법규 통합관리의 효과, 경향신문, 2015. 8. 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5C&code=990304) (최종접속 : 2016. 8. 31) ; 이세정,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3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code=99030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22057535%5C&code=990304)
    (최종접속 : 2016. 10. 25)
    112)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3-484쪽.
[^6]:    119）문상덕，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2 쪽．
    120）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보도자료（＂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채택＂－성숙한 지 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2014．3． 17.
    ＜http：／／www．gaok．or．kr／gaok／bbs／B0000005／view．do？nttId＝4286\＆searchCnd＝\＆searchWrd＝ \＆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23\＆sdate＝\＆edate＝\＆viewType＝\＆t ype＝\＆siteId＝\＆option $1=\& o p t i o n 2=\& o p t i o n 5=\& p a g e I n d e x=5>$（최종접속 ：2016．10．11）
    121）조성규，지방자치 20 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지방자치법연구 제 15 권 제 2 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2015．6， 143 쪽．
    122）이세정，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485－486쪽．
    123）김남진•김연태，앞의 책，127쪽．

[^7]:    124)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6쪽.
    125)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162 쪽.
    126) 이세정,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486쪽.
